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100145-10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2024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2024 경기도 장애인학대·차별 주요통계 1

I 서론 3

- 1. 발간목적(발간배경) 5
- 2.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의 개요 6
 - 1) 경기도 6
 -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 3) 피해장애인쉼터 9
 - 4) 피해장애아동쉼터 11
- 3. 자료수집과정 13
- 4. 자료분석방법 13
- 5. 3년간 주요 현황 변화(2022년, 2023년, 2024년) 15

II 신고접수 현황 35

- 1. 신고접수 37
- 2. 신고접수 방법 41
- 3. 신고접수 경로 42

III 장애인학대 사례 43

- 1.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분석 45
 - 1) 신고접수 45
 - 2) 신고자 유형 45
 - 3) 학대조사 51
 - 4) 사례판정 52
 - 5) 상담 및 지원 53
 - 6) 사례종결 54

목 차

7) 모니터링	55
2.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 분석	56
1) 장애인학대 사례 현황	56
2) 재학대 사례 현황	74
3. 학대피해장애(아동)인 쉼터	88
1) 피해장애인쉼터	88
2) 피해장애아동쉼터	102

Ⅳ 장애인차별 사례 분석 115

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117
2. 시·군별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118
3.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119
4. 장애인차별 유형	120
5.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122

Ⅴ 피해장애인 주요 지원 사례 125

1. 신체적학대	127
2. 정서적학대	129
3. 성적학대	131
4. 경제적 착취	133
5. 유기·방임	135
6. 차별사례	137

VI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139
1.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사업	141
2.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	142
3. 정책개발사업	145
4. 협력체계 구축사업	146
5. 홍보사업	147
부록	151
1. 용어 설명	153
2. 장애인학대 지원절차	164
3.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절차	168
4.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절차	170
5. 장애인차별 지원절차	171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173
7.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177

목차

[표]

[표 1-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15
[표 1-2] 연도별 신고자 유형	16
[표 1-3] 연도별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17
[표 1-4] 연도별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19
[표 1-5] 연도별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및!실시율 현황	20
[표 1-6]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21
[표 1-7]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22
[표 1-8]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현황	23
[표 1-9]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현황	24
[표 1-10] 연도별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26
[표 1-11]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27
[표 1-12] 연도별 피해장애인 주장유형 현황	28
[표 1-13]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30
[표 1-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31
[표 1-1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32
[표 2-1] 2024년 신고접수 현황	37
[표 2-2] 월별 신고접수 현황	38
[표 2-3]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40
[표 2-4] 신고접수 방법 현황	41
[표 2-5] 신고접수 경로 현황	42
[표 3-1-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 현황	45
[표 3-1-2] 신고자 유형	45
[표 3-1-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8
[표 3-1-4]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9

[표 3-1-5]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51
[표 3-1-6] 사례판정 현황	52
[표 3-1-7] 상담 및 지원 현황	53
[표 3-1-8] 종결사례 현황	54
[표 3-1-9] 모니터링 현황	55
[표 3-2-1] 장애인학대 유형	56
[표 3-2-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57
[표 3-2-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58
[표 3-2-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59
[표 3-2-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61
[표 3-2-6]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62
[표 3-2-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63
[표 3-2-8]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64
[표 3-2-9]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65
[표 3-2-10]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66
[표 3-2-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69
[표 3-2-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70
[표 3-2-13]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	71
[표 3-2-14] 학대 발생 장소 현황	72
[표 3-2-15] 재학대 유형 분석	74
[표 3-2-16] 재학대 피해장애인 연령	75
[표 3-2-17]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76
[표 3-2-18]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77
[표 3-2-19] 재학대 행위자 성별	78
[표 3-2-20] 재학대 행위자 연령	79
[표 3-2-21]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81
[표 3-2-22]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	82

목차

[표 3-2-23]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83
[표 3-2-24] 재학대 발생 장소	85
[표 3-2-25] 시·군별 재학대 현황	86
[표 3-3-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88
[표 3-3-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현황	89
[표 3-3-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90
[표 3-3-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91
[표 3-3-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92
[표 3-3-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현황	93
[표 3-3-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94
[표 3-3-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95
[표 3-3-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상태 현황	96
[표 3-3-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97
[표 3-3-1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현황	98
[표 3-3-12] 피해장애인쉼터 재입소 현황	99
[표 3-3-13] 피해장애인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100
[표 3-3-14]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102
[표 3-3-15]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연령 현황	103
[표 3-3-16]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가족구성 현황	104
[표 3-3-17]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유형 현황	105
[표 3-3-18]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정도 현황	106
[표 3-3-19]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107
[표 3-3-20]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의뢰기관 현황	108
[표 3-3-21]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 유형 현황	109
[표 3-3-22]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110
[표 3-3-23] 피해장애아동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111
[표 3-3-24]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현황	112

[표 3-3-25] 피해장애아동 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113
[표 4-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117
[표 4-2] 시·군별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118
[표 4-3]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119
[표 4-4]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120
[표 4-5]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122

[그래프]

[그래프 1-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15
[그래프 1-2] 연도별 신고자 유형	16
[그래프 1-3] 연도별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18
[그래프 1-4] 연도별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19
[그래프 1-5] 연도별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20
[그래프 1-6]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21
[그래프 1-7]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22
[그래프 1-8]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현황	23
[그래프 1-9]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현황	25
[그래프 1-10] 연도별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26
[그래프 1-11]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27
[그래프 1-12] 연도별 피해장애인 주장유형 현황	29
[그래프 1-13]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30
[그래프 1-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31
[그래프 1-1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33
[그래프 2-1] 2024년 신고접수 현황	37

목차

[그래프 2-2] 신고접수 현황 비교 : 2023, 2024년	37
[그래프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38
[그래프 2-4] 신고접수 방법 현황	41
[그래프 2-5] 신고접수 경로 현황	42
[그래프 3-1-1] 신고자 유형	45
[그래프 3-1-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7
[그래프 3-1-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50
[그래프 3-1-4]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51
[그래프 3-1-5] 사례판정 현황	52
[그래프 3-1-6] 학대의심사례 현황	53
[그래프 3-1-7] 상담 및 지원 횟수	53
[그래프 3-1-8]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53
[그래프 3-1-9] 종결사례 현황	54
[그래프 3-1-10]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현황	54
[그래프 3-1-11] 모니터링 실시 현황	55
[그래프 3-1-12] 모니터링 실시 횟수	55
[그래프 3-2-1] 장애인학대 유형	56
[그래프 3-2-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57
[그래프 3-2-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58
[그래프 3-2-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60
[그래프 3-2-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61
[그래프 3-2-6]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61
[그래프 3-2-7]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62
[그래프 3-2-8] 거주 형태_남부	62
[그래프 3-2-9] 거주 형태_북부	62
[그래프 3-2-10]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63

[그래프 3-2-11] 수급자 여부_남부	63
[그래프 3-2-12] 수급자 여부_북부	63
[그래프 3-2-13]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64
[그래프 3-2-14]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65
[그래프 3-2-15] 학대행위자 성별_남부	65
[그래프 3-2-16] 학대행위자 성별_북부	65
[그래프 3-2-17]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66
[그래프 3-2-1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67
[그래프 3-2-1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타인	67
[그래프 3-2-2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신고의무자	68
[그래프 3-2-2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비신고의무자	68
[그래프 3-2-2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70
[그래프 3-2-23] 동거 여부 현황_남부	70
[그래프 3-2-24] 동거 여부 현황_북부	70
[그래프 3-2-25]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1	71
[그래프 3-2-26]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2	71
[그래프 3-2-27] 학대 발생 장소	73
[그래프 3-2-28] 재학대 유형 분석	74
[그래프 3-2-29] 재학대 피해장애인 연령	75
[그래프 3-2-30]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76
[그래프 3-2-31]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77
[그래프 3-2-32]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77
[그래프 3-2-33] 재학대 행위자 성별	78
[그래프 3-2-34] 재학대 행위자 성별_남부	78
[그래프 3-2-35] 재학대 행위자 성별_북부	78
[그래프 3-2-36] 재학대 행위자 연령	79
[그래프 3-2-37]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80

목차

[그래프 3-2-38]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80
[그래프 3-2-39]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타인	80
[그래프 3-2-40]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_1	82
[그래프 3-2-41]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_2	82
[그래프 3-2-42]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_1	83
[그래프 3-2-43]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_2	83
[그래프 3-2-44] 재학대 발생 장소	84
[그래프 3-2-45] 시·군별 재학대 현황	87
[그래프 3-3-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88
[그래프 3-3-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현황	89
[그래프 3-3-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90
[그래프 3-3-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91
[그래프 3-3-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92
[그래프 3-3-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현황	93
[그래프 3-3-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94
[그래프 3-3-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95
[그래프 3-3-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상태 현황	96
[그래프 3-3-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97
[그래프 3-3-1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현황	98
[그래프 3-3-12] 피해장애인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101
[그래프 3-3-13]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102
[그래프 3-3-14]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연령 현황	103
[그래프 3-3-15]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가족구성 현황	104
[그래프 3-3-16]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유형 현황	105
[그래프 3-3-17]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정도 현황	106
[그래프 3-3-18]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107
[그래프 3-3-19]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의뢰기관 현황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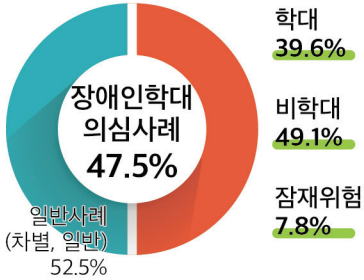
[그래프 3-3-20]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 유형 현황	109
[그래프 3-3-21]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110
[그래프 3-3-22] 피해장애아동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111
[그래프 3-3-23]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현황	112
[그래프 3-3-24] 피해장애아동 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114
[그래프 4-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117
[그래프 4-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119
[그래프 4-3]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121
[그래프 4-4]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123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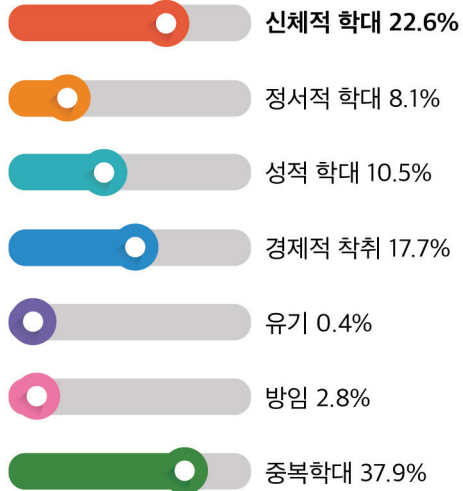
[그림 1]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 지역	8
[그림 2]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167
[그림 3]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절차	168
[그림 4]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지원 체계도	169
[그림 5] 도(道)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 체계도	170
[그림 6]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 사례지원 체계도	172

2024 경기도 장애인학대·차별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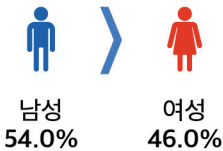
신고접수



장애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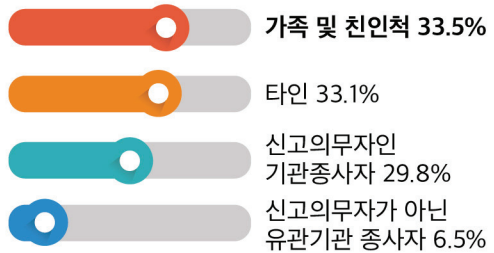
피해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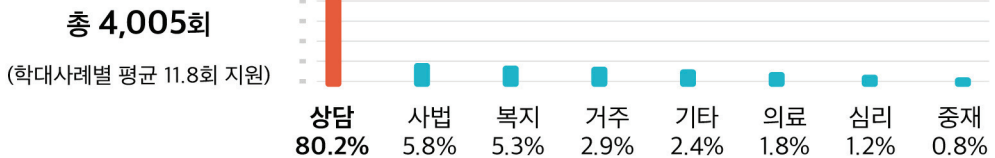
피해자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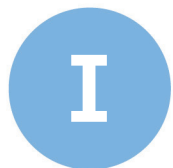


주요 학대행위자



상담 및 지원





서론

1. 발간목적
2.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의 개요
3. 자료수집과정
4. 자료분석방법
5. 3년간 주요 현황 변화

1. 발간목적(발간배경)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학대 및 차별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아동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각 1개소(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학대 및 차별의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등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접적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를 포함하여 도내에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의 설치로 장애인학대 및 차별 신고와 조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매년 경기도 내 장애인학대 및 차별에 관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학대·차별 현황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라 경기도민들에게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차별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의 개요

1) 경기도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가지며, 경기도 시사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동법 제12조의3에 따라 경기도 내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내 장애인 인권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자립 지원)

- ① 도지사는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금의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 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_경기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업무편람_경기도
-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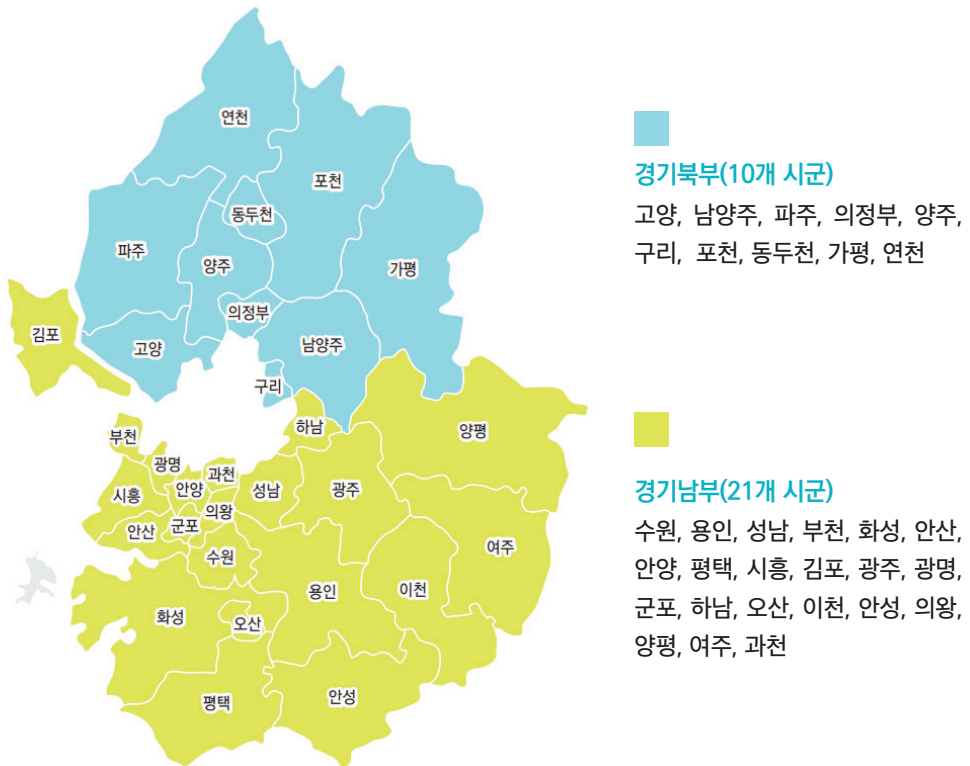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지원
-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예방 등 교육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시·군 이행사항 모니터링

(2) 사업 수행기관

□ 기관 현황

구분	소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남부지역 관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북부지역 관할)
위탁기간	3년	2025. 1. 1. ~ 2027.12.31.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양주시
운영인력	25명	14명(관장 1, 팀장 3, 직원 10)	11명(관장 1, 팀장 3, 직원 7)



[그림 1]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 지역

3) 피해장애인쉼터

(1)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 권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피해장애인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서_경기도
- 「피해장애인쉼터」사무업무편람_경기도
- 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규정

□ 사업개요

-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 수행기관

□ 기관 현황

구분	소계	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 남부지역 관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 북부지역 관할)
위탁기간	5년	2022.01.01.~2026.12.31.	2021.12.30.~2026.12.29.
소재지	-	경기도 내 (비공개)	
운영인력	20명	10명(원장1, 팀장1, 직원8)	10명(원장1, 팀장1, 직원8)

□ 경기도 내 쉼터 특성

○ ▲독립형¹⁾, ▲남녀구분형²⁾, ▲LH임대주택형³⁾, ▲지역사회통합형⁴⁾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

□ 쉼터별 지원항목

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 남부지역 관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 북부지역 관할)		
항목	세부사업명	비고	항목	세부사업명	비고
사회심리 재활사업	전문심리 지원	정신과진료/ 심리체육·심리운동 언어치료 전문상담소 이용 등	사회심리 재활사업	전문심리 지원 및 여가지원	심리상담·심리재활· 사회기능회복· 문화여가 별빛체험 등
교육·의료 재활사업	교육재활 사업	범죄피해예방교육/ 직업훈련연계/ 자체 프로그램 (요리,금전,성교육 등)	교육·의료 재활사업	교육 재활사업	성·인권교육 / 소방·안전교육/ 교육활동 (개별학습 등)
	의료지원	학대에 의한 상해· 성인병 치료 등		의료지원	병원 동행, 진료 및 치료 등
기타사업	사회참여 사업	관공서이용, 나들이, 각종행사참여 등	기타사업	종사자교육	종사자교육 (인권교육 등) 종사자 워크숍, 사업평가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	거주지마련, 주거 초기세팅 등		지역자원 개발	지역네트워크 구축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
운영사업	일상생활 지원	보호 및 숙식제공	운영사업	일상생활 지원	식생활지도·간식지도 ·신변자립훈련 등
	사례관리	상담 및 지원계획/ 사례종결/ 사후모니터링		사례관리	사례회의 및 사후관리

- 1) 기존 쉼터는 장애인주단지보호센터 통합형 설치.
- 2) 남녀 주택 구분하여 별도 주택으로 설치.
- 3)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설치.
- 4) 변화가와 이웃한 주택가에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설치.

□ 입소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등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 가능

4) 피해장애아동쉼터

(1)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권「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피해장애인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서_경기도
-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사무업무편람_경기도
-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규정

□ 사업개요

- 피해장애아동 임시 보호 및 지원
 - 피해장애아동의 긴급분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 피해장애아동에게 숙식제공
 - 쉼터 생활 및 필수품 지원
- 상담 및 치료지원
 - 심리적 안정과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
- 학업 및 의료지원
 -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학업지도 및 안전교육 등 교육지원
 -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등 의료지원 연계
- 일상복귀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지원
 - 여가 및 문화체험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원가정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2) 사업 수행기관

□ 기관 현황

구분	소계	경기도피해장애아동 남아쉼터	경기도피해장애아동 여아쉼터
위탁기간	5년	2022. 11. 11.~2027. 11. 10	
소재지	-	경기도 내 (비공개)	
운영인력	12명	6명(원장 1(겸임), 팀장 1, 생활복지사 4)	6명(팀장1, 치료사 1, 생활복지사 4)

□ 피해장애아동 지원사업

피해장애아동 지원사업은 학대·방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정서 회복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돕는 종합 지원사업

□ 입소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도, 시·군·구 등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 입소 도중 만 18세에 도달하는 장애아동은 최대 입소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장애아동 쉼터에서 보호 가능,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경로 등에 따라 입소 가능

3. 자료수집과정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의 모든 지원과정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전국 공통)에 입력·관리 되고 있다. 장애인 학대 및 차별 현황 통계 분석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정보를 취합하였다.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에 입소된 사례와 모든 지원과정은 전국피해장애인·장애아동쉼터협회의 협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입력·관리 되고 있으며, 입소에 따른 통계 분석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 보고된 정보를 취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보고서의 통계는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각 항목의 합계가 100.0%가 아닐 수 있으며, 각 분석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류		분석항목
신고접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 전체, 월별, 시·군별 신고접수 ○ 신고접수 방법 ○ 신고접수 경로
장애인학대 사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 학대조사 ○ 사례판정 ○ 상담 및 지원 ○ 사례종결 ○ 모니터링
	장애인학대 판정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사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유형 - 피해장애인 :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거주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부, 지원유형 - 학대행위자 : 성별, 연령, 피해장애인의 관계, 피해장애인 동거여부,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 학대발생 장소 ○ 재학대 현황

5. 3년간 주요 현황 변화(2022년, 2023년,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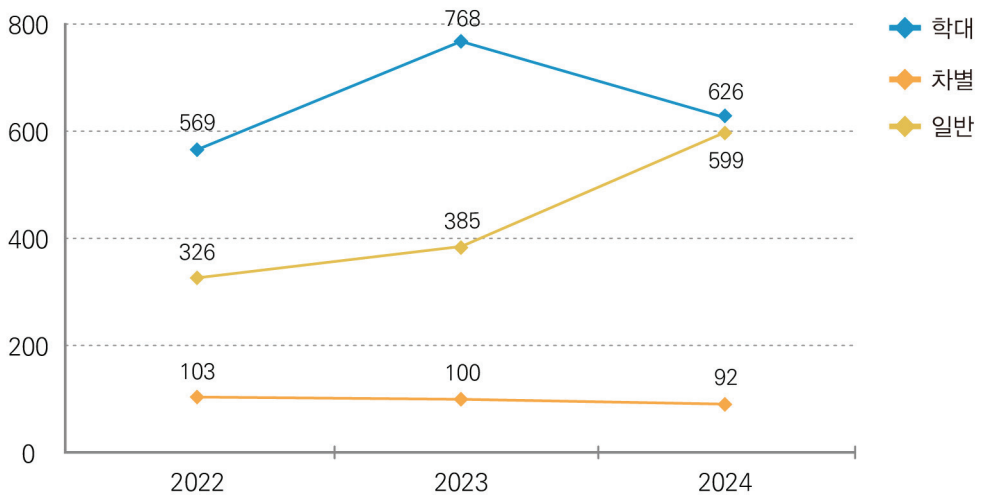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1-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학대	569	768	626
차별	103	100	92
일반	326	385	599
계	998	1,253	1,317

[그래프 1-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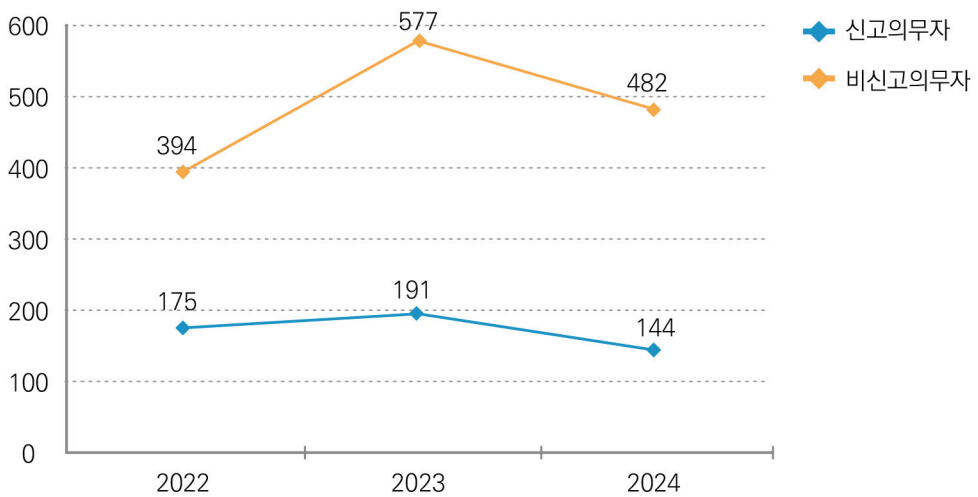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표 1-2] 연도별 신고자 유형

구분	2022	2023	2024
신고의무자	175	191	144
비신고의무자	394	577	482
계	569	768	626

[그래프 1-2] 연도별 신고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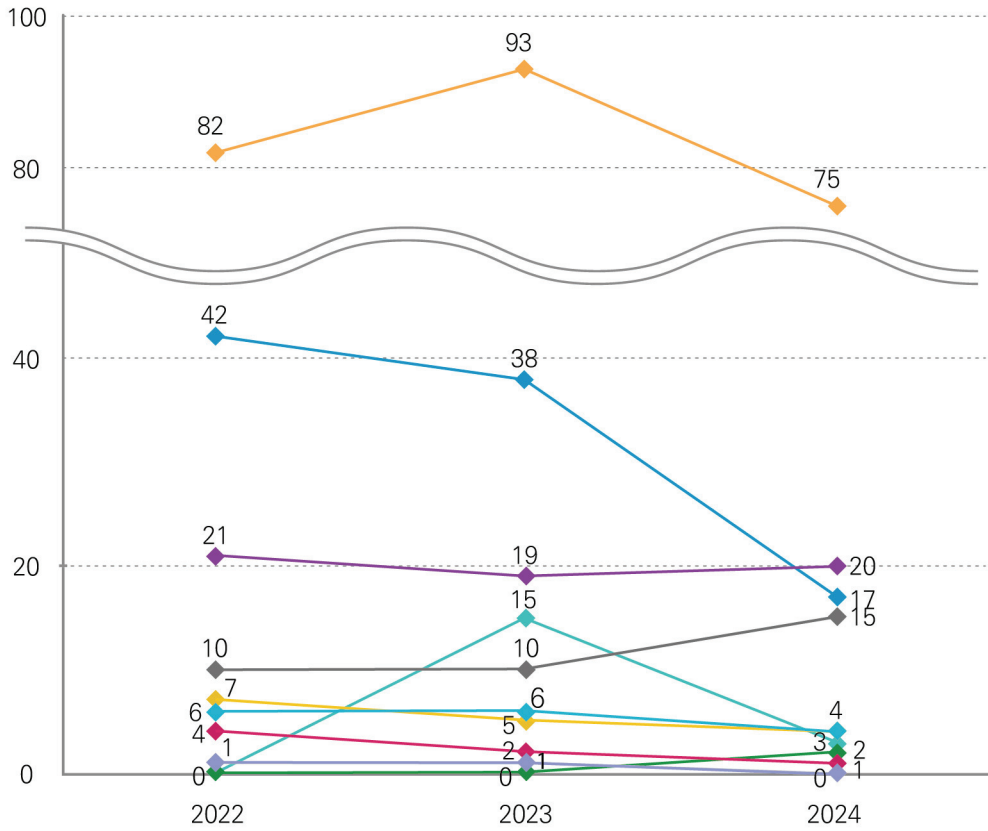


[표 1-3] 연도별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신고의무자	2022	2023	2024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2	38	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2	93	75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0	10	15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7	5	4
의료기사	-	-	-
응급구조사	-	-	-
구급대의 대원	-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	-	2
보육 교직원	-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	-
초·중·고 교직원 등	21	19	2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지원센터 종사자	6	6	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4	2	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1	-
장기요양시설	1	1	3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	-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장기요양인정신청조사 담당자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1	1	-
사회복무요원	-	15	3
계	175	191	144

[그래프 1-3] 연도별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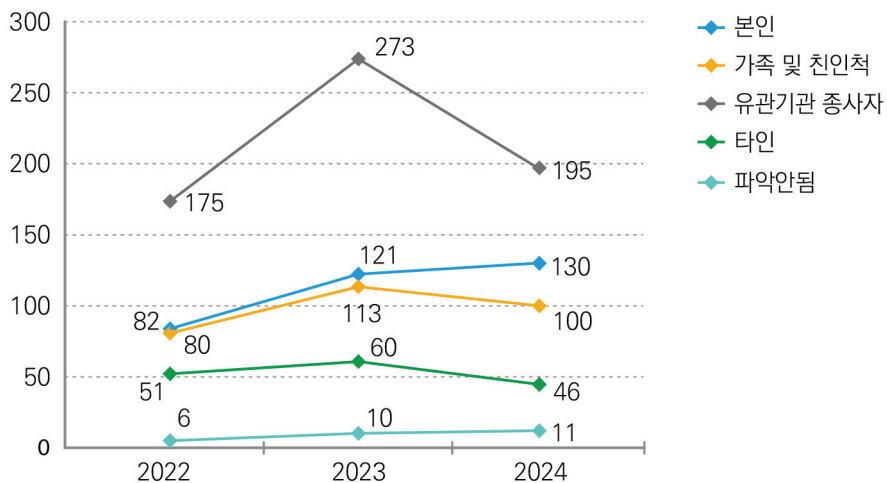
-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지원센터 종사자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장기요양시설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초·중·고 교직원 등
- ◆ 사회복무요원

[표 1-4] 연도별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비신고의무자		2022	2023	2024
본인		82	121	130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	2	4
	자녀	49	43	9
	부모	3	31	53
	형제자매	15	25	16
	친인척	12	12	18
	소계	80	113	100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17	15	23
	경찰공무원	42	57	31
	공공기관 종사자	3	3	4
	교육기관 종사자	2	4	2
	의료기관 종사자	4	3	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93	175	112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3	1	3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3	2	3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8	13	15
	소계	175	273	195
타인		51	60	46
파악 안됨		6	10	11
계		394	577	482

[그래프 1-4] 연도별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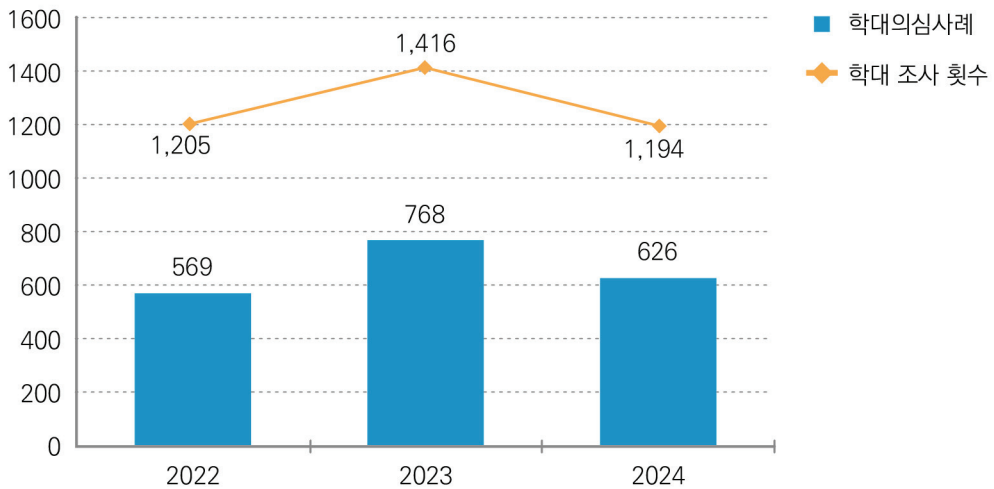
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표 1-5] 연도별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단위: 건, 회)

구 분	학대의심사례	학대 조사	학대 조사 실시율	학대 조사 횟수	사례별 조사 횟수
2022	569	565	99.3	1,205	2.1
2023	768	760	99.0	1,416	1.8
2024	626	624	99.5	1,194	1.9

[그래프 1-5] 연도별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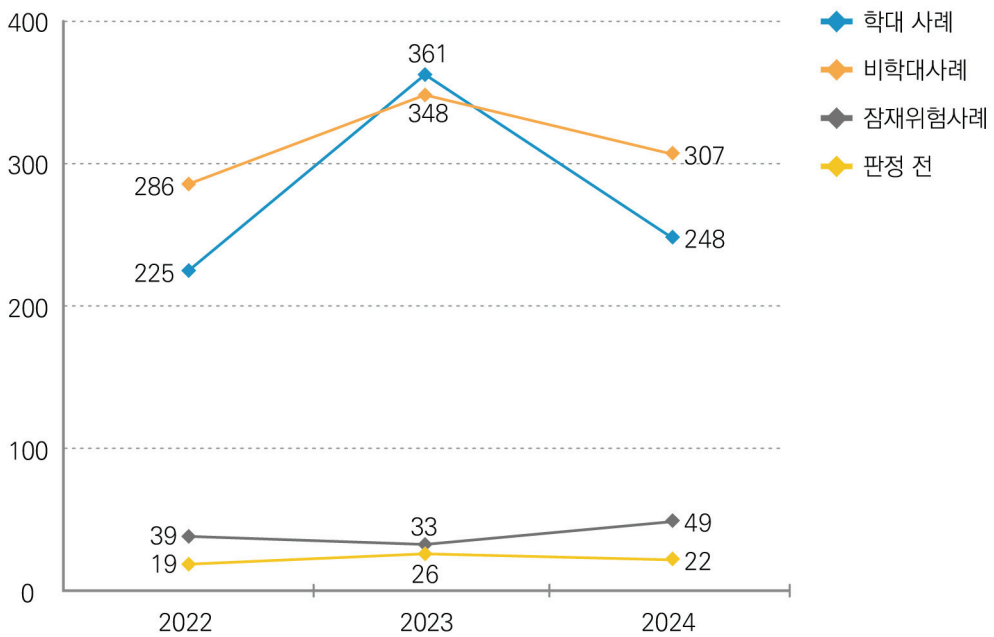
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표 1-6]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구분	학대 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판정 전	계
2022	225	286	39	19	569
2023	361	348	33	26	768
2024	248	307	49	22	626

[그래프 1-6]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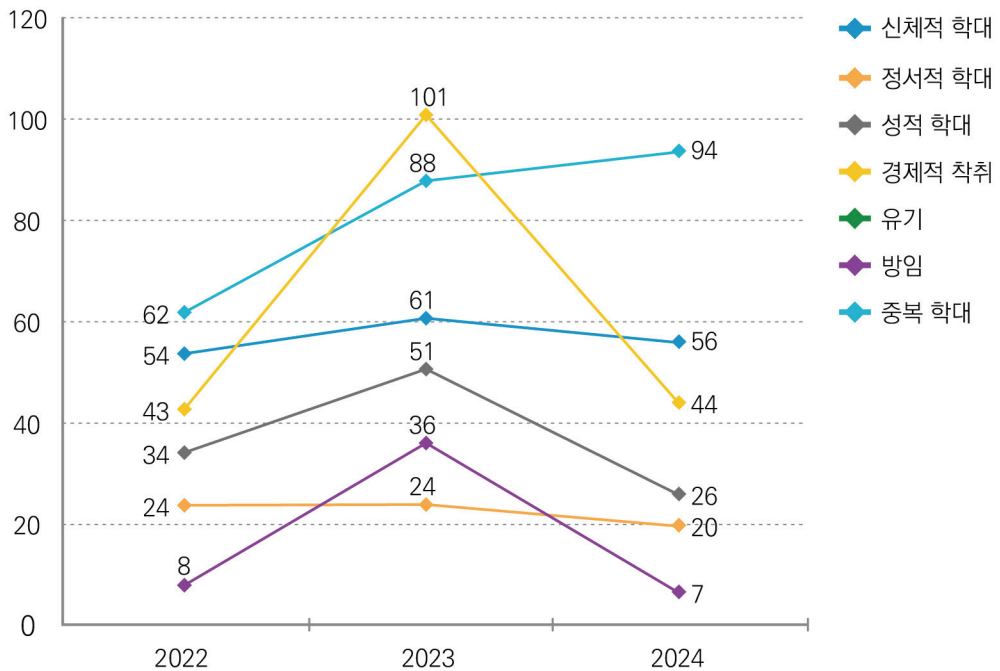
5)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표 1-7]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단위: 건)

유형	2022	2023	2024
신체적 학대	54	61	56
정서적 학대	24	24	20
성적 학대	34	51	26
경제적 착취	43	101	44
유기	-	-	1
방임	8	36	7
중복 학대	62	88	94
계	225	361	248

[그래프 1-7] 연도별 학대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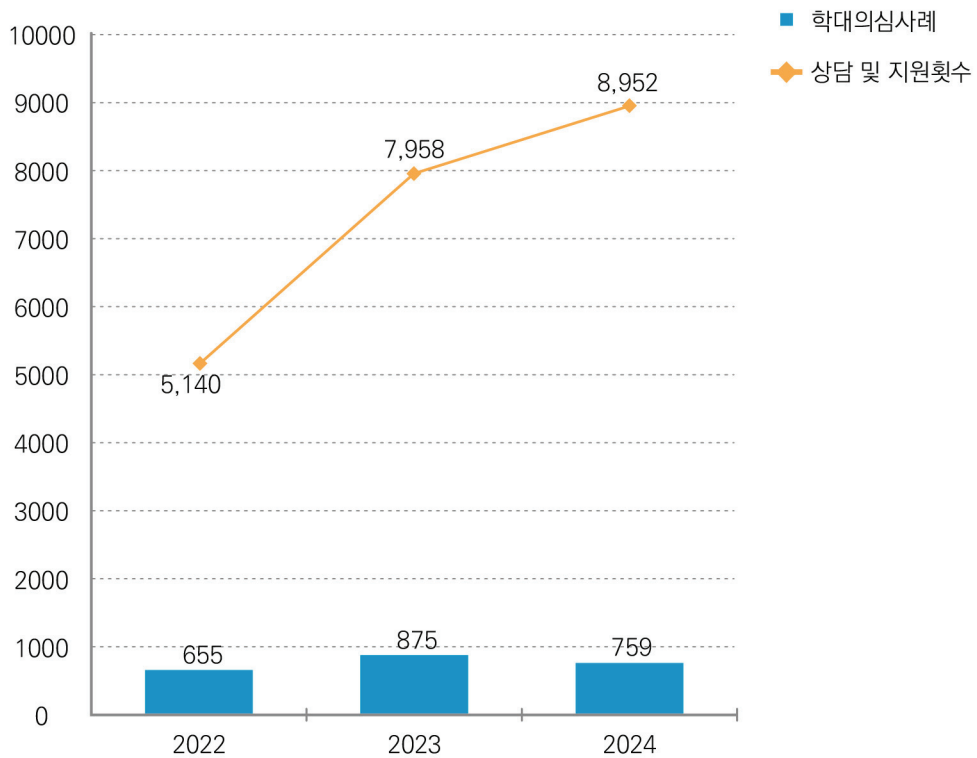
6)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현황

[표 1-8]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현황

(단위: 건, %)

구분	당해연도 전		당해연도		계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2022	86	798	569	4,342	655	5,140	7.8
2023	107	1,560	768	6,398	875	7,958	9.1
2024	133	2,588	626	6,364	759	8,952	11.8

[그래프 1-8] 연도별 상담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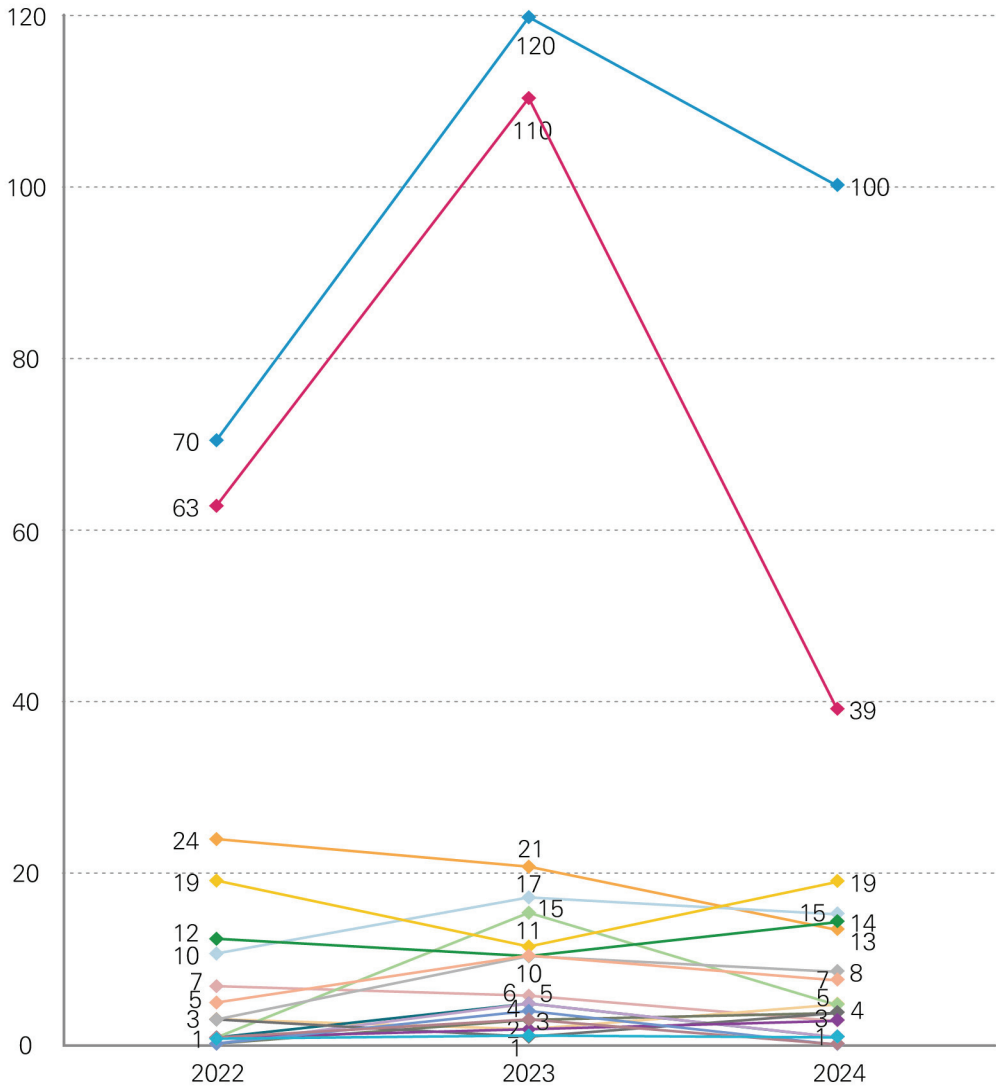
7)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현황

[표 1-9]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현황

(단위: 건)

발생 장소		2022	2023	2024
	피해장애인 거주지	70	120	100
	학대행위자 거주지	24	21	13
	기타 거주지	3	1	4
	직장(일하는 곳)	19	11	19
	교육기관	12	10	14
	일반 의료기관	1	2	3
	정신 의료기관	1	1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63	110	3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	10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3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보호시설(쉼터)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1	15	5
	정신요양시설	-	-	-
	정신재활시설	-	-	-
	아동 관련 기관	1	5	1
	노인 관련 기관	-	3	4
	기타 복지 관련 기관	1	2	1
	종교시설	-	4	-
	미신고시설	-	5	1
	노상	5	10	7
	온라인	3	2	5
	상업시설	10	17	15
	기타	7	6	3
	파악 안됨	-	3	5
	계	225	361	248

[그래프 1-9]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현황



- ◆ 피해장애인 거주지
- ◆ 장애인 거주시설
- ◆ 종교시설
- ◆ 학대행위자 거주지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미신고시설
- ◆ 기타 거주지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노상
- ◆ 직장(일하는 곳)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온라인
- ◆ 교육기관
- ◆ 아동 관련 기관
- ◆ 상업시설
- ◆ 일반 의료기관
- ◆ 노인 관련 기관
- ◆ 기타
- ◆ 정신 의료기관
- ◆ 기타 복지 관련 기관
- ◆ 파악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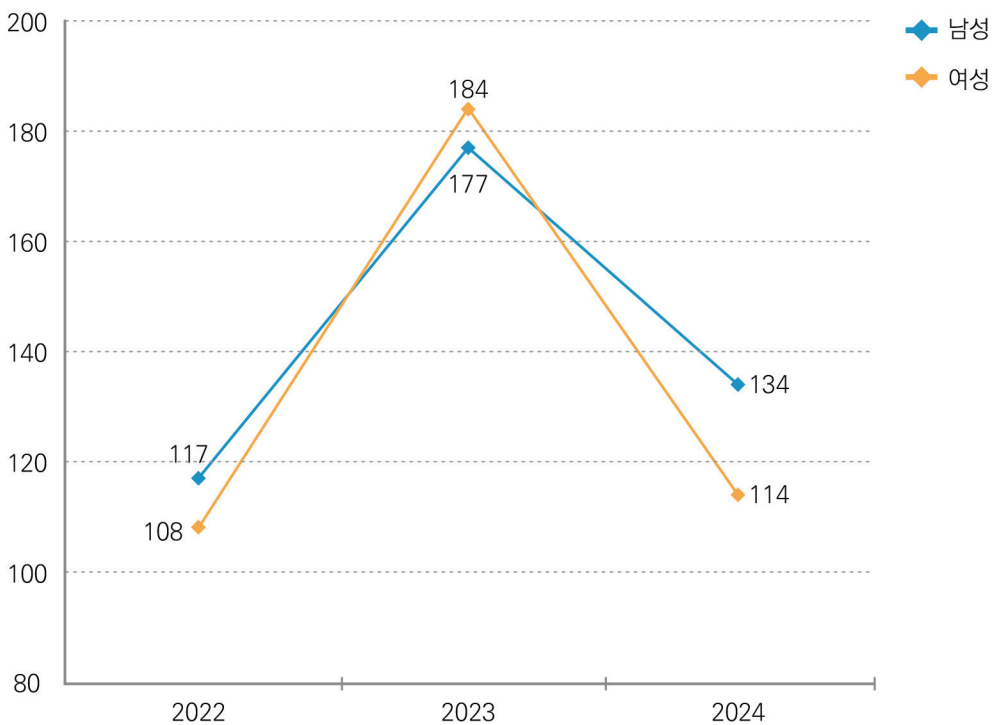
8) 연도별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표 1-10] 연도별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남성	여성	계
2022	117	108	225
2023	177	184	361
2024	134	114	248

[그래프 1-10] 연도별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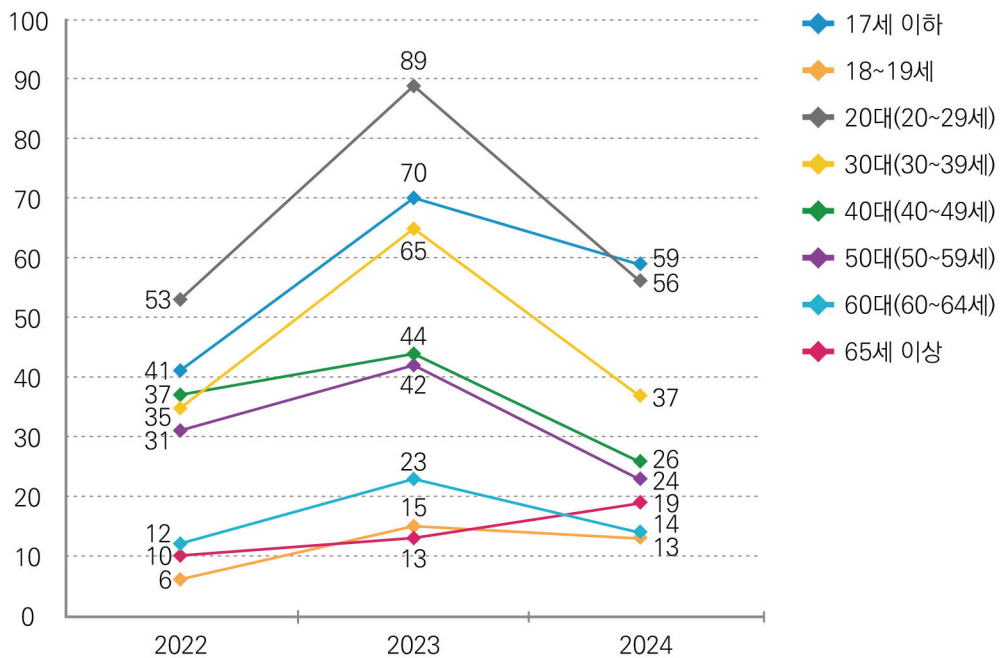
9)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표 1-11]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단위: 명)

연령	2022	2023	2024
17세 이하	41	70	59
18~19세	6	15	13
20대(20~29세)	53	89	56
30대(30~39세)	35	65	37
40대(40~49세)	37	44	26
50대(50~59세)	31	42	24
60대(60~64세)	12	23	14
65세 이상	10	13	19
계	225	361	248

[그래프 1-11] 연도별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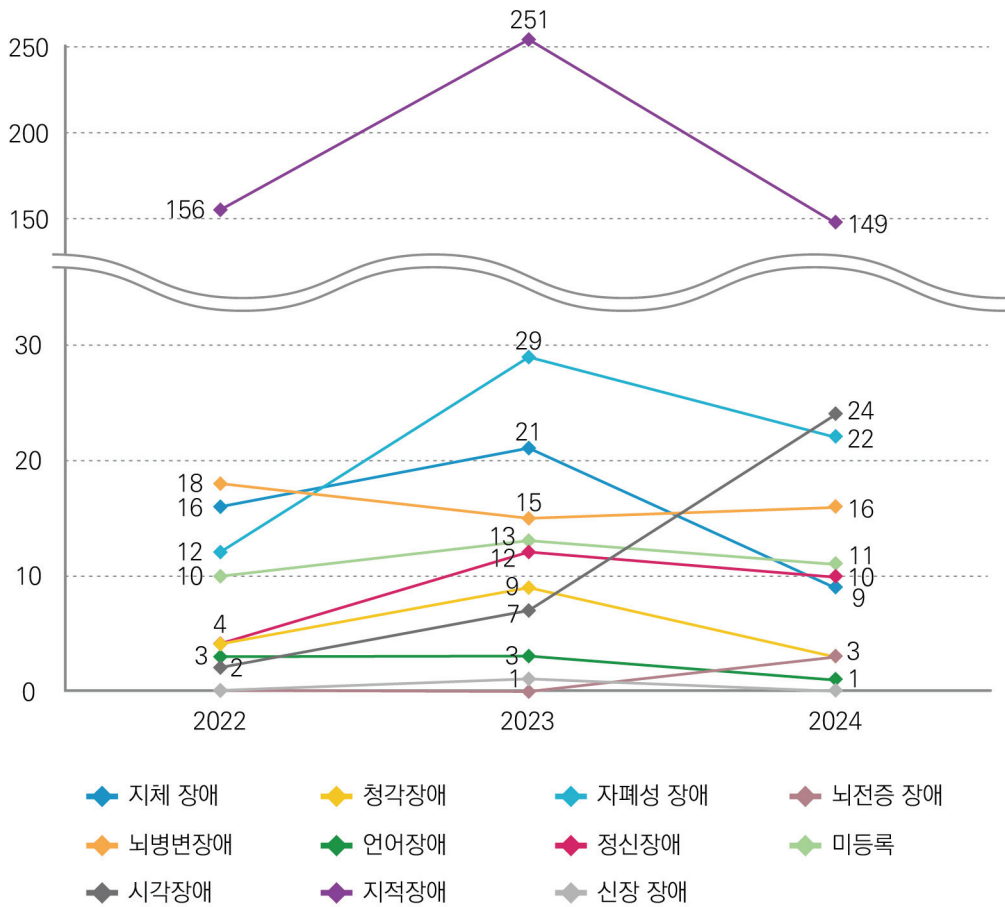
10) 연도별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현황

[표 1-12] 연도별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현황

(단위: 건)

장애 유형	2022	2023	2024
지체 장애	16	21	9
뇌병변장애	18	15	16
시각장애	2	7	24
청각장애	4	9	3
언어장애	3	3	1
지적장애	156	251	149
자폐성 장애	12	29	22
정신장애	4	12	10
신장 장애	-	1	-
심장 장애	-	-	-
호흡기 장애	-	-	-
간 장애	-	-	-
안면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	-
뇌전증 장애	-	-	3
미등록	10	13	11
계	225	361	248

[그래프 1-12] 연도별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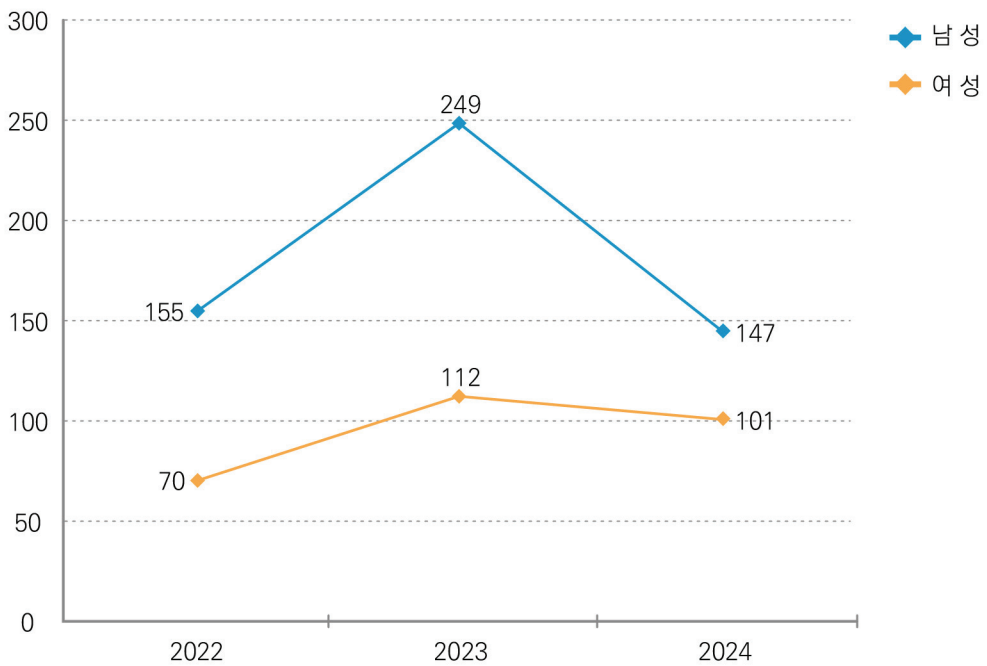
11)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표 1-13]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단위: 건)

성 별	2022	2023	2024
남 성	155	249	147
여 성	70	112	101
계	225	361	248

[그래프 1-13] 연도별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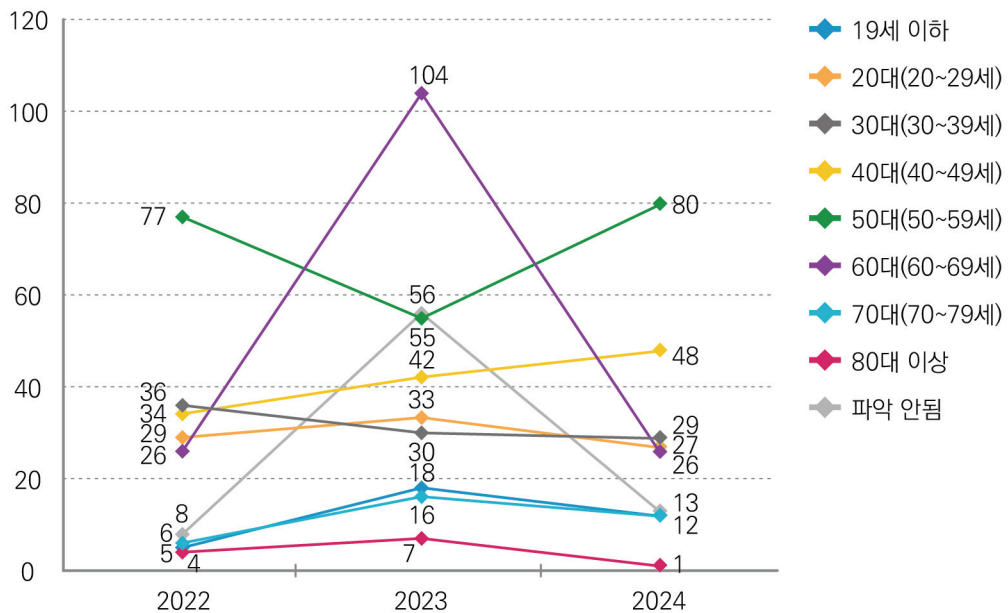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표 1-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단위: 명)

연령	2022	2023	2024
19세 이하	5	18	12
20대(20~29세)	29	33	27
30대(30~39세)	36	30	29
40대(40~49세)	34	42	48
50대(50~59세)	77	55	80
60대(60~69세)	26	104	26
70대(70~79세)	6	16	12
80대 이상	4	7	1
파악 안됨	8	56	13
계	225	361	248

[그래프 1-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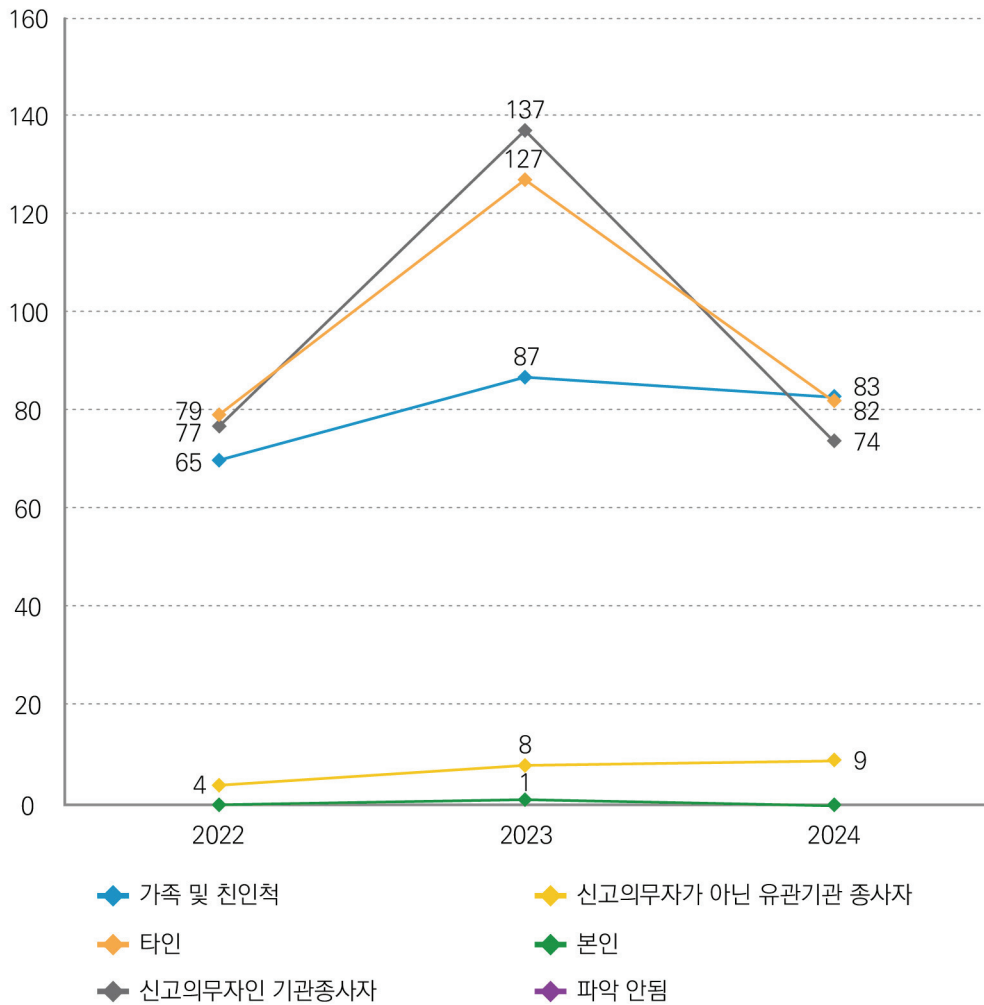
13)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표 1-1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단위: 건)

관계		2022	2023	2024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1	22	14
	부	17	25	25
	모	11	21	18
	조부모	3	-	2
	자녀	5	2	3
	손자녀	-	-	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9	12	10
	그 외 친척	9	5	9
소계		65	87	83
타인	동거인	4	12	9
	이웃	3	12	4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3	72	58
	고용주	10	4	2
	모르는 사람	19	27	9
	소계	79	127	82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3	124	52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	5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1	3
	보육 교직원	1	1	1
	초·중·고 교직원 등	7	1	8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1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1	-
	장기요양요원	-	1	3
	사회복부요원	2	3	3
소계	77	137	74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2	-
	의료기관 종사자	-	1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4	4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1	-	-
	기타 복지관련 기관 종사자	3	1	4
	공공기관 종사자	-	-	1
	소계	4	8	9
본인		-	1	-
파악 안됨		-	1	-
계		225	361	248

[그래프 1-1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II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2. 신고접수 방법
3. 신고접수 경로

1. 신고접수

1) 2024년 신고접수(학대, 차별, 일반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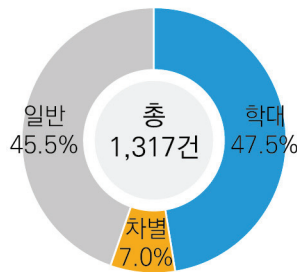
전체 신고 1,317건 중 학대의심사례 626건(47.5%), 일반사례 599건(45.5%), 차별 92건(7.0%) 순으로 전년도 신고접수 1,253건 대비 64건(5.1%) 증가하였다.

[표 2-1] 2024년 신고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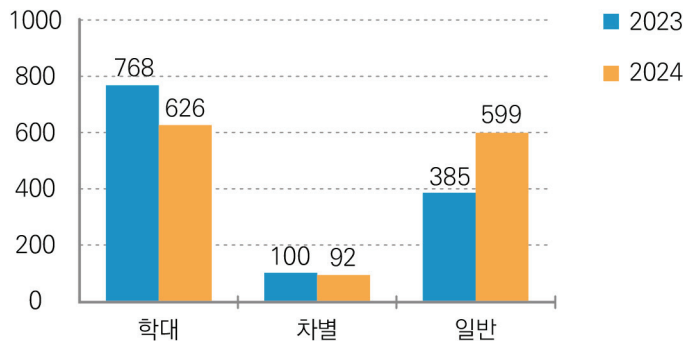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학대	차별	일반	계
계	626(47.5)	92(7.0)	599(45.5)	1,317(100)
경기 남부	372(42.8)	52(6.0)	445(51.2)	869(100)
경기 북부	254(56.7)	40(8.9)	154(34.4)	448(100)

[그래프 2-1] 2024년 신고접수 현황



[그래프 2-2] 신고접수 현황 비교 : 2023, 2024년



2) 월별 신고접수

월평균 신고접수 건은 110건이다. 학대의심사례는 월평균 52건, 일반사례는 월평균 50건, 차별사례는 월평균 8건이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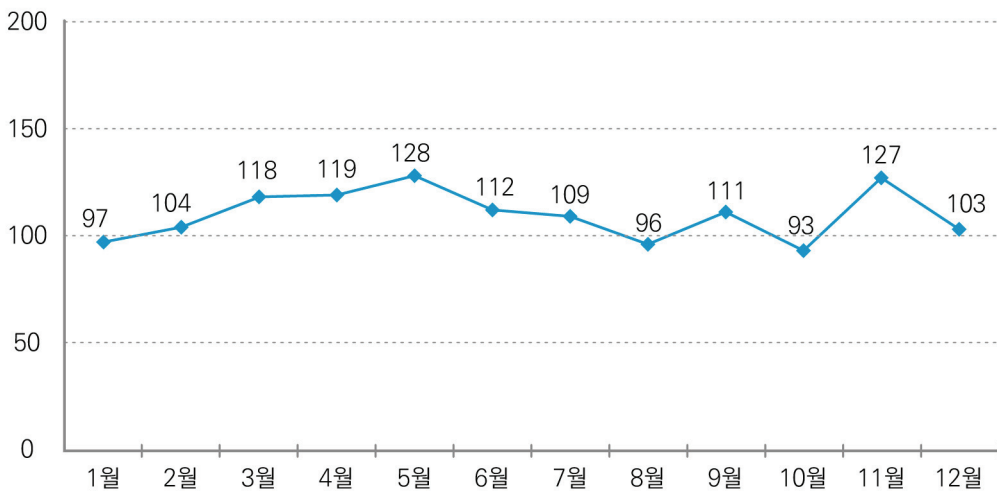
월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5월 128건(9.7%), 11월 127건(9.6%), 4월 119건(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 평균
학대	55	51	42	48	54	53	55	50	57	49	65	47	626	52
차별	3	7	9	12	15	6	4	6	11	7	6	6	92	8
일반	39	46	67	59	59	53	50	40	43	37	56	50	599	50
계	97	104	118	119	128	112	109	96	111	93	127	103	1,317	110

[그래프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3) 시·군별 신고접수

시·군별 전체 신고접수 현황은 수원시 107건(8.1%), 안산시 71건(5.4%), 고양시와 파주시가 67건(5.1%)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전체 신고접수 중 학대신고접수 만을 살펴보면, 수원시 58건(9.3%), 파주시 51건(8.1%), 안산시 45건(7.2%), 포천시 41건(6.5%) 순으로 많았다.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은 신고접수 당시 피해자의 실거주 지역을 확인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고접수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 된 것은 아니다. 즉, 피해자의 실거주 지역과 피해 발생 지역은 상이하다.

기타(타 지역)의 경우, 경기도 외의 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접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던 중 피해자가 거주지를 경기도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상담의 경우 내담자가 거주지역을 밝히지 않고 전화상담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내담자의 거주지역을 파악 할 수 없으므로 파악안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시·군	학대	비율	차별	비율	일반	비율	계	비율
수원시	58	9.3	3	3.3	46	7.7	107	8.1
성남시	28	4.5	-	-	15	2.5	43	3.3
안양시	16	2.5	4	4.3	12	2.0	32	2.4
부천시	19	3.0	2	2.2	11	1.8	32	2.4
광명시	8	1.3	-	-	7	1.2	15	1.1
평택시	20	3.2	2	2.2	12	2.0	34	2.6
안산시	45	7.2	1	1.1	25	4.2	71	5.4
과천시	-	-	-	-	3	0.5	3	0.2
오산시	9	1.4	3	3.3	23	3.8	35	2.7
시흥시	31	4.9	2	2.2	17	2.8	50	3.8
군포시	5	0.8	-	-	2	0.3	7	0.6
의왕시	1	0.2	-	-	6	1.0	7	0.6
하남시	5	0.8	-	-	1	0.2	6	0.5
용인시	21	3.4	4	4.3	23	3.8	48	3.6
이천시	4	0.6	-	-	4	0.7	8	0.6
안성시	10	1.6	1	1.1	10	1.7	21	1.6
김포시	14	2.2	2	2.2	20	3.3	36	2.7
화성시	28	4.5	4	4.3	21	3.5	53	4.0
광주시	18	2.9	3	3.3	11	1.8	32	2.4
여주시	9	1.4	-	-	6	1.0	15	1.1
양평군	13	2.1	-	-	5	0.8	18	1.4
고양시	36	5.8	8	8.7	23	3.8	67	5.1
남양주시	32	5.1	4	4.3	9	1.5	45	3.4
파주시	51	8.1	7	7.6	9	1.5	67	5.1
의정부시	27	4.3	7	7.6	19	3.2	53	4.0
양주시	27	4.3	1	1.1	19	3.2	47	3.6
구리시	13	2.1	-	-	5	0.8	18	1.4
포천시	41	6.5	2	2.2	9	1.5	52	3.9
동두천시	18	2.9	4	4.3	7	1.2	29	2.2
가평군	3	0.5	2	2.2	7	1.2	12	0.9
연천군	5	0.8	1	1.1	4	0.7	10	0.8
기타 (타 지역)	11	1.8	3	3.3	15	2.5	29	2.2
파악안됨	-	-	22	23.8	193	32.3	215	16.3
계	626	100	92	100	599	100	1,317	100

2. 신고접수 방법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번호로 신고하는 전화신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신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온라인신고, 문자, 팩스, 우편의 방법과 상담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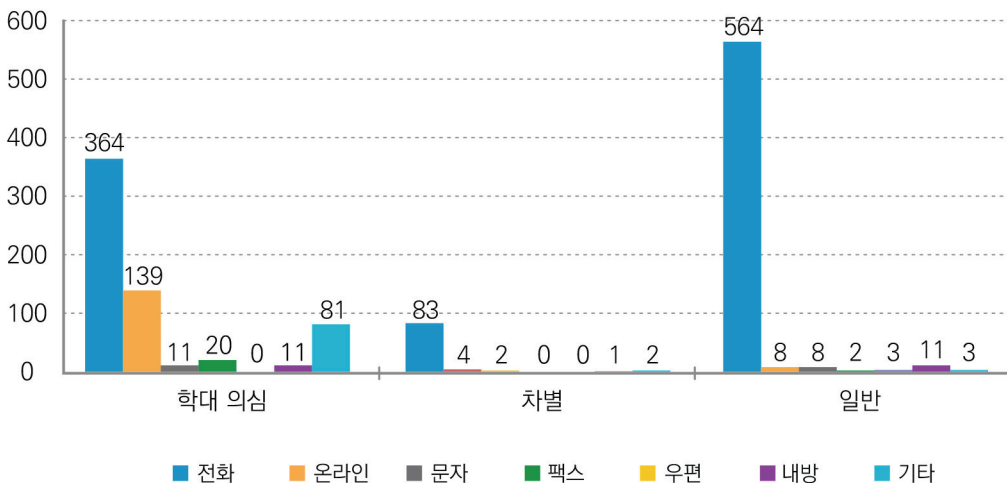
전화를 통한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지며, 이는 전체 신고의 76.8%인 1,011건이었다. 다음으로 온라인신고가 151건(11.5%), 기타가 86건(6.5%), 내방신고가 23건(1.7%), 팩스신고가 22건(1.7%) 순으로 신고·접수되었다. 기타 접수방법은 사례지원과정에서 상담원이 추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외부회의 등에서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언론에 보도되어 접수하는 사건 등이 해당된다.

[표 2-4] 신고접수 방법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기타	계
학대 의심	364	139	11	20	-	11	81	626
차별	83	4	2	-	-	1	2	92
일반	564	8	8	2	3	11	3	599
계	1,011 (76.8)	151 (11.5)	21 (1.6)	22 (1.7)	3 (0.2)	23 (1.7)	86 (6.5)	1,317 (100)

[그래프 2-4] 신고접수 방법 현황



3. 신고접수 경로

신고접수 경로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가 있다. 인지란 언론보도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방법이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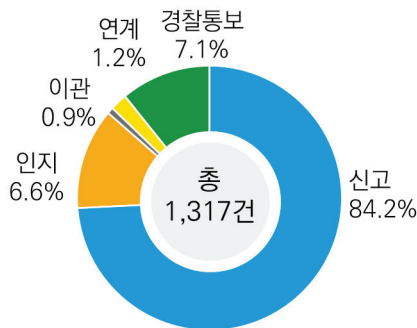
신고접수 경로를 보면 신고가 1,109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경찰통보가 93건(7.1%), 인지 87건(6.6%), 연계 16건(1.2%), 이관 12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신고접수 경로 현황

(단위: 건, %)

구분	신고	인지	연계	이관	경찰통보	계
학대 의심	436	80	10	12	88	626
차별	84	3	1	-	4	92
일반	589	4	5	-	1	599
계	1,109(84.2)	87(6.6)	16(1.2)	12(0.9)	93(7.1)	1,317(100)

[그래프 2-5] 신고접수 경로 현황



Ⅲ

장애인학대 사례

1.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분석
2.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 분석
3. 학대피해장애(아동)인 쉼터

1.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분석

1) 신고접수

[표 3-1-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신고 건수
계	626
경기 남부	372
경기 북부	254

2) 신고자 유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1항). 또한, 특정 직종에 한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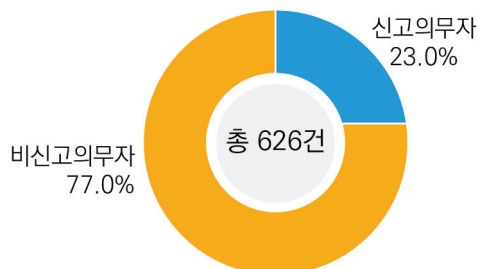
2024년 학대의심사례 626건 중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신고의무자)이 신고한 경우는 144건(23.0%),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하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482건(77.0%)이었다.

[표 3-1-2]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학대의심사례
경기 남부	85	287	372
경기 북부	59	195	254
계	144(23.0)	482(77.0)	626(100)

[그래프 3-1-1] 신고자 유형



(1)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는 직무 특성상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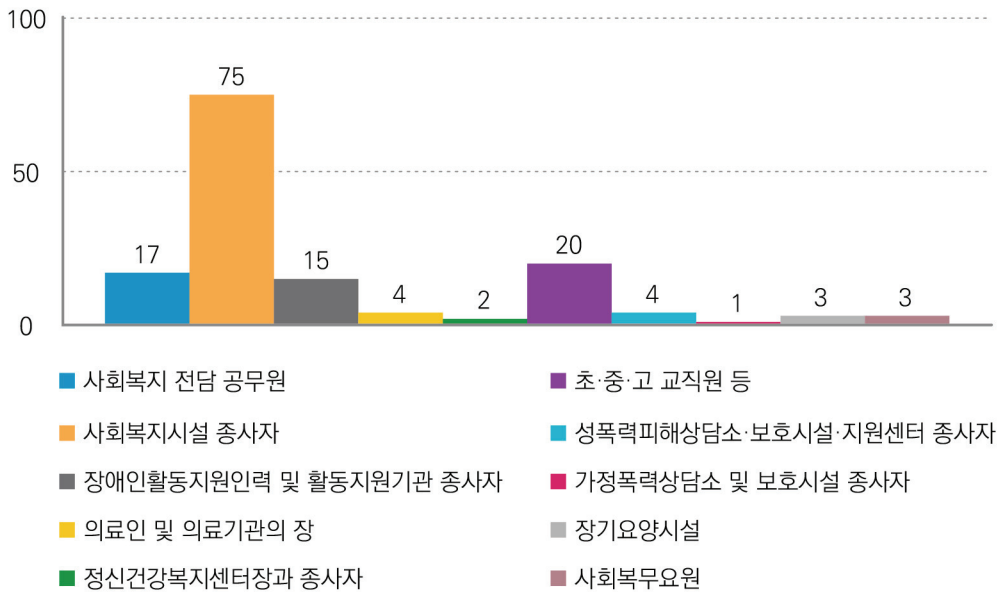
2020년부터는 기관종사자를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와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로 나누어 집계하였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한 직군으로 나누었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기타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로 나누었다.

신고의무자가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돌보는 직무 특성이 있는 만큼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행위 처벌과 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의료인 등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보호시설의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 활동지원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장기요양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 의료기사 ☑ 응급구조사 ☑ 구급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 학교의 교사 ☑ 유치원 ☑ 학원강사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성매매피해 ☑ 가정폭력 ☑ 한부모 ☑ 청소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의심 신고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75건(52.0%)로 가장 많았고, 초·중·고 교직원 20건(13.9%),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7건(11.8%),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5건(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3-1-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표 3-1-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계	남부	북부	비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7	12	5	1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5	41	34	52.0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5	8	7	10.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	3	1	2.8
의료기사	-	-	-	-
응급구조사	-	-	-	-
구급대의 대원	-	-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2	2	-	1.4
보육 교직원	-	-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	-	-
초·중·고 교직원 등	20	15	5	13.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지원센터 종사자	4	3	1	2.8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	-	1	0.7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	-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장기요양시설	3	1	2	2.1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	-	-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장기요양인정신청조사 담당자	-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사회복무요원	3	-	3	2.1
계	144	85	59	100

(2) 비신고의무자 유형

비신고의무자는 피해장애인과 관계에 따라 본인, 가족 및 친인척, 유관기관 종사자, 타인, 파약안됨으로 분류한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의심 신고는 유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95건(40.5%)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130건(27.0%),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신고는 100건(20.7%), 타인이 신고한 경우는 46건(9.5%), 신고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11건(2.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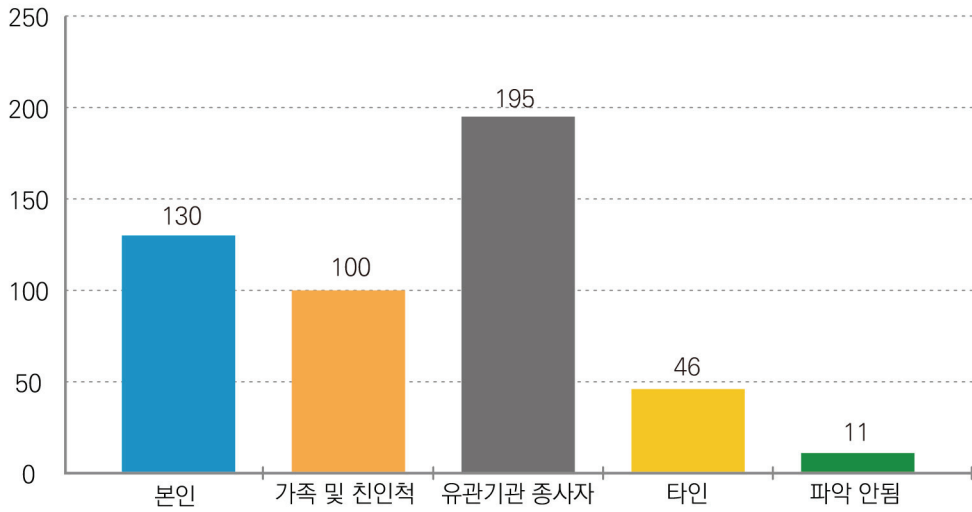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보면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30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112건(23.3%), '부모' 53건(11.0%) 등의 순이었다.

[표 3-1-4]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비신고의무자		계	남부	북부	비율
본인		130	75	55	27.0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4	1	3	0.8
	자녀	9	5	4	1.9
	부모	53	31	22	11.0
	형제자매	16	9	7	3.3
	친인척	18	16	2	3.7
	소계	100	62	38	20.7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23	14	9	4.8
	경찰공무원	31	20	11	6.5
	공공기관 종사자	4	3	1	0.8
	교육기관 종사자	2	2	-	0.4
	의료기관 종사자	2	1	1	0.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12	60	52	23.3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3	-	3	0.6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3	1	2	0.6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15	9	6	3.1
소계	195	110	85	40.5	
타인		46	30	16	9.5
파약 안됨		11	10	1	2.3
계		482	287	195	100

[그래프 3-1-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3) 학대조사

학대조사란 신고 접수된 사례의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면담,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증거와 피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 시 피해장애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모두 조사해야 하나 이미 경찰이나 유관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완료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불필요한 때도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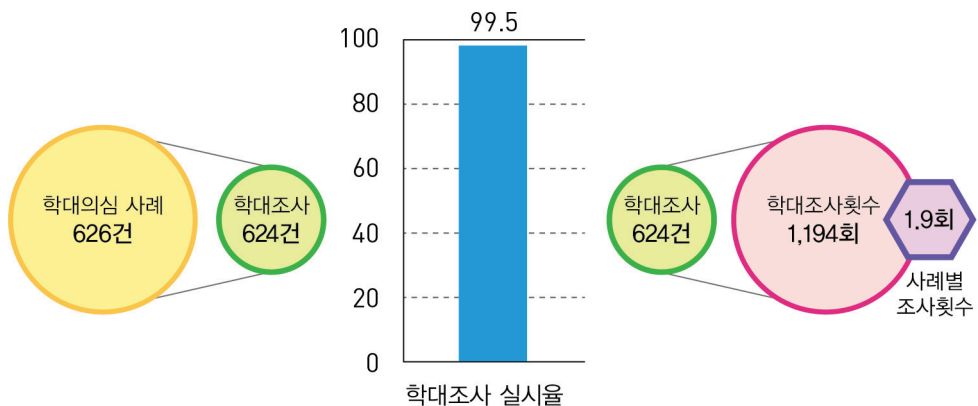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626건 중 624건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실시율은 99.5%로 전년대비(768건, 99.0%) 조사건수는 17.6% 감소하였으나, 조사실시율은 0.5% 증가하였다. 학대 조사 횟수는 1,194회로 사례별 평균 1.9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1-5]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단위: 건, 회, %)

구 분	학대의심사례	학대 조사	학대 조사 실시율	학대 조사 횟수	사례별 조사 횟수
계	626	624	99.5	1,194	1.9
경기 남부	372	370	99.5	738	2.0
경기 북부	254	254	100	456	1.8

[그래프 3-1-4]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4) 사례판정

학대 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사례 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결정 회의인 사례 회의에서 장애인학대 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회의에서 판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비학대사례는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판정 전인 사례는 해당 연도에 신고접수 되었으나 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사례 626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48건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하였으며, 비학대사례는 307건(49.1%), 잠재위험사례는 49건(7.8%), 판정 전인 사례는 22건(3.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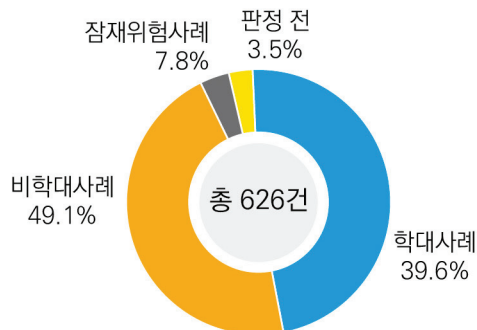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사례는 전년도(361건) 대비 113건(31.3%) 감소하였으며, 잠재위험사례는 전년도(33건) 대비 16건(48.5%) 증가, 비학대 사례는 전년도(348건) 대비 41건(11.8%) 감소하였다.

[표 3-1-6]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학대 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판정 전	계
계	248(39.6)	307(49.1)	49(7.8)	22(3.5)	626(100)
경기 남부	132	185	33	22	372
경기 북부	116	122	16	-	254

[그래프 3-1-5] 사례판정 현황



5) 상담 및 지원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학대사례인 경우에도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지원은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례 이외에 전년도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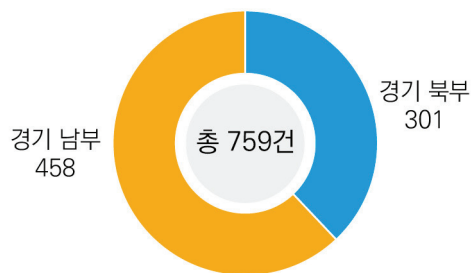
2024년 이전과 2024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에(626건) 대해 8,952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12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3-1-7] 상담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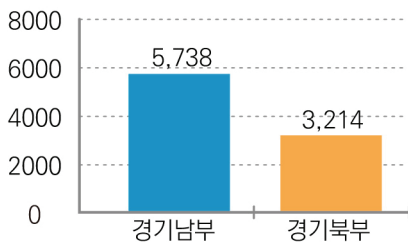
(단위: 건, 회, %)

구분	2024년 이전		2024년		계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계	133	2,588	626	6,364	759	8,952	11.8
경기 남부	86	1,717	372	4,021	458	5,738	12.5
경기 북부	47	871	254	2,343	301	3,214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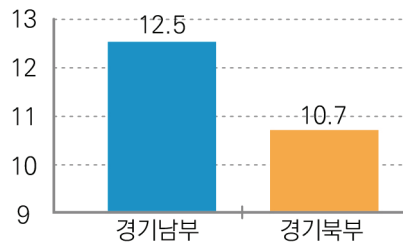
[그래프 3-1-6] 학대의심사례 현황



[그래프 3-1-7] 상담 및 지원 횟수



[그래프 3-1-8]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6) 사례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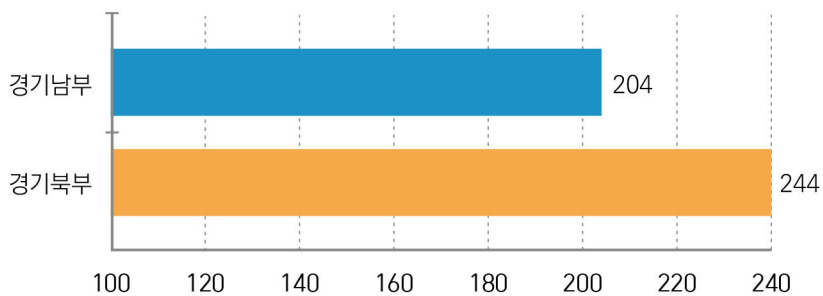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 626건 중 총 448건의 사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결되었으며,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은 71.6%로 나타났다.

[표 3-1-8] 종결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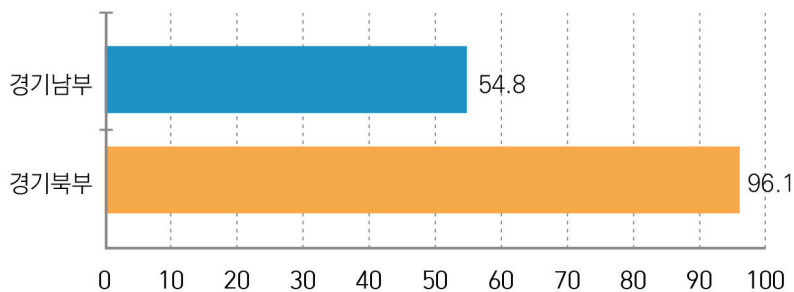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계	626	448	71.6
경기 남부	372	204	54.8
경기 북부	254	244	96.1

[그래프 3-1-9] 종결사례 현황



[그래프 3-1-10]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현황



7) 모니터링

사례판정을 통해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뒤 일정기간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 지원은 실시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사후 모니터링 기간에는 최소 1회 이상 피해장애인과 직접 소통하여 안전과 재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사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해장애인이 명확하게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사망, 수감 등의 사유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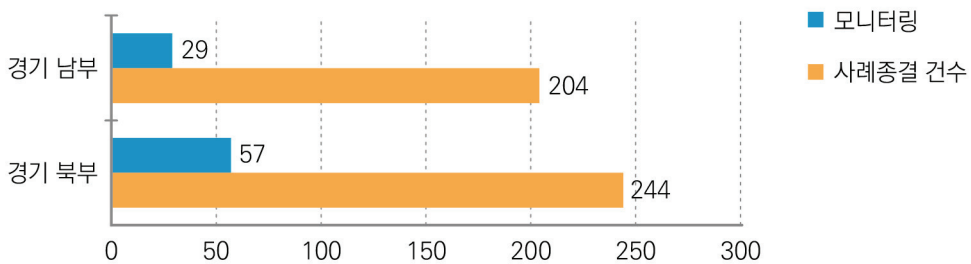
종결된 학대사례 448건 중 86건(19.2%)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모니터링은 435회 실시하였다.

[표 3-1-9] 모니터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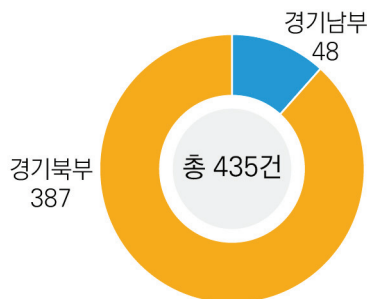
(단위: 건, 회, %)

구분	사례종결 건수	모니터링 실시 사례	비율	모니터링 실시 횟수	모니터링 지원 비율
계	448	86	19.2	435	5.1
경기 남부	204	29	14.2	48	1.7
경기 북부	244	57	23.4	387	6.8

[그래프 3-1-11] 모니터링 실시 현황



[그래프 3-1-12] 모니터링 실시 횟수



2.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 분석

1) 장애인학대 사례 현황

(1)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장애인학대를 분류하고 있다. 기존 학대유형 외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 이를 '중복 학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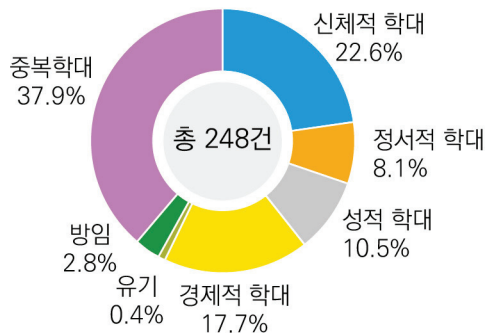
학대로 판정된 사례 건 중 중복 학대 94건(37.9%)이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 56건(22.6%), 경제적 착취 44건(17.7%), 성적 학대 26건(10.5%) 순으로 판정되었다.

[표 3-2-1]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신체적 학대	39	17	56	22.6
정서적 학대	13	7	20	8.1
성적 학대	16	10	26	10.5
경제적 착취	14	30	44	17.7
유기	1	-	1	0.4
방임	4	3	7	2.8
중복 학대	45	49	94	37.9
계	132	116	248	100

[그래프 3-2-1] 장애인학대 유형



(2) 피해장애인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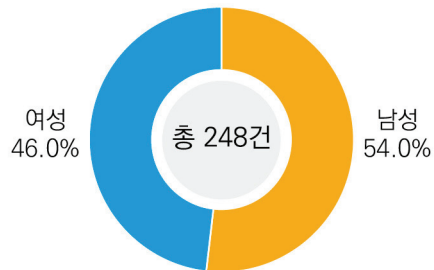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48건이며, 피해자 중 남성은 134명(54.0%)으로 여성 114명(46.0%)보다 8.0% 높게 나타났다.

[표 3-2-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계	134(54.0)	114(46.0)	248(100)
경기 남부	75	57	132
경기 북부	59	57	116

[그래프 3-2-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3) 피해장애인 연령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17세 이하가 59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56명(22.6%), 30대 37명(14.9%), 40대 26명(10.5%), 50대 24명(9.7%), 65세 이상 19명(7.7%), 60대 14명(5.6%), 18~19세 13명(5.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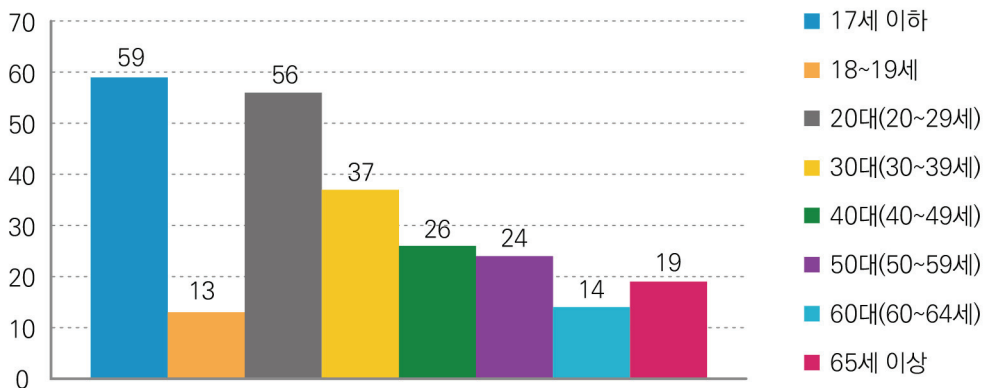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은 통상적으로 근로 활동을 많이하는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장애인 연령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17세 이하 피해자의 비율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2024년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2021년 전체 피해장애인 중 17세 이하가 7%였고, 2023년에는 19%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현재는 23.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장애인 연령대 기준 가장 급격한 변화폭이다.

[표 3-2-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단위: 명,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7세 이하	46	13	59	23.8
18~19세	9	4	13	5.2
20대(20~29세)	26	30	56	22.6
30대(30~39세)	14	23	37	14.9
40대(40~49세)	13	13	26	10.5
50대(50~59세)	10	14	24	9.7
60대(60~64세)	8	6	14	5.6
65세 이상	6	13	19	7.7
계	132	116	248	100

[그래프 3-2-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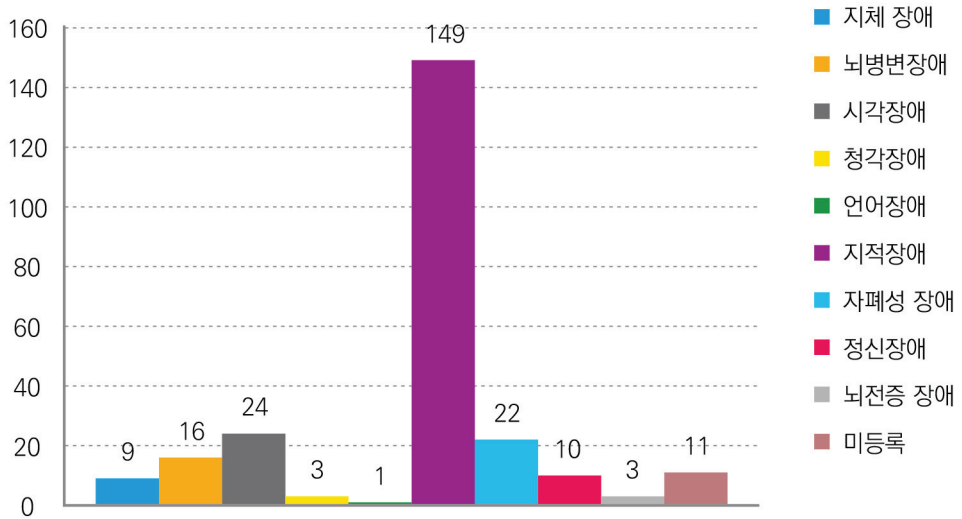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149건(60.1%)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 24건(9.7%), 자폐성 장애 22건(8.9%), 뇌병변장애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171건(69.0%)이었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는 181건(73.0%)으로 나타났다.

[표 3-2-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부	북부	
지체 장애	9	9	-	3.6
뇌병변장애	16	7	9	6.5
시각장애	24	5	19	9.7
청각장애	3	2	1	1.2
언어장애	1	-	1	0.4
지적장애	149	80	69	60.1
자폐성 장애	22	14	8	8.9
정신장애	10	6	4	4.0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 · 요루장애	-	-	-	-
뇌전증 장애	3	2	1	1.2
미등록	11	7	4	4.4
계	248	132	116	100

[그래프 3-2-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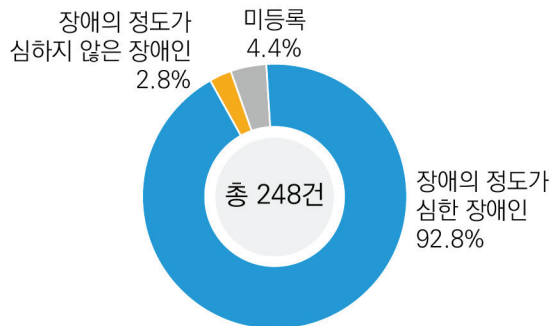
피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30건(92.8%)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건(2.8%)이었다.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피해자도 11건(4.4%)으로 나타났다.

[표 3-2-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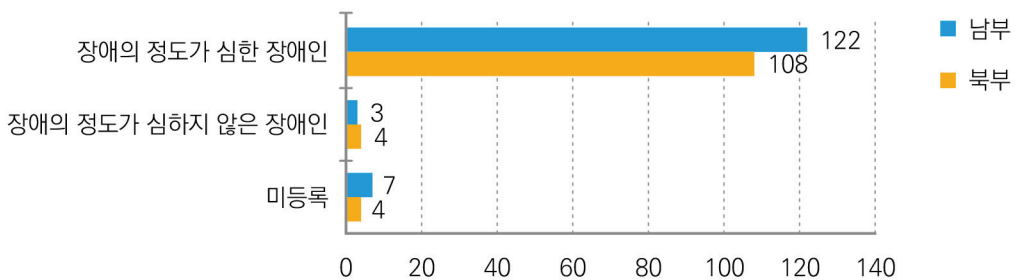
(단위: 건, %)

장애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2	108	230	92.8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4	7	2.8
미등록	7	4	11	4.4
계	132	116	248	100

[그래프 3-2-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그래프 3-2-6]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6)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재가와 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주거 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혹은 생활시설, 미신고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는 모두 재가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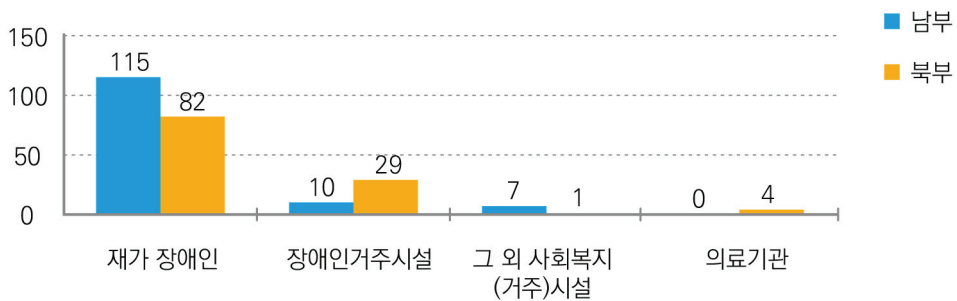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재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197건(79.5%)이었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39건(15.7%), 그 외 사회복지(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8건(3.2%), 의료기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4건(1.6%)이었다.

[표 3-2-6]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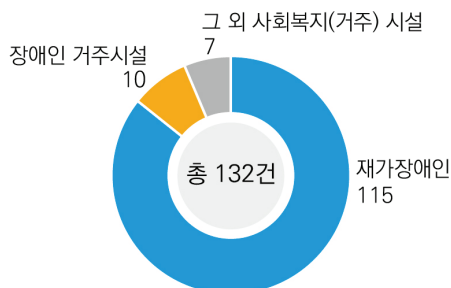
(단위: 건, %)

거주 형태	남부	북부	계	비율
재가 장애인	115	82	197	79.5
장애인거주시설	10	29	39	15.7
그 외 사회복지(거주)시설	7	1	8	3.2
의료기관	-	4	4	1.6
계	132	116	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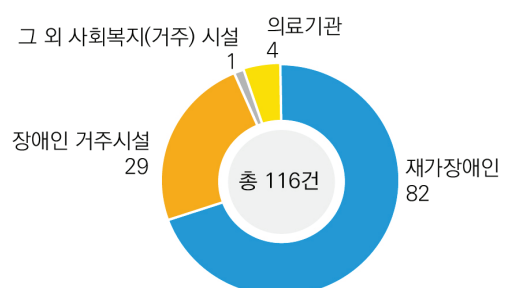
[그래프 3-2-7]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그래프 3-2-8] 거주 형태_남부



[그래프 3-2-9] 거주 형태_북부



(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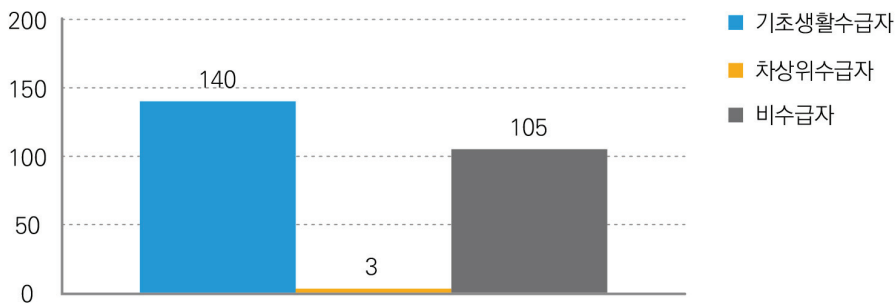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140건(56.5%),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105건(42.3%), 차상위수급자인 경우는 3건(1.2%)으로 나타났다.

[표 3-2-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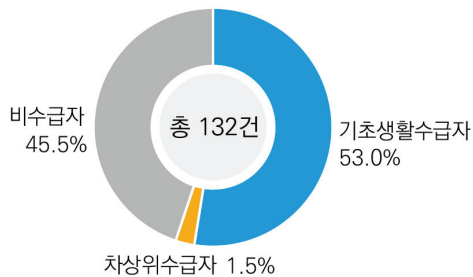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140	70	70	56.5
차상위수급자	3	2	1	1.2
비수급자	105	60	45	42.3
계	248	132	1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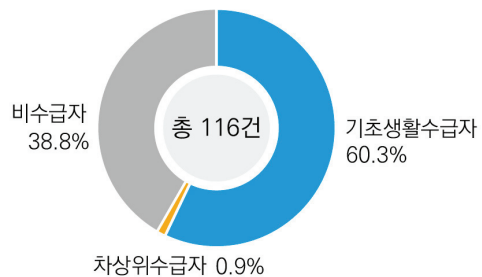
[그래프 3-2-10]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그래프 3-2-11] 수급자 여부_남부



[그래프 3-2-12] 수급자 여부_북부



(8)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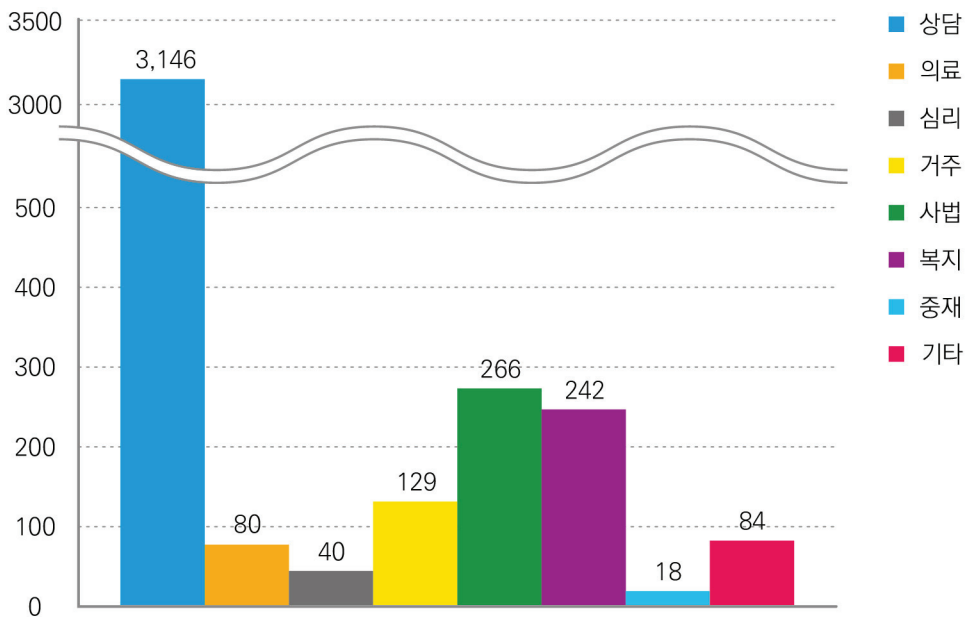
2024년에 학대사례로 판정한 248건에 대해 4,005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봤을 때 상담지원이 3,146건(78.6%)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266건(6.6%), 복지지원 242건(6.0%), 거주지원 129건(3.2%), 기타지원 84건(2.1%), 의료지원 80건(2.0%), 심리지원 40건(1.0%), 중재 18건(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건, %)

구분	상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학업	교육	중재	진정	기타	계
계	3,146 (78.6)	80 (2.0)	40 (1.0)	129 (3.2)	266 (6.6)	242 (6.0)	-	-	18 (0.5)	-	84 (2.1)	4,005 (100)
경기 남부	1,906	34	32	20	54	40	-	-	-	-	62	2,148
경기 북부	1,240	46	8	109	212	202	-	-	18	-	22	1,857

[그래프 3-2-13]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9) 학대행위자 성별

하나의 사례에 장애인학대의 행위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하나의 사례에 주 행위자 1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피해장애인 수와 학대행위자 수는 248명으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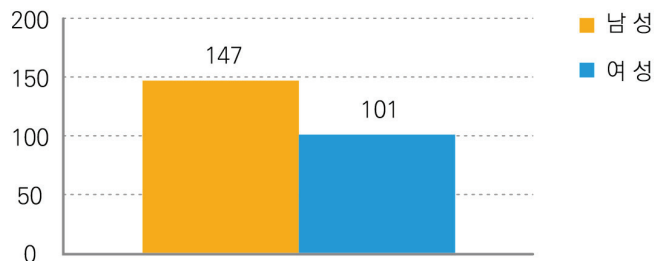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사례 248건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147명(59.3%), 여성이 101명(40.7%)으로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18.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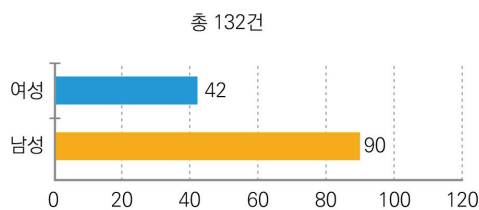
(단위: 명, %)

성 별	건 수			비율
	계	남부	북부	
남 성	147	90	57	59.3
여 성	101	42	59	40.7
계	248	132	1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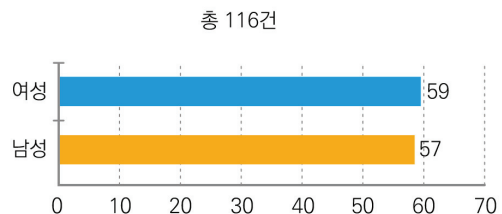
[그래프 3-2-14]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그래프 3-2-15] 학대행위자 성별_남부



[그래프 3-2-16] 학대행위자 성별_북부



(10)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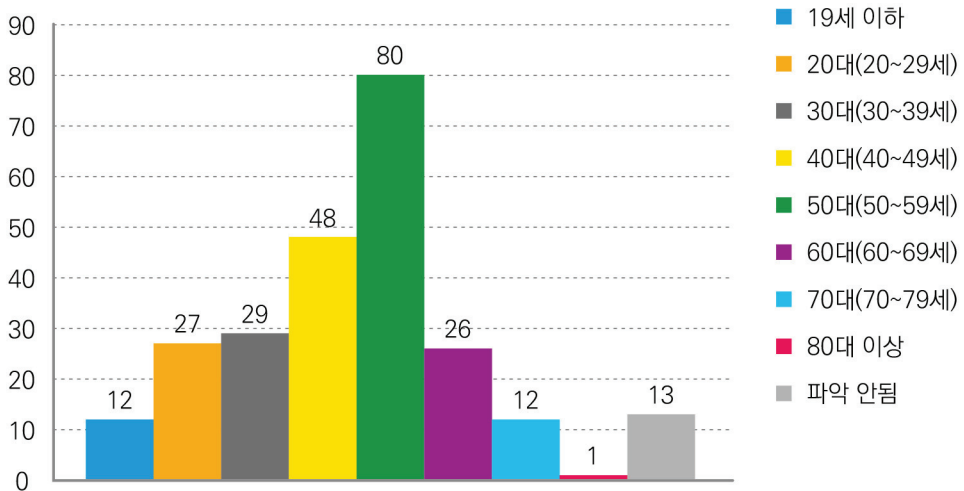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50대 80명(32.3%), 40대 48명(19.4%), 30대 29명(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0]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단위: 명,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9세 이하	6	6	12	4.8
20대(20~29세)	13	14	27	10.9
30대(30~39세)	19	10	29	11.7
40대(40~49세)	36	12	48	19.4
50대(50~59세)	23	57	80	32.3
60대(60~69세)	15	11	26	10.5
70대(70~79세)	8	4	12	4.8
80대 이상	1	-	1	0.4
파악 안됨	11	2	13	5.2
계	132	116	248	100

[그래프 3-2-17]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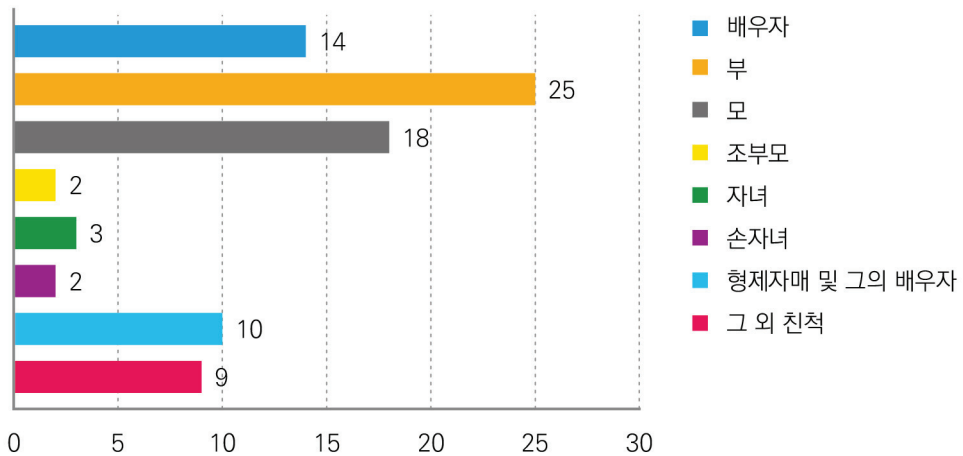


(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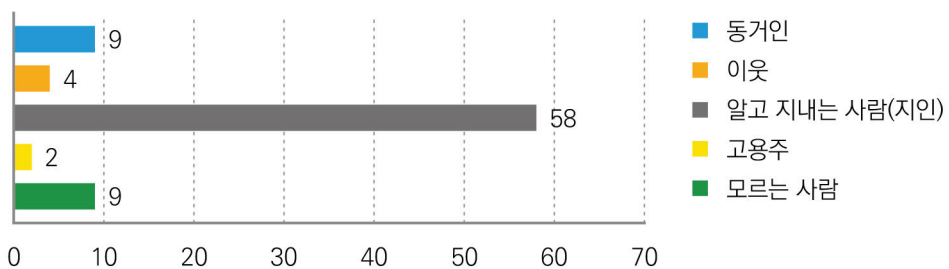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 안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 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으로 나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다.

장애인학대사례 248건 중 가족 및 친인척이 83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가 타인인 경우는 82건(33.1%),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74건(29.8%),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9건(3.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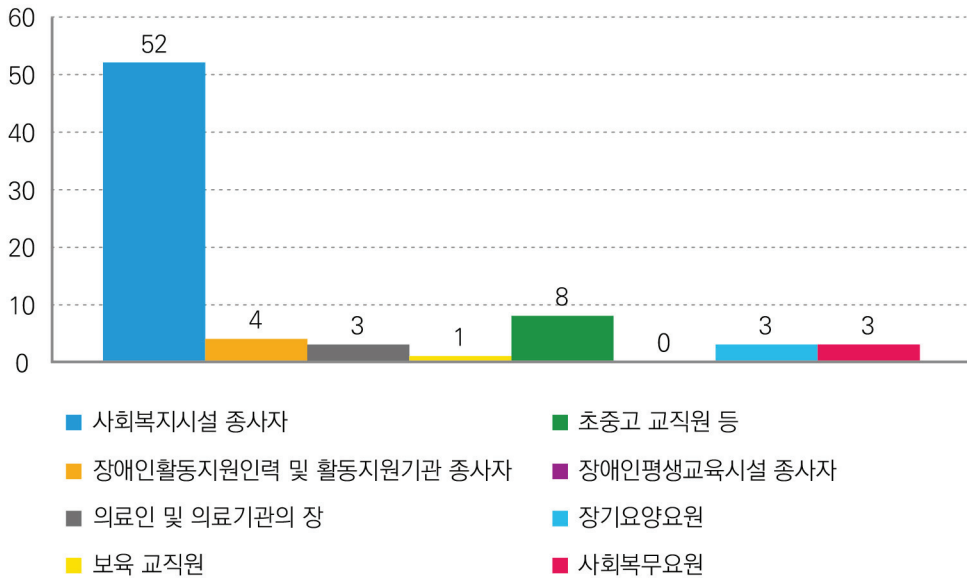
[그래프 3-2-1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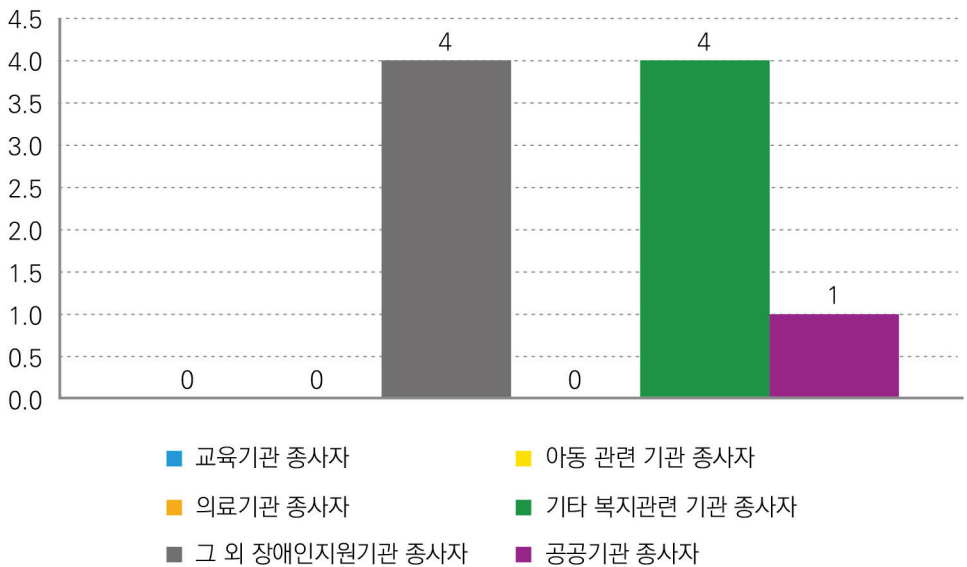
[그래프 3-2-1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타인



[그래프 3-2-2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신고의무자



[그래프 3-2-2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비신고의무자



[표 3-2-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단위: 건, %)

관계		남부	북부	계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6	8	14	5.7
	부	20	5	25	10.1
	모	17	1	18	7.3
	조부모	2	-	2	0.8
	자녀	3	-	3	1.2
	손자녀	-	2	2	0.8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8	2	10	4.0
	그 외 친척	3	6	9	3.6
	소계	59	24	83	33.5
타인	동거인	5	4	9	3.6
	이웃	2	2	4	1.6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3	25	58	23.5
	고용주	2	-	2	0.8
	모르는 사람	2	7	9	3.6
	소계	44	38	82	33.1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	42	52	21.0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	2	4	1.6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3	3	1.2
	보육 교직원	1	-	1	0.4
	초·중·고 교직원 등	8	-	8	3.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장기요양요원	3	-	3	1.2
	사회복부요원	-	3	3	1.2
소계	24	50	74	29.8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4	4	1.6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	-	-	-
	기타 복지관련 기관 종사자	4	-	4	1.6
	공공기관 종사자	1	-	1	0.4
	소계	5	4	9	3.6
본인	-	-	-	-	
파악 안됨	-	-	-	-	
계	132	116	248	100	

(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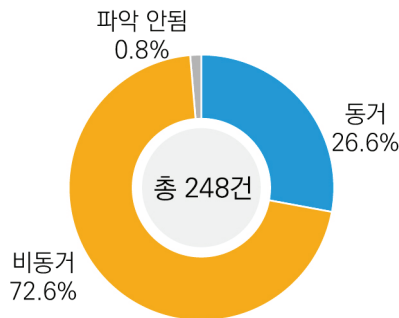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를 보면 장애인학대사례 248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80건(72.6%)이었으며, 동거하는 경우가 66건(26.6%),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2건(0.8%)으로 확인 되었다.

[표 3-2-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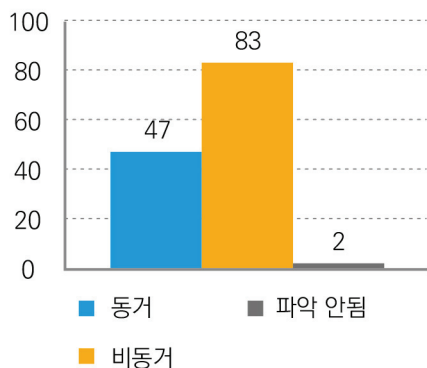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동거	47	19	66	26.6
비동거	83	97	180	72.6
파악 안됨	2	-	2	0.8
계	132	116	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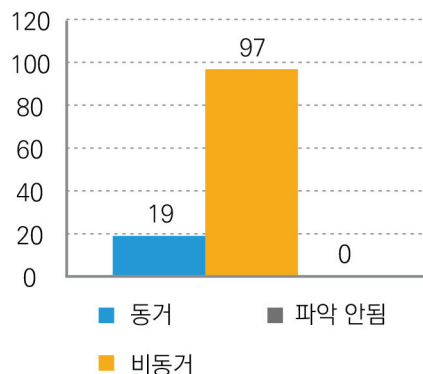
[그래프 3-2-2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그래프 3-2-23] 동거 여부 현황_남부



[그래프 3-2-24] 동거 여부 현황_북부



(13)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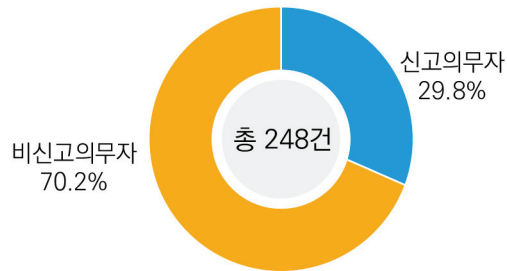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여부에서는 전체 248건 중 74건(29.8%)이 신고의무자이고, 비신고의무자는 174건(70.2%)으로 비신고의무자의 학대 행위 비중이 약 2.4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13]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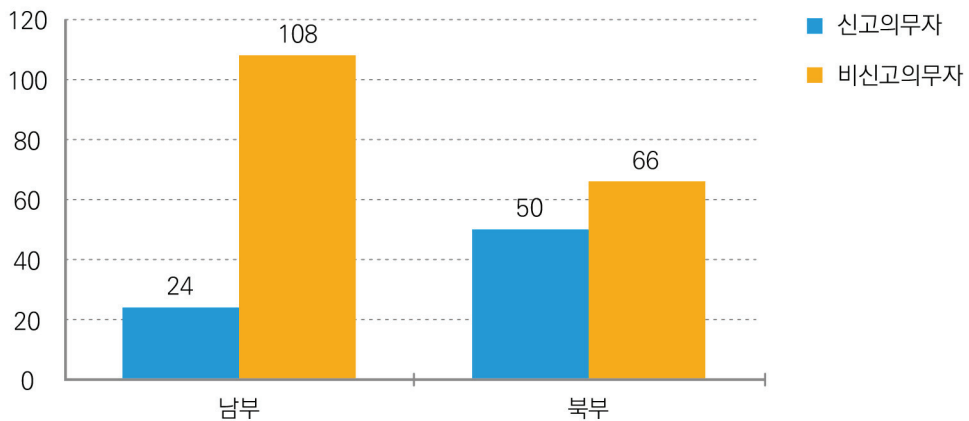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신고의무자	24	50	74	29.8
비신고의무자	108	66	174	70.2
계	132	116	248	100

[그래프 3-2-25]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1



[그래프 3-2-26]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2



(14) 학대 발생 장소

장애인학대 발생 장소는 학대유형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관련 시설, 기타 복지 관련 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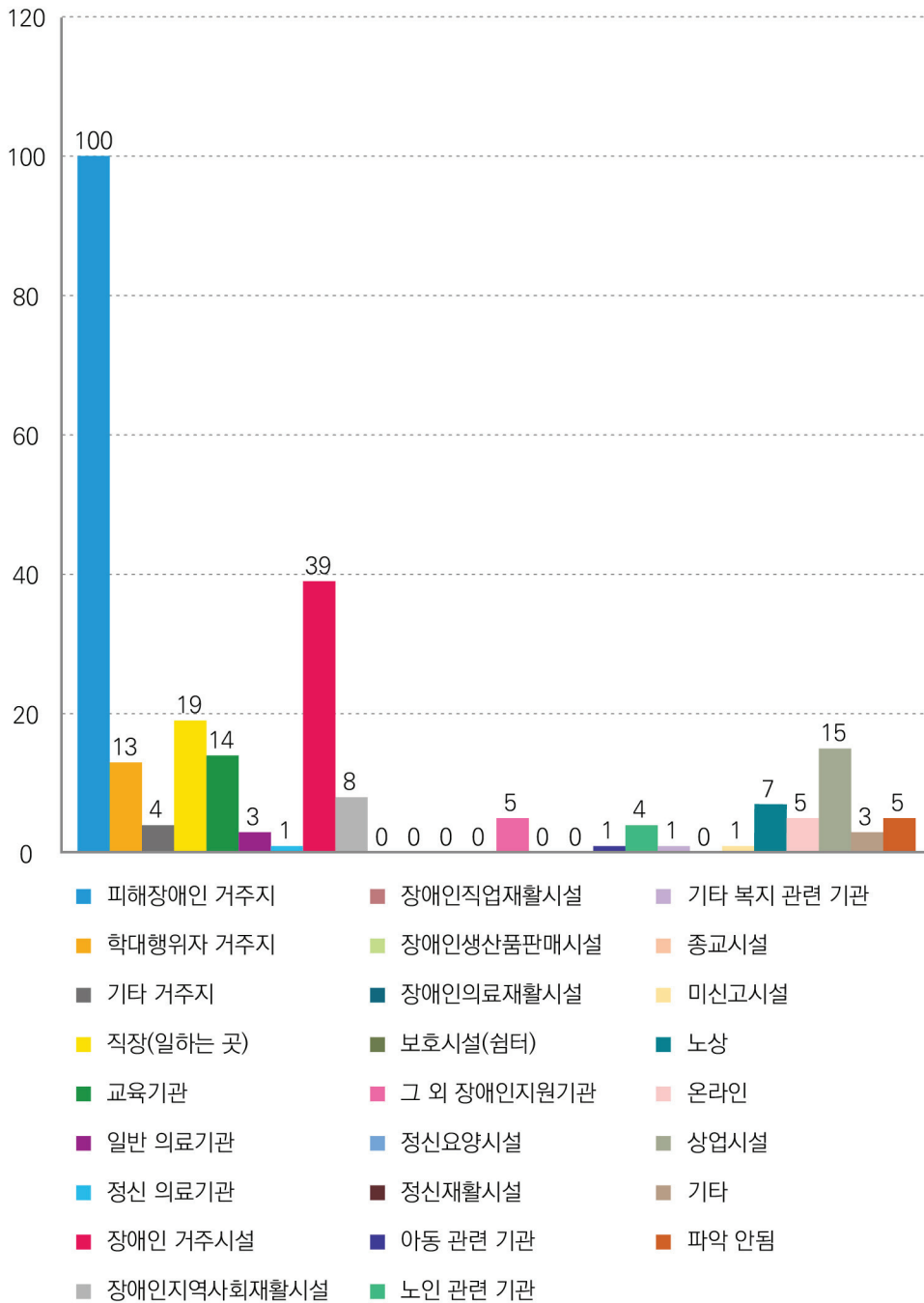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거주지가 100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 39건(15.7%), 직장(일하는 곳) 19건(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4] 학대 발생 장소 현황

(단위: 건, %)

발생 장소	남부	북부	계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64	36	100	40.3	
학대행위자 거주지	8	5	13	5.3	
기타 거주지	2	2	4	1.6	
직장(일하는 곳)	4	15	19	7.7	
교육기관	12	2	14	5.7	
일반 의료기관	1	2	3	1.2	
정신 의료기관	-	1	1	0.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8	31	39	15.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	5	8	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
보호시설(쉼터)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4	1	5	2.0	
정신요양시설	-	-	-	-	
정신재활시설	-	-	-	-	
아동 관련 기관	1	-	1	0.4	
노인 관련 기관	3	1	4	1.6	
기타 복지 관련 기관	1	-	1	0.4	
종교시설	-	-	-	-	
미신고시설	1	-	1	0.4	
노상	7	-	7	2.8	
온라인	3	2	5	2.0	
상업시설	5	10	15	6.1	
기타	1	2	3	1.2	
파악 안됨	4	1	5	2.0	
계	132	116	248	100	

[그래프 3-2-27] 학대 발생 장소



2) 재학대 사례 현황

(1) 재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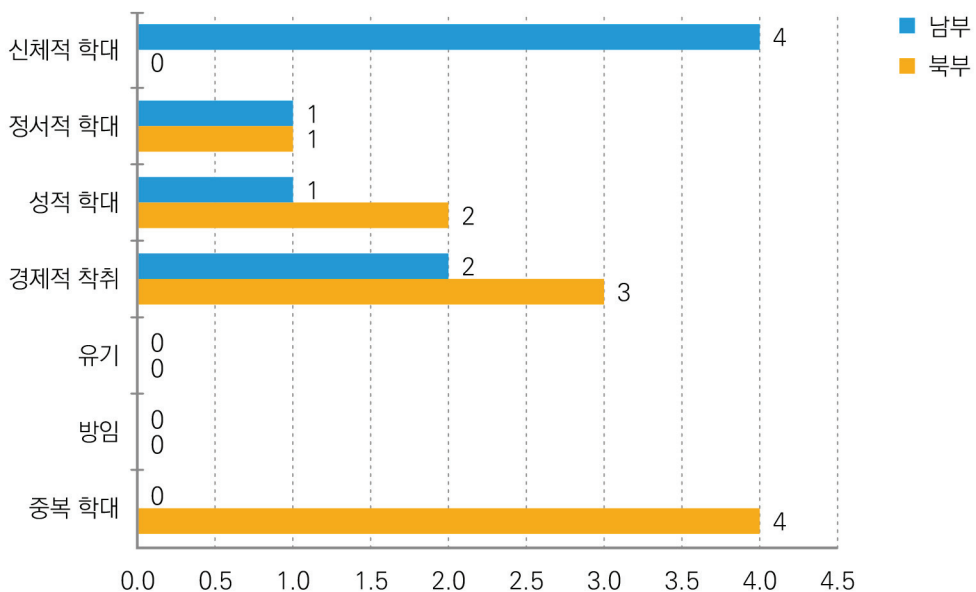
재학대의 학대 유형은 경제적 착취 5건(27.8%), 신체적 학대와 중복학대가 각 4건(22.2%), 성적학대 3건(16.7%), 정서적학대 2건(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5] 재학대 유형 분석

(단위: 건,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신체적 학대	4	-	4	22.2
정서적 학대	1	1	2	11.1
성적 학대	1	2	3	16.7
경제적 착취	2	3	5	27.8
유기	-	-	-	-
방임	-	-	-	-
중복 학대	-	4	4	22.2
계	8	10	18	100

[그래프 3-2-28] 재학대 유형 분석



(2) 재학대의 피해장애인 현황

① 재학대 피해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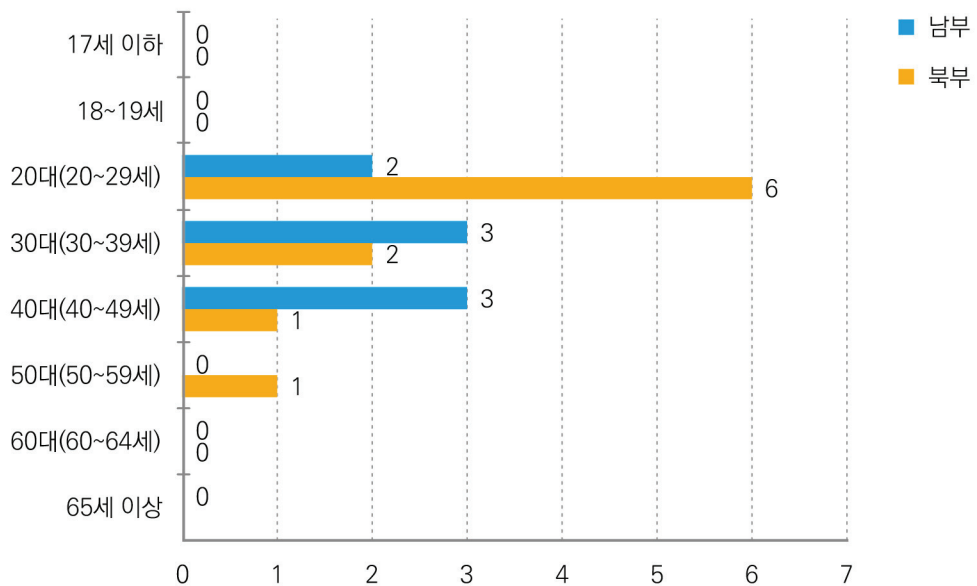
재학대 피해장애인 연령은 20대 8건(44.4%), 30대 5건(27.8%), 40대 4건(22.2%), 50대 1건(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6] 재학대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7세 이하	-	-	-	-
18~19세	-	-	-	-
20대(20~29세)	2	6	8	44.4
30대(30~39세)	3	2	5	27.8
40대(40~49세)	3	1	4	22.2
50대(50~59세)	-	1	1	5.6
60대(60~64세)	-	-	-	-
65세 이상	-	-	-	-
계	8	10	18	100

[그래프 3-2-29] 재학대 피해장애인 연령



②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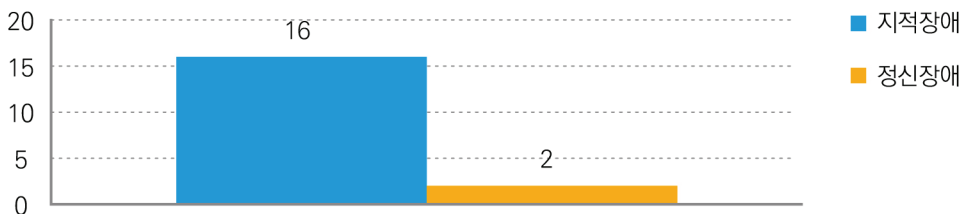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16건(88.9%), 정신장애 2건(11.1%)으로 나타났다.

[표 3-2-17]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부	북부	
지체 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장애	-	-	-	-
언어장애	-	-	-	-
지적장애	16	8	8	88.9
자폐성 장애	-	-	-	-
정신장애	2	-	2	11.1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요루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	-
미등록	-	-	-	-
계	18	8	10	100

[그래프 3-2-30]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③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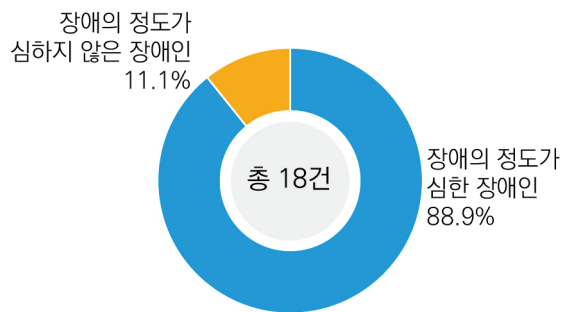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6건(88.9%),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건(11.1%)로 나타났다.

[표 3-2-18]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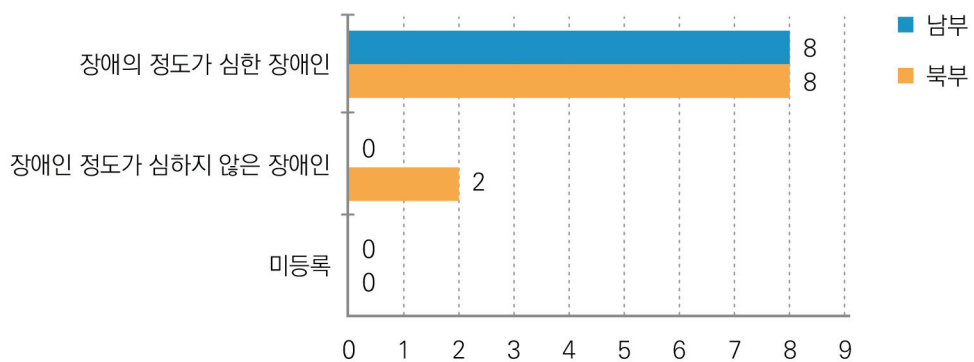
(단위: 건, %)

장애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8	16	88.9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	2	11.1
미등록	-	-	-	-
계	8	10	18	100

[그래프 3-2-31]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그래프 3-2-32]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3) 재학대의 행위자 현황

① 재학대 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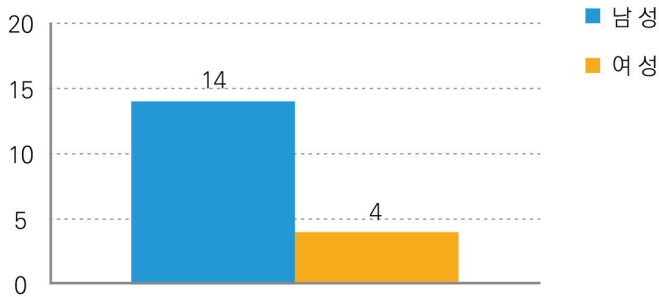
재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성 14건(77.8%), 여성 4건(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9] 재학대 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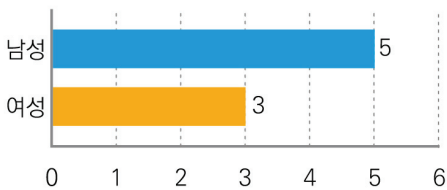
(단위: 건, %)

성 별	건 수			비율
	계	남부	복부	
남 성	14	5	9	77.8
여 성	4	3	1	22.2
계	18	8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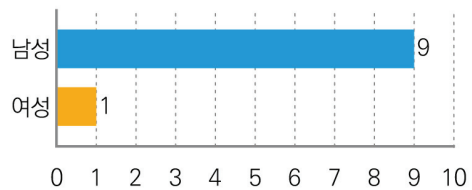
[그래프 3-2-33] 재학대 행위자 성별



[그래프 3-2-34] 재학대 행위자 성별_남부



[그래프 3-2-35] 재학대 행위자 성별_복부



② 재학대 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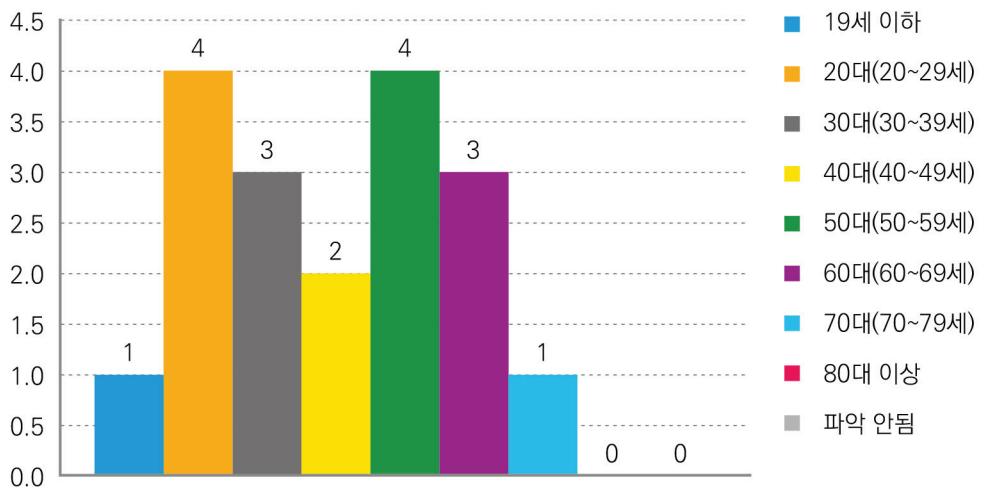
재학대 행위자 연령은 20대와 50대가 각 4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60대가 각 3건(16.7%), 40대 2건(11.1%), 19세이하와 70대가 각 1건(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0] 재학대 행위자 연령

(단위: 건,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9세 이하	1	-	1	5.6
20대(20~29세)	-	4	4	22.2
30대(30~39세)	1	2	3	16.7
40대(40~49세)	1	1	2	11.1
50대(50~59세)	2	2	4	22.2
60대(60~69세)	2	1	3	16.7
70대(70~79세)	1	-	1	5.6
80대 이상	-	-	-	-
파악 안됨	-	-	-	-
계	8	10	18	100

[그래프 3-2-36] 재학대 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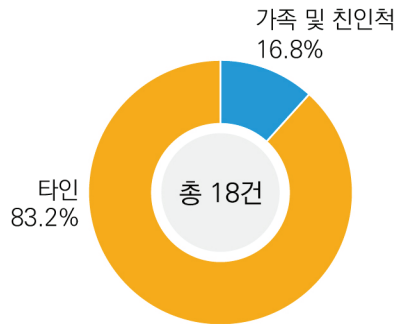


③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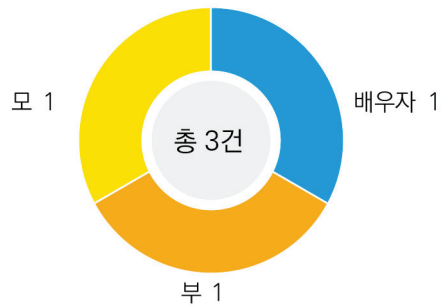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안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은 배우자, 부, 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으로 나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다. 재학대는 피해장애인이 학대 피해를 다시 겪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했던 장애인학대의 행위자와 재학대 행위자는 동일인물이 아닐 수 있다.

장애인 재학대사례 18건 중 타인에 의한 재학대가 15건(83.2%)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는 3건(16.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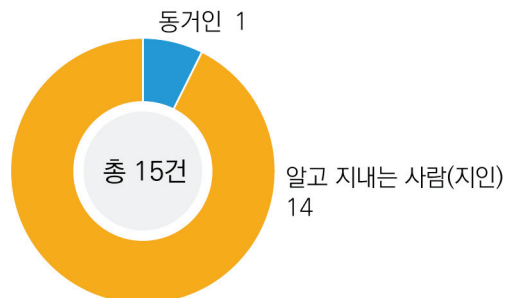
[그래프 3-2-37]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그래프 3-2-38]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그래프 3-2-39]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타인



[표 3-2-21]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남부	북부	계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	1	1	5.6
	부	1	-	1	5.6
	모	1	-	1	5.6
	조부모	-	-	-	-
	자녀	-	-	-	-
	손자녀	-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	-
	그 외 친척	-	-	-	-
	소계	2	1	3	16.8
타인	동거인	-	1	1	5.6
	이웃	-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6	8	14	77.6
	고용주	-	-	-	-
	모르는 사람	-	-	-	-
		소계	6	9	15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보육 교직원	-	-	-	-
	초·중·고 교직원 등	-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소계	-	-	-	-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	-	-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	-	-	-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	-	-	-
		소계	-	-	-
	본인	-	-	-	-
	파악 안됨	-	-	-	-
	계	8	10	18	100

④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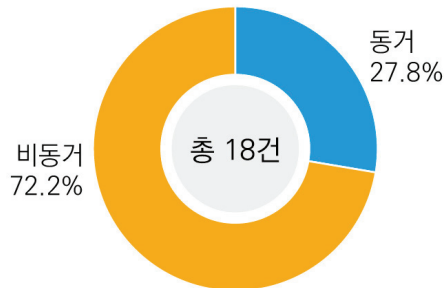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를 보면 장애인 재학대 사례 18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3건(72.2%), 동거하는 경우가 5건(27.8%)으로 확인되었다.

[표 3-2-22]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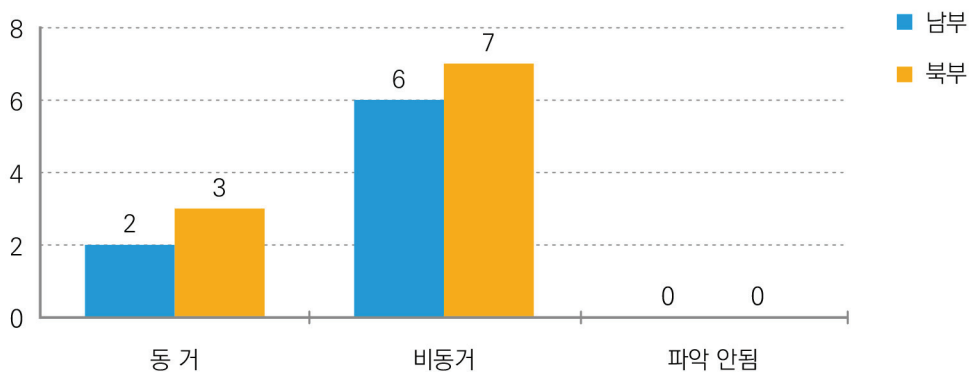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동거	2	3	5	27.8
비동거	6	7	13	72.2
파악 안됨	-	-	-	-
계	8	10	18	100

[그래프 3-2-40]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_1



[그래프 3-2-41]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_2



⑤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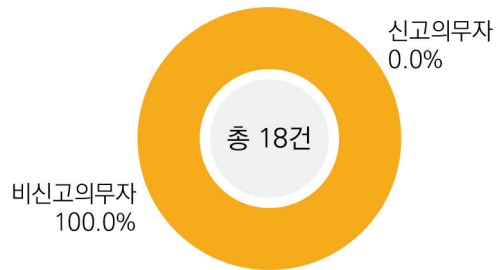
재학대 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여부에서는 전체 18건 중 비신고의무자가 18건(100.0%)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3-2-23]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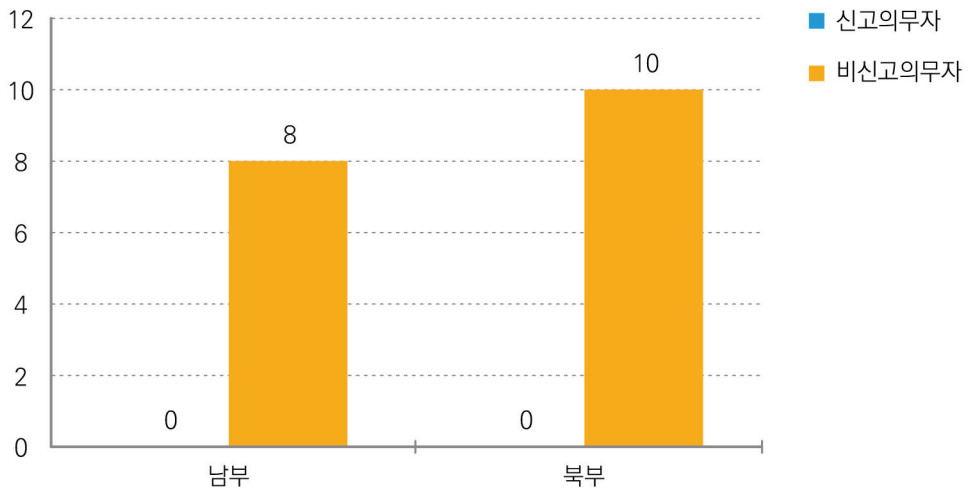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신고의무자	-	-	-	-
비신고의무자	8	10	18	100.0
계	8	10	18	100

[그래프 3-2-42]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_1



[그래프 3-2-43] 재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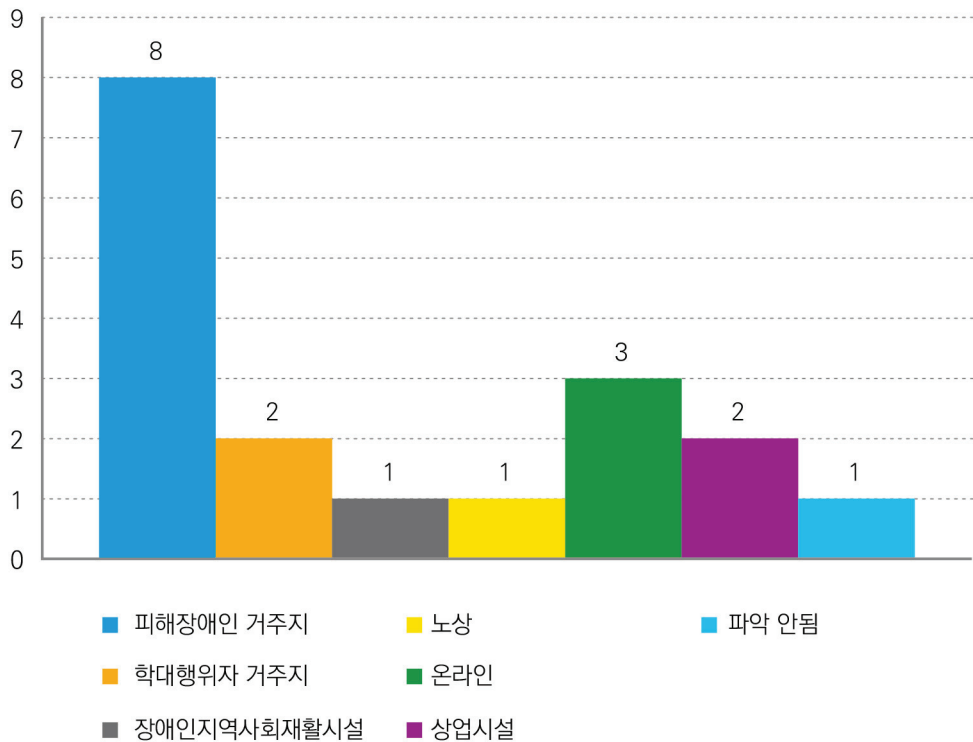


(4) 재학대 발생 장소

장애인 재학대 발생 장소는 학대유형과 재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 관련 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8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3건(16.6%), 학대행위자의 거주지와 상업시설이 각 2건(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3-2-44] 재학대 발생 장소



[표 3-2-24] 재학대 발생 장소

(단위: 건, %)

발생 장소		남부	북부	계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3	5	8	44.4
학대행위자 거주지		1	1	2	11.1
기타 거주지		-	-	-	-
직장(일하는 곳)		-	-	-	-
교육기관		-	-	-	-
일반 의료기관		-	-	-	-
정신 의료기관		-	-	-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	1	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
보호시설(쉼터)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	-
정신요양시설		-	-	-	-
정신재활시설		-	-	-	-
아동 관련 기관		-	-	-	-
노인 관련 기관		-	-	-	-
기타 복지 관련 기관		-	-	-	-
종교시설		-	-	-	-
미신고시설		-	-	-	-
노상		1	-	1	5.6
온라인		1	2	3	16.6
상업시설		-	2	2	11.1
기타		-	-	-	-
파악 안됨		1	-	1	5.6
계		8	10	18	100

(5) 시·군별 재학대 현황

시·군별 재학대 현황은 양주시 3건(16.6%)이 가장 많았고, 수원시, 평택시, 고양시가 각 2건(11.0%)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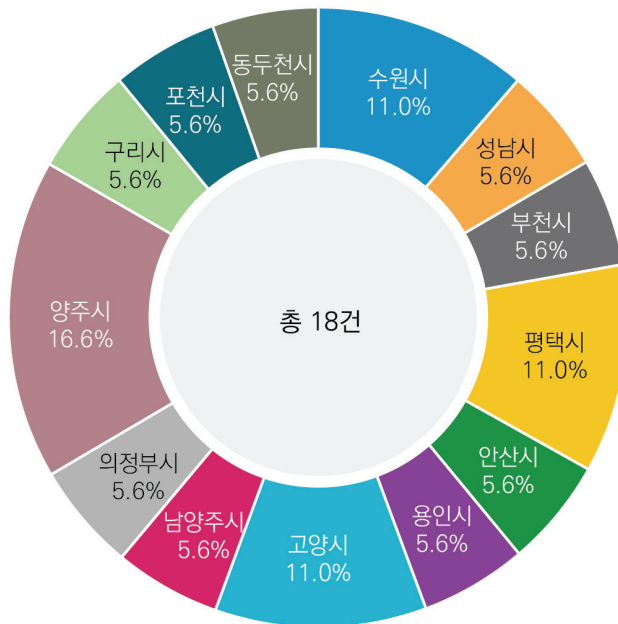
[표 3-2-25] 시·군별 재학대 현황

(단위: 건, %)

시·군	학대	비율
수원시	2	11.0
성남시	1	5.6
안양시	-	-
부천시	1	5.6
광명시	-	-
평택시	2	11.0
안산시	1	5.6
과천시	-	-
오산시	-	-
시흥시	-	-
군포시	-	-
의왕시	-	-
하남시	-	-
용인시	1	5.6
이천시	-	-
안성시	-	-
김포시	-	-
화성시	-	-
광주시	-	-
여주시	-	-
양평군	-	-
고양시	2	11.0
남양주시	1	5.6
파주시	-	-
의정부시	1	5.6

시·군	학대	비율
양주시	3	16.6
구리시	1	5.6
포천시	1	5.6
동두천시	1	5.6
가평군	-	-
연천군	-	-
기타 (타 지역)	-	-
계	18	100

[그래프 3-2-45] 시·군별 재학대 현황



3. 학대피해장애(아동)인 쉼터

1) 피해장애인쉼터

(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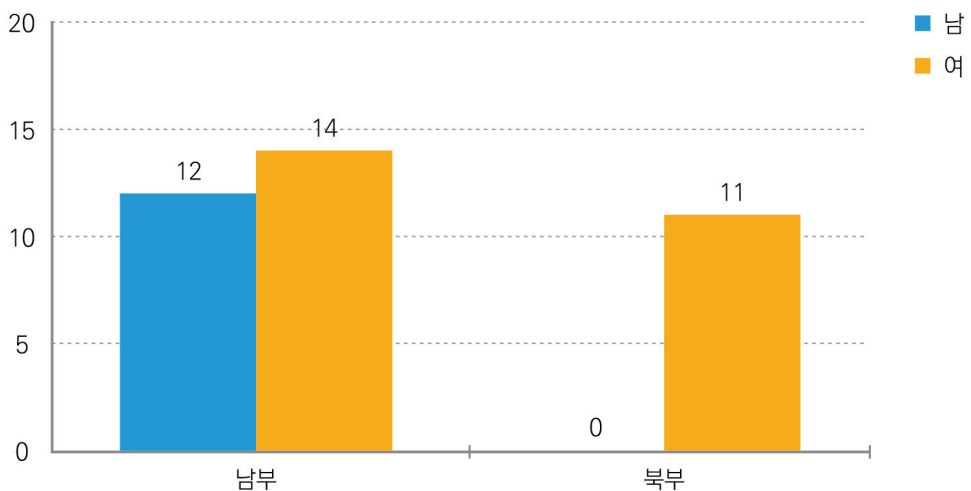
2024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인원은 총 37명이었으며, 그 중 26명(70.3%)이 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이하‘남부쉼터’)을, 11명(29.7%)이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이하‘북부쉼터’)를 이용하였다.

[표 3-3-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입소인원		합계
	남	여	남	여	
남부	4	4	12	14	26
북부	4	4	-	11	11
계	8	8	12	25	37

[그래프 3-3-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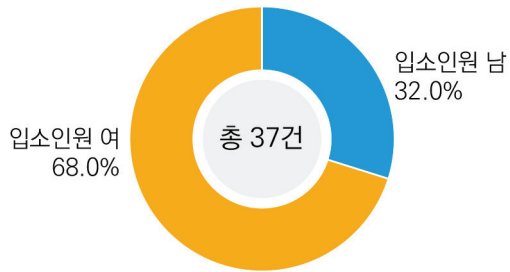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37명 중 남성은 12명(32.0%), 여성은 25명(68.0%)이었다.

[표 3-3-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현황

(단위: 건, %)

성 별	건 수			비율
	계	남부	북부	
남 성	12	12	-	32.0
여 성	25	14	11	68.0
계	37	26	11	100

[그래프 3-3-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성별 현황



(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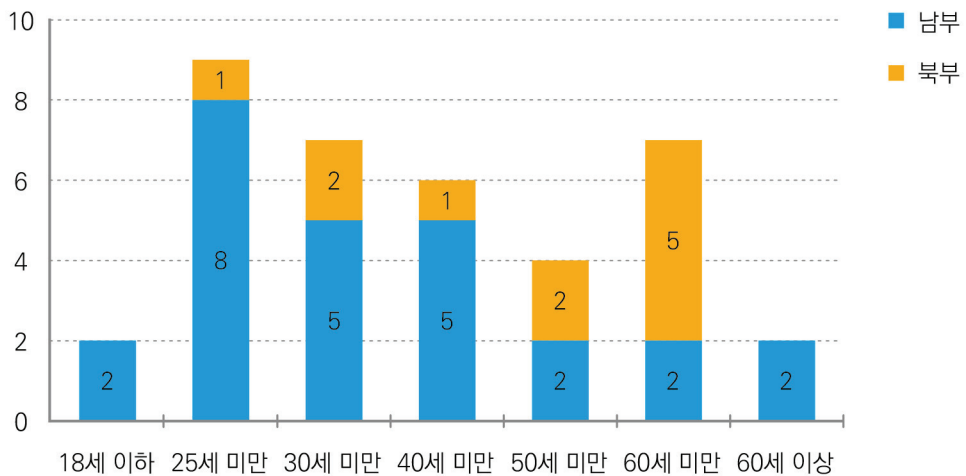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37명 중 25세 미만이 9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과 60세 미만이 각각 7명(18.9%), 40세 미만이 6명(16.2%), 50세 미만이 4명(10.8%), 18세 이하와 60세 이상이 각각 2명(5.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18세 이하	25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합계
남부	2	8	5	5	2	2	2	26
북부	-	1	2	1	2	5	-	11
계	2	9	7	6	4	7	2	37

[그래프 3-3-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의 가족구성은 1인 가구, 부모 동거 가구, 형제·자매 동거 가구, 부부 동거 가구, 사실혼 가구, 자녀 동거 가구, 기타(시설 거주 등)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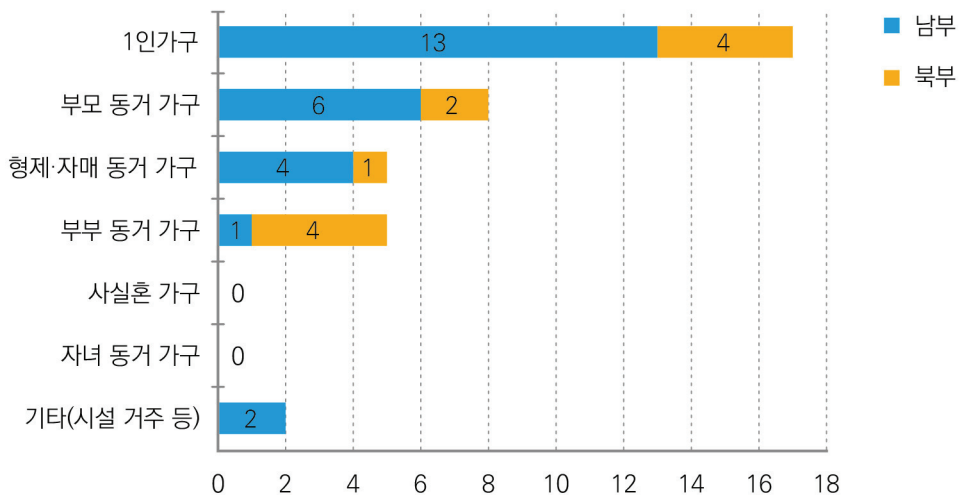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37명 중 1인 가구가 17명(46.0%)로 가장 많았고, 부모 동거 가구 8명(21.6%), 형제·자매 동거 가구와 부부 동거 가구가 각각 5명(13.5%), 기타(시설 거주 등)이 2명(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단위 : 건, %)

	남부	북부	계	비율
1인가구	13	4	17	46.0
부모 동거 가구	6	2	8	21.6
형제·자매 동거 가구	4	1	5	13.5
부부 동거 가구	1	4	5	13.5
사실혼 가구	-	-	-	-
자녀 동거 가구	-	-	-	-
기타(시설 거주 등)	2	-	2	5.4
계	26	11	37	100

[그래프 3-3-4]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가족구성 현황



(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유형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37명 중 지적장애가 전체 장애유형 중 28명(7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가 3명(8.1%), 뇌병변장애와 미등록이 각각 2명(5.4%),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각각 1명(2.7%)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미등록 장애인은 쉼터 입소 후 장애진단 및 장애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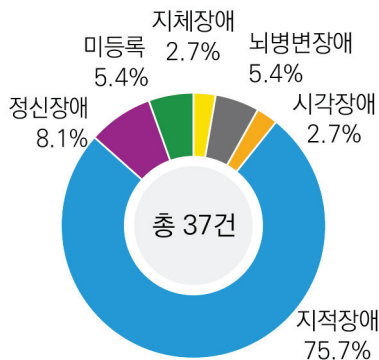
[표 3-3-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부	북부	
지체 장애	1	-	1	2.7
뇌병변장애	2	1	1	5.4
시각장애	1	-	1	2.7
청각장애	-	-	-	-
언어장애	-	-	-	-
지적장애	28	21	7	75.7
자폐성 장애	-	-	-	-
정신장애	3	3	-	8.1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요루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	-
미등록	2	1	1	5.4
계	37	26	11	100

※ 중복장애는 주장애를 우선으로 표기함.

[그래프 3-3-5]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유형 현황



(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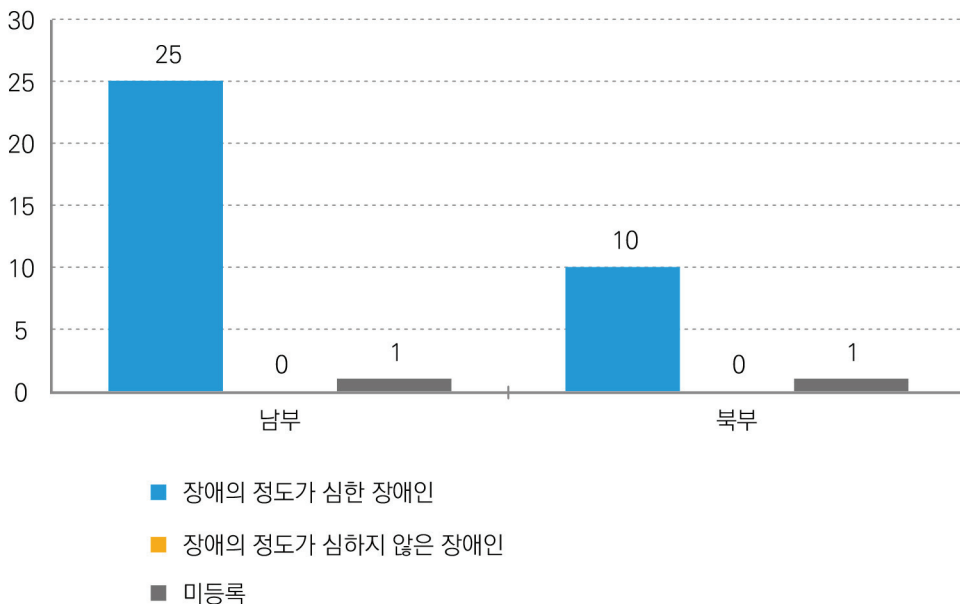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37명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35명(9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미등록 장애인이 2명(5.4%)이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없었다.

[표 3-3-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5	10	35	94.6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미등록	1	1	2	5.4
계	26	11	37	100

[그래프 3-3-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 정도 현황



(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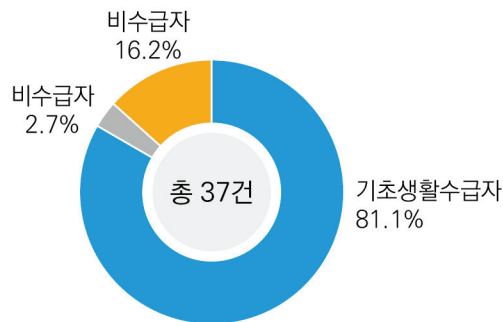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37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30건(81.1%), 비수급자인 경우는 6건(16.2%), 차상위 수급자는 1건(2.7%)으로 나타났다.

[표 3-3-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30	21	9	81.1
차상위수급자	1	1	-	2.7
비수급자	6	4	2	16.2
계	37	26	11	100

[그래프 3-3-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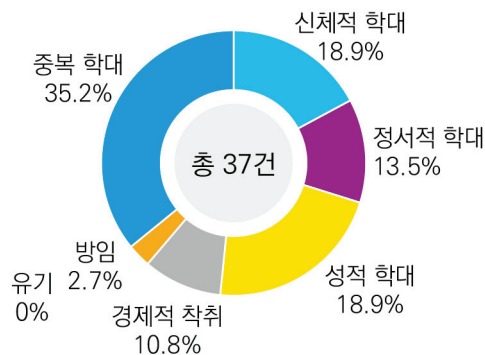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이용자 학대유형을 분류하였다. 두 가지 이상 학대가 나타나는 유형을 중복학대라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37건 중 중복학대가 13건(35.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가 각각 7건(18.9%)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5건(13.5%), 경제적 착취 4명(10.8%), 방임 1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신체적 학대	3	4	7	18.9
정서적 학대	1	4	5	13.5
성적 학대	6	1	7	18.9
경제적 착취	4	-	4	10.8
유기	-	-	-	-
방임	1	-	1	2.7
중복 학대	11	2	13	35.2
계	26	11	37	100

[그래프 3-3-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 유형 현황



(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상태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의 건강 상태는 학대 피해 및 장애로 인해 중복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학대로 인한 상해와 만성질환, 중복질환과 해당없음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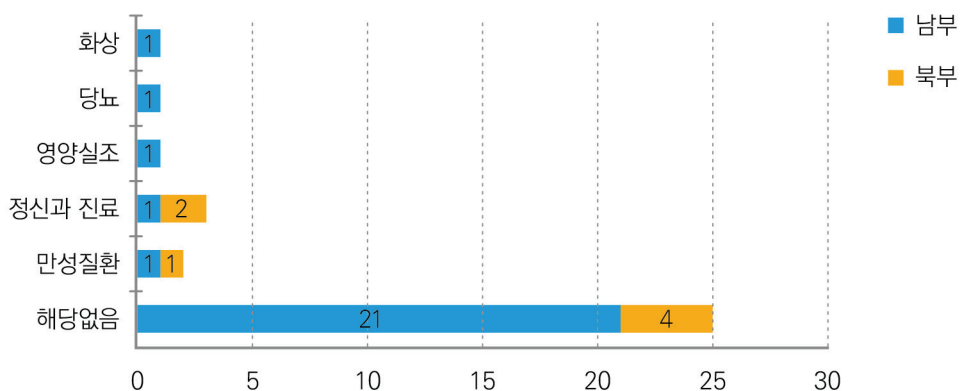
해당없음이 25건(67.6%), 중복 4건(10.8%), 정신과 진료 3건(8.1%), 만성질환 2건(5.4%), 화상, 당뇨, 영양실조가 각각 1건(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상태 현황

(단위: 건, %)

		남부	북부	계	비율
학대로 인한 상해	골절	-	-	-	
	타박상	-	-	-	
	화상	1	-	1	2.7
	당뇨	1	-	1	2.7
	영양실조	1	-	1	2.7
	산부인과 진료	-	-	-	
	정신과 진료	1	2	3	8.1
만성질환		1	1	2	5.4
중복		-	4	4	10.8
해당없음		21	4	25	67.6
계		26	11	37	100

[그래프 3-3-9]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건강상태 현황



(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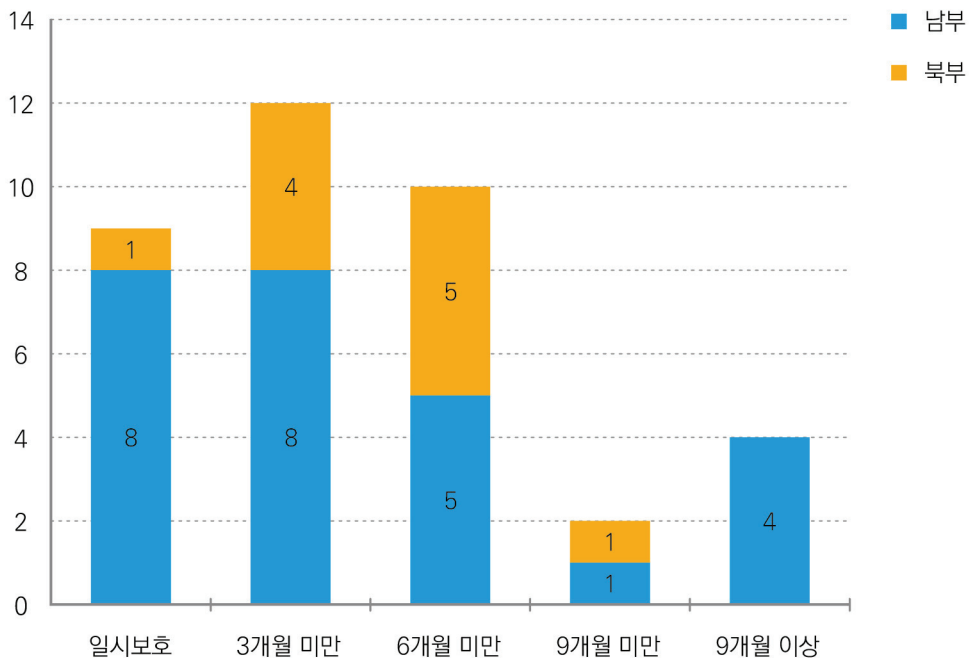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37명의 평균 이용기간은 3.6개월로 나타났으며 3개월 미만이 1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명(27%), 일시보호 9명(24.3%), 9개월 이상이 4명(10.8%),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2명(5.4%)으로 나타났다.

[표 3-3-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단위 : 명)

구분	평균 이용기간(개월)	2024년도 이용기간 별 현황					합계
	산출내역	일시 보호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남부	3.43개월 (2,677일/실인원26명/30일)	8	8	5	1	4	26
북부	3.75개월 (1,239일/실인원11명/30일)	1	4	5	1	-	11
계		9	12	10	2	4	37

[그래프 3-3-1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11) 피해장애인 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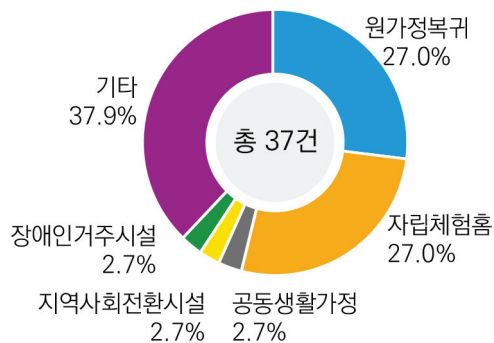
2024년 12월 31일 기준 11명의 퇴소 후 거주 유형을 살펴보면 기타가 14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원가정 복귀와 자립체험홈이 각각 10명(27.0%),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이 각각 1명(2.7%)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당해연도에 퇴소하지 않고 이월된 경우와 숙박업소 등으로 퇴소한 경우를 말한다.

[표 3-3-1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원가정복귀	7	3	10	27.0
자립체험홈	4	6	10	27.0
공동생활가정	1	-	1	2.7
지역사회전환시설	1	-	1	2.7
장애인거주시설	1	-	1	2.7
기타(숙박업소, 이월인원포함 등)	12	2	14	37.9
계	26	11	37	100

[그래프 3-3-1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후 거주 유형 현황



(12) 피해장애인쉼터 재입소 현황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한 장애인 중 2024년에 재입소한 경우는 총 1건이었다.

[표 3-3-12] 피해장애인쉼터 재입소 현황

(단위: 건, %)

구분	장애유형	성별	이전학대유형 (최초 입소년도)	재학대유형	계	비율
남부	-	-	-	-	-	-
북부	지적장애	여	정서, 신체 (2023)	정서, 신체 (2024)	1	100.0
계					1	100



(13) 피해장애인 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4,864회(54.4%), 기타사업(사회참여사업) 2,201회(24.6%), 교육재활 992회(11.2%), 사회심리재활 346회(3.9%), 의료재활 272회(3.0%), 상담 및 지원계획 194회(2.2%), 지역정착계획 및 지원 38회(0.4%), 사례종결 및 사후모니터링 29회(0.3%) 등의 순으로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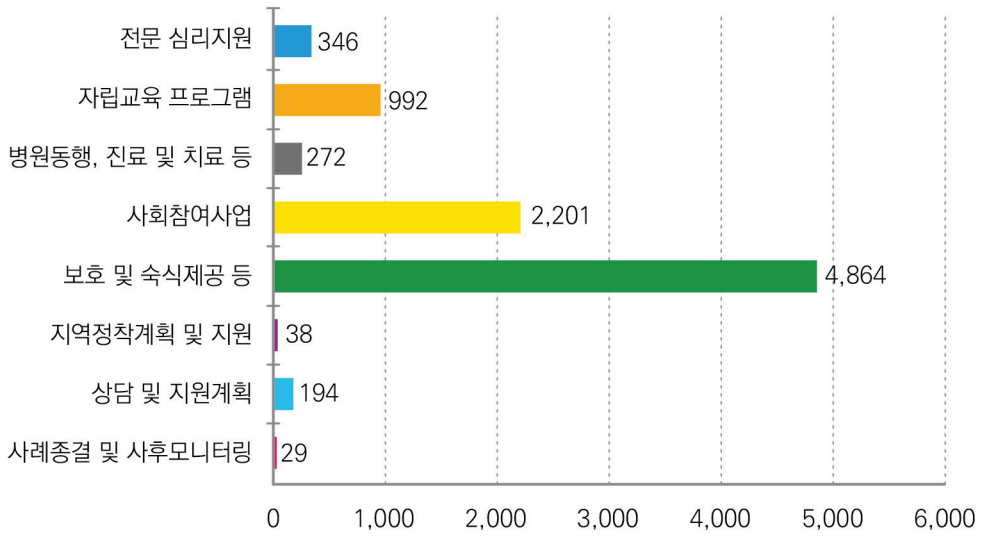
[표 3-3-13] 피해장애인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단위: 회,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비고
사회심리 재활	전문 심리지원	275	71	346	3.9	정신과진료, 심리체육, 심리운동, 임상심리검사, 심리상담 등
교육 재활	자립교육 프로그램	293	연11명 /699	992	11.2	범죄피해예방교육, 금전교육, 직업교육, 성/인권교육, 소방/안전교육, 교육재활 등
의료 재활	병원 동행, 진료 및 치료 등	215	57	272	3.0	학대로 인한 상해, 기저질환 등
기타 사업	사회참여 사업	717	연11명 /1,484	2,201	24.6	나들이, 관공서, 은행 이용, 각종행사참여, 안전교육 등
일상생활 지원	보호 및 숙식제공 등	연26명 /1,825	연11명 /3,039	4,864	54.4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일상생활지원, 신변자립훈련
지역사회 정착	지역정착계획 및 지원	32	6	38	0.4	직접자립, 체험홈연계 등
사례 관리	상담 및 지원계획	78	116	194	2.2	입소상담, 초기상담, 사례회의, 개별지원계획1,2,3차
	사례종결 및 사후모니터링	19	10	29	0.3	사례종결, 사후모니터링
계		3,454	5,482	8,936	100	-

※ 쉼터 별 산정 기준이 상이하여 서비스 제공 실적에 차이가 있음.

[그래프 3-3-12] 피해장애인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2) 피해장애아동쉼터

(1)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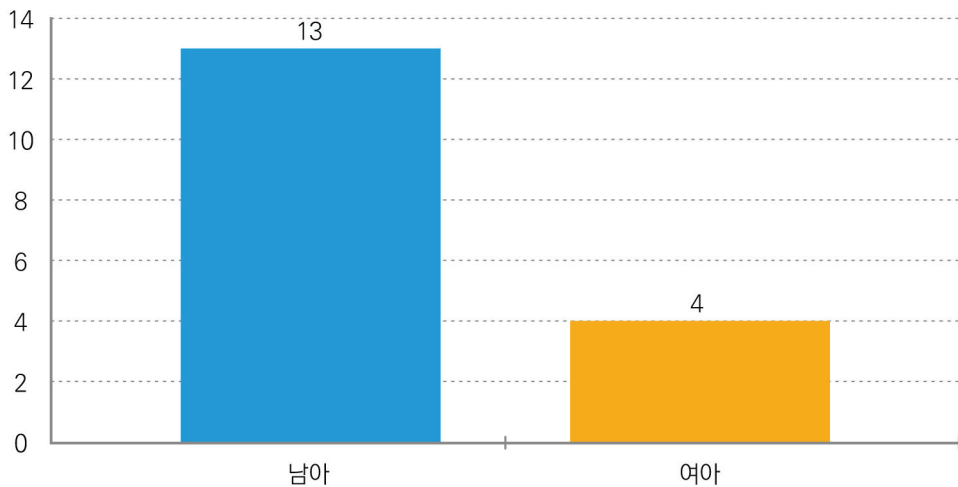
2024년 12월 31일 기준 피해장애아동쉼터를 이용한 인원은 총 17명이었으며, 그 중 13명은 남아, 4명은 여아였다.

[표 3-3-14]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입소인원
남아	4	13
여아	4	4
계	8	17

[그래프 3-3-13]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현황



(2)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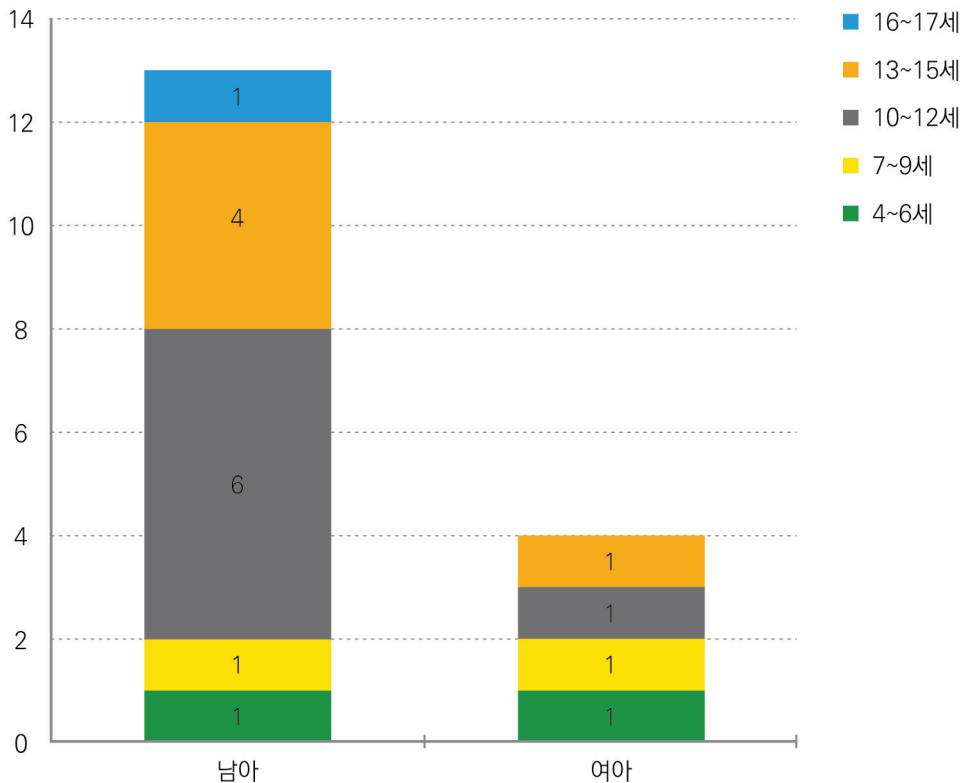
입소 아동을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인 10~12세가 7명(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생인 13~15세가 5명(29%)으로 많았다.

[표 3-3-15]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연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합계
남아	-	1	1	6	4	1	13
여아	-	1	1	1	1	-	4
계	-	2	2	7	5	1	17

[그래프 3-3-14]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연령 현황



(3)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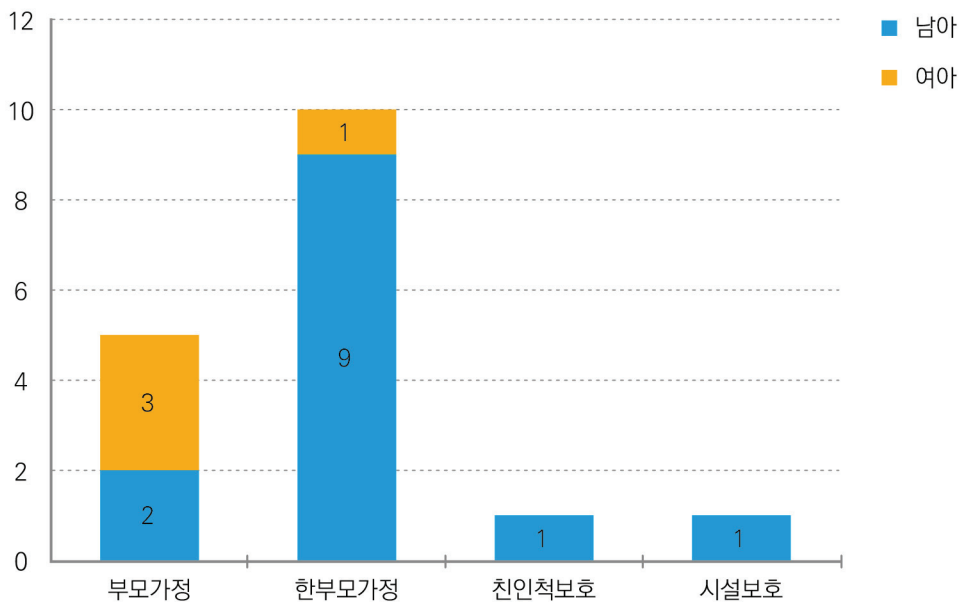
입소 아동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이 10명(5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가정이 5명(29.4%), 친인척보호와 시설보호가 각 1명(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6]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가족구성 현황

(단위 : 명,%)

	남아	여아	계	비율
부모가정	2	3	5	29.4
한부모가정	9	1	10	58.8
재혼가정	-	-	-	-
친인척보호	1	-	1	5.9
가정위탁	-	-	-	-
입양가정	-	-	-	-
시설보호	1	-	1	5.9
기타	-	-	-	-
계	13	4	17	100

[그래프 3-3-15]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가족구성 현황



(4)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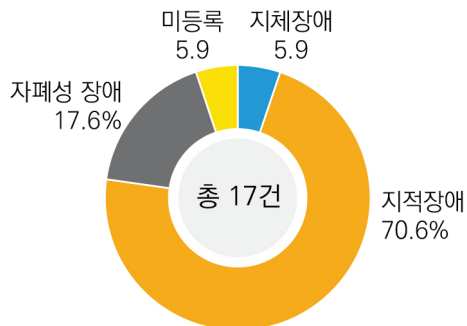
입소 아동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12명(70.6%), 자폐성장애 3명(17.6%)으로 발달장애가 15명(8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명(5.9%), 미등록 1명(5.9%)으로 나타났다.

[표 3-3-17]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유형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아	여아	
지체 장애	1	1	-	5.9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장애	-	-	-	-
언어장애	-	-	-	-
지적장애	12	10	2	70.6
자폐성 장애	3	2	1	17.6
정신장애	-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요루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	-
미등록	1	-	1	5.9
계	17	13	4	100

[그래프 3-3-16]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유형 현황



(5)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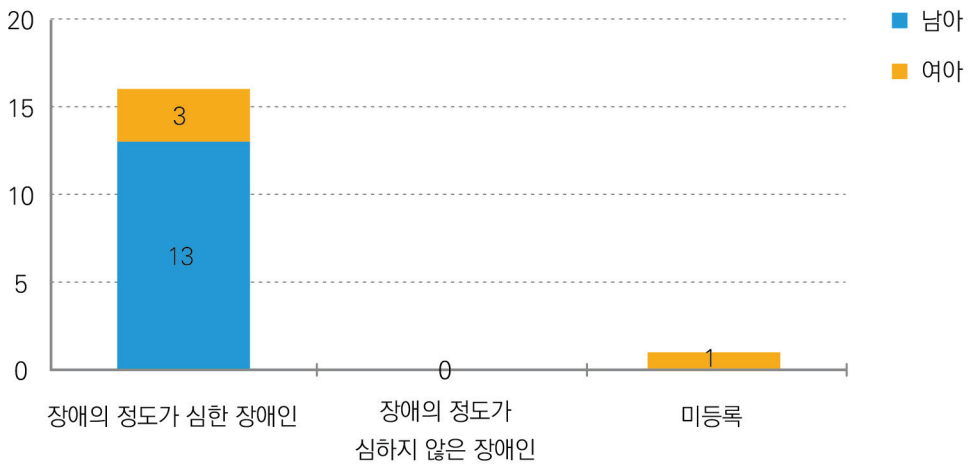
입소 아동의 장애 정도는 16명(94.1%)의 아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였으며 '미등록' 아동이 1명(5.9%)이었다.

[표 3-3-18]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정도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	3	16	94.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미등록	-	1	1	5.9
계	13	4	17	100

[그래프 3-3-17]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장애 정도 현황



(6)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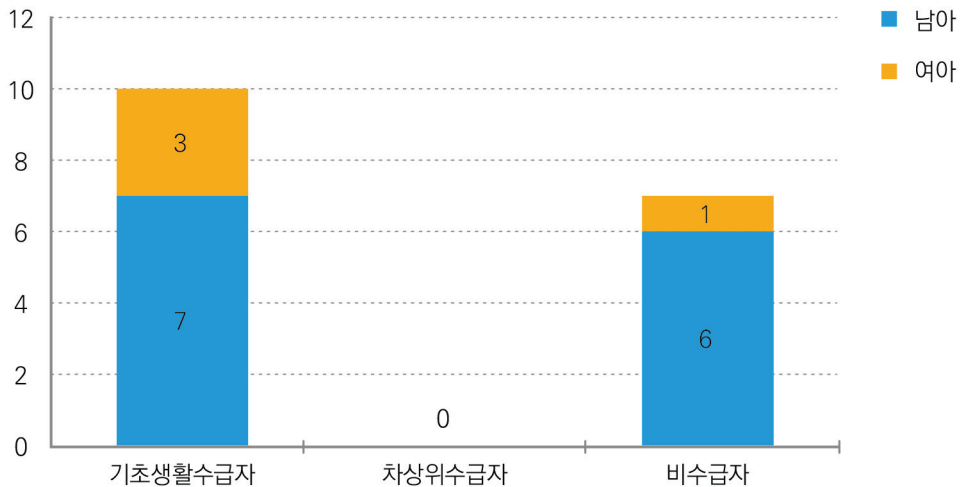
입소 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10명(58.9%), 비수급자 7명(41.1%)으로 나타났다.

[표 3-3-19]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아	여아	계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7	3	10	58.9
차상위수급자	-	-	-	-
비수급자	6	1	7	41.1
계	13	4	17	100

[그래프 3-3-18]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7)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의뢰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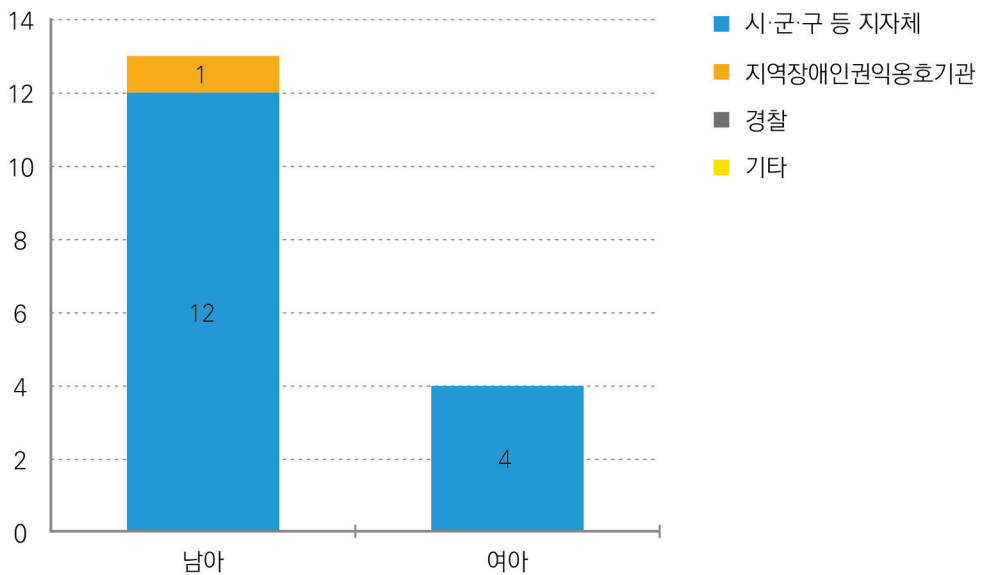
피해장애아동 입소를 의뢰한 기관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16건(94.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건(5.9%)로 지자체를 통해 의뢰되어 입소한 아동이 가장 많았다.

[표 3-3-20]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의뢰기관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시·군·구 등 지자체	12	4	16	94.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1	5.9
경찰	-	-	-	-
기타	-	-	-	-
계	13	4	17	100

[그래프 3-3-19]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의뢰기관 현황



(8)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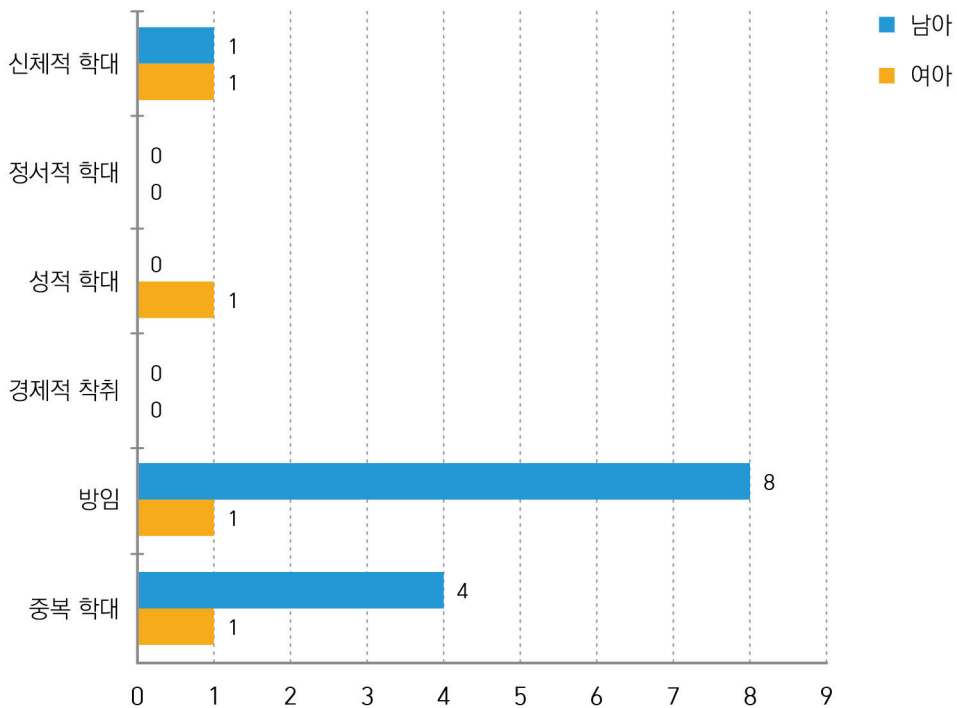
입소 아동의 학대 유형은 방임 9건(53%), 중복학대5건(29.3%)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학대 2건(11.8%), 성적학대 1건(5.9%)로 나타났다.

[표 3-3-21]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신체적 학대	1	1	2	11.8
정서적 학대	-	-	-	-
성적 학대	-	1	1	5.9
경제적 착취	-	-	-	-
방임	8	1	9	53
중복 학대	4	1	5	29.3
계	13	4	17	100

[그래프 3-3-20] 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 유형 현황



(9) 피해장애인가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 행위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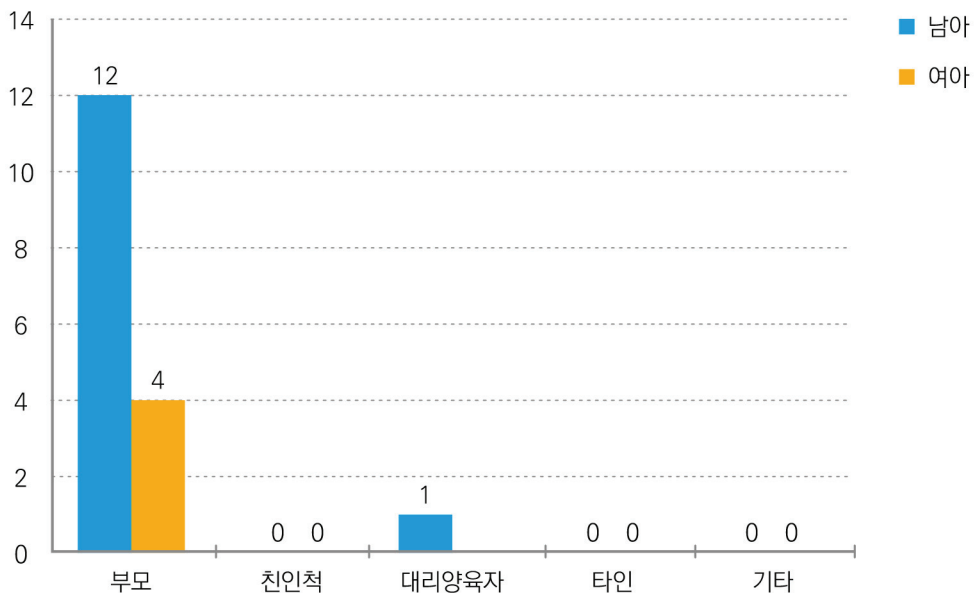
학대 행위자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16건(94.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리양육자 1건(5.9%)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라 함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등 보호자 대신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의뢰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표 3-3-22] 피해장애인가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부모	12	4	16	94.1
친인척	-	-	-	-
대리양육자	1	-	1	5.9
타인	-	-	-	-
기타	-	-	-	-
계	13	4	17	100

[그래프 3-3-21] 피해장애인가동쉼터 입소 아동 학대행위자 유형 현황



(10) 피해장애아동쉼터 평균 이용기간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일로부터 최대 9개월을 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자의 평균 이용기간은 일시보호가 7명(41.20%)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미만, 9개월 미만이 각각 4명(23.5%), 6개월 미만, 9개월 이상이 각각 1명(5.9%)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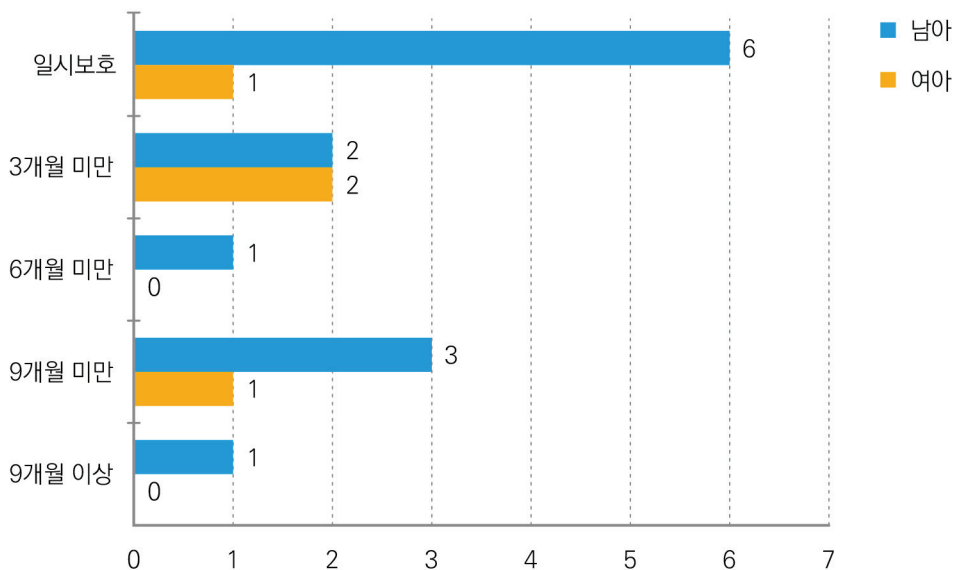
일시보호는 이용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로, 2024년에는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표 3-3-23] 피해장애아동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단위 : 명)

구분	평균 이용기간(개월)	2024년도 이용기간 별 현황					합계
	산출내역	일시 보호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남아	3.5개월 (1,364일/30일/실인원 13명)	6	2	1	3	1	13
여아	2.8개월 (332일/30일/실인원 4명)	1	2	-	1	-	4
계	-	7	4	1	4	1	17

[그래프 3-3-22] 피해장애아동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11)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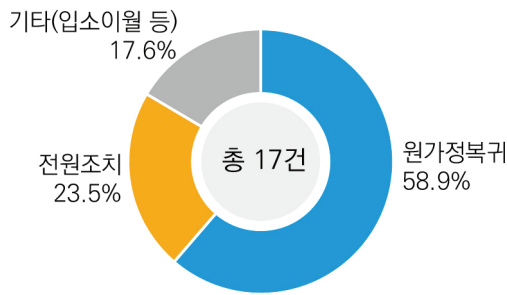
입소 아동의 퇴소 유형은 원가정복귀 10건(58.9%)이 가장 많았으며 전원조치 4건(23.5%), 입소 이월 등의 기타가 3건(17.6%)으로 나타났다.

[표 3-3-24]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원가정복귀	9	1	10	58.9
전원조치	1	3	4	23.5
기타(입소이월 등)	3	-	3	17.6
계	13	4	17	100

[그래프 3-3-23] 피해장애아동쉼터 퇴소 유형 현황



(12) 피해장애아동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피해장애아동쉼터 제공 서비스는 입소상담(외부기관 상담), 보호·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서비스 제공이 7,964회(9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일상생활능력 훈련 지원 5,927회(74.4%), 학업지원 1,255회(15.7%),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591회(7.4%), 문화·여가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390회(4.8%), 치료지원 420회(5.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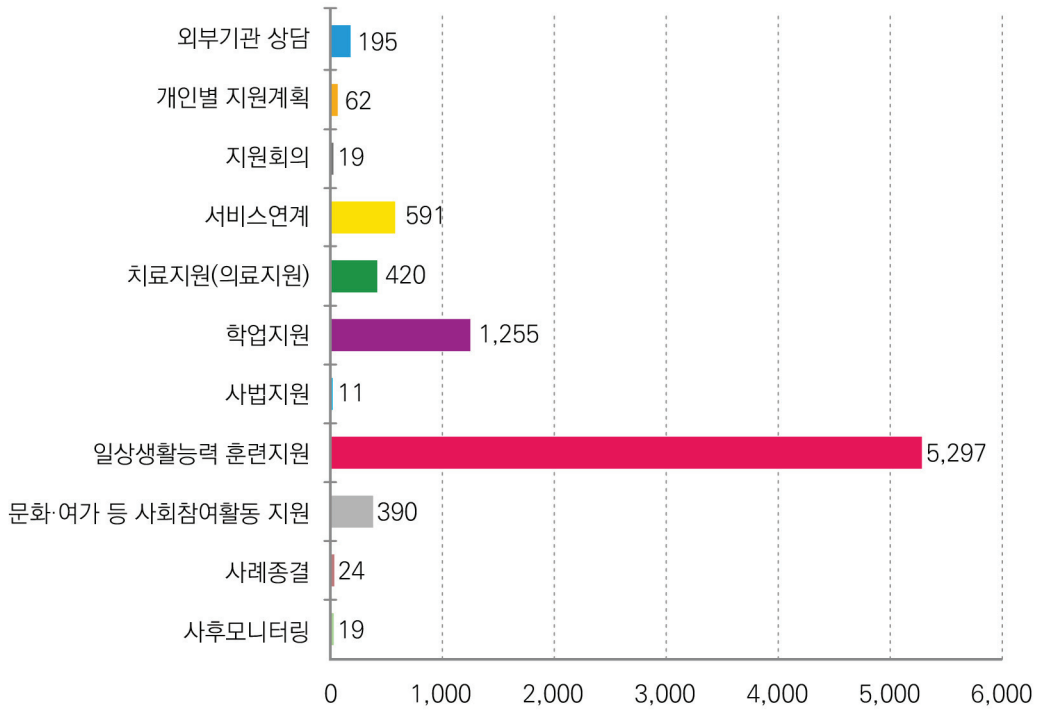
서비스 제공 현황의 차이는 각 쉼터의 월 평균 입소인원(남아쉼터 3.7명, 여아쉼터 0.9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표 3-3-25] 피해장애아동 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단위 : 회, %)

유형		남아	여아	계	비율
입소상담	외부기관 상담	130	65	195	2.3
보호·지원 계획 수립	개인별지원계획	39	12	51	0.6
	지원회의	15	47	62	0.7
	서비스연계	14	5	19	0.2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489	102	591	7.1
	치료지원(의료지원)	349	71	420	5.1
	학업지원	870	385	1,255	15.1
	사법지원	10	1	11	0.1
	일상생활능력 훈련지원	4,144	1,153	5,297	63.6
	문화·여가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271	119	390	4.7
사례종결 및 모니터링	사례종결	17	7	24	0.3
	사후 모니터링	14	5	19	0.2
계		6,362	1,972	8,334	100

[그래프 3-3-24] 피해장애아동 쉼터 제공 서비스 현황



IV

장애인차별 사례

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2. 시·군별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3.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4. 장애인차별 유형
5.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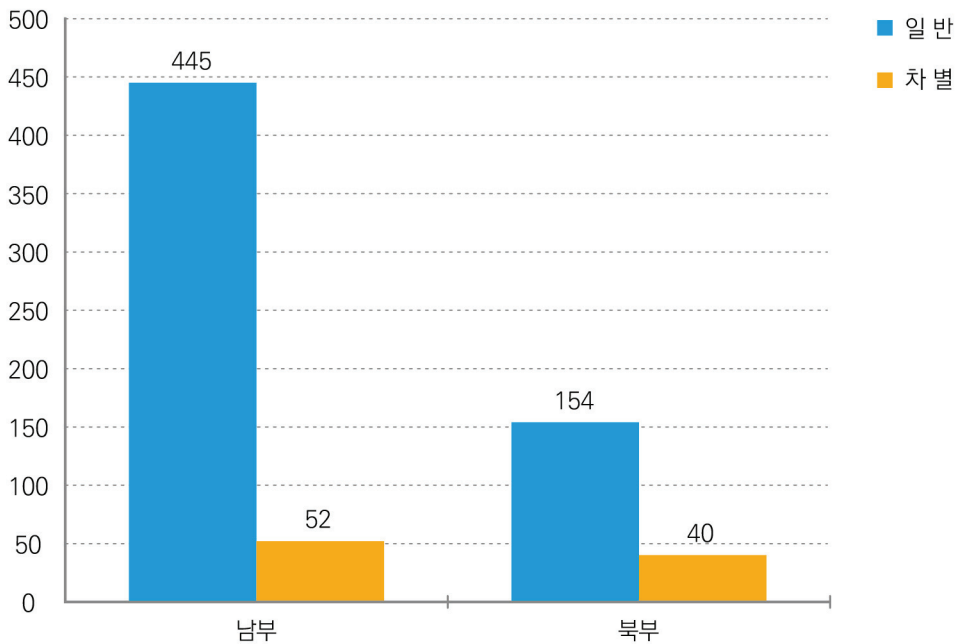
신고 접수된 장애인차별 사례는 92건(13.3%)이며, 장애인차별을 제외한 일반사례는 599건(86.7%)이었다.

[표 4-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일반	445	154	599	86.7
차별	52	40	92	13.3
계	497	194	691	100

[그래프 4-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2. 시·군별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시·군별 전체 장애인차별 신고접수는 고양시 8건(8.7%), 파주시와 의정부시가 각 7건(7.6%), 남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각 4건(4.3%), 시흥시·용인시·포천시·가평군이 각 2건(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시·군별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시·군	차별	비율	일반	비율	계	비율
수원시	1	1.1	39	6.5	40	5.8
성남시	-	-	15	2.5	15	2.2
안양시	1	1.1	15	2.5	16	2.3
부천시	-	-	11	1.8	11	1.6
광명시	-	-	3	0.5	3	0.4
평택시	-	-	11	1.8	11	1.6
안산시	1	1.1	24	4.0	25	3.6
과천시	-	-	3	0.5	3	0.4
오산시	1	1.1	22	3.7	23	3.3
시흥시	2	2.2	14	2.3	16	2.3
군포시	-	-	1	0.2	1	0.1
의왕시	-	-	5	0.8	5	0.7
하남시	-	-	-	-	-	-
용인시	2	2.2	22	3.7	24	3.5
이천시	-	-	4	0.7	4	0.6
안성시	-	-	11	1.8	11	1.6
김포시	-	-	21	3.5	21	3.0
화성시	1	1.1	22	3.7	23	3.3
광주시	-	-	13	2.2	13	1.9
여주시	-	-	6	1.0	6	0.9
양평군	-	-	4	0.7	4	0.6
고양시	8	8.7	23	3.8	31	4.5
남양주시	4	4.3	9	1.5	13	1.9
파주시	7	7.6	9	1.5	16	2.3
의정부시	7	7.6	19	3.2	26	3.8
양주시	1	1.1	19	3.2	20	2.9
구리시	-	-	5	0.8	5	0.7
포천시	2	2.2	9	1.5	11	1.6
동두천시	4	4.3	7	1.2	11	1.6
가평군	2	2.2	7	1.2	9	1.3
연천군	1	1.1	4	0.7	5	0.7
기타(타 지역)	2	2.2	15	2.5	17	2.5
미확인	45	48.8	207	34.5	252	36.5
계	92	100	599	100	691	100

3.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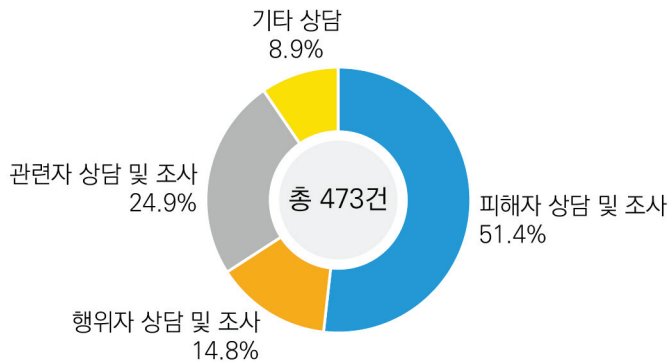
접수된 92건에 대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 현황이다. 전체 상담 및 조사는 473건 이뤄졌으며, 이 중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는 243건(51.4%), 관련자 118건(24.9%), 행위자 70건(14.8%)으로 이루어졌다.

[표 4-3]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피해자 상담 및 조사	212	31	243	51.4
행위자 상담 및 조사	56	14	70	14.8
관련자 상담 및 조사	69	49	118	24.9
기타 상담	33	9	42	8.9
계	370	103	473	100

[그래프 4-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4. 장애인차별 유형

접수된 92건 중 기타가 25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이 14건(15.2%)으로 많았으며, 이동/교통수단 13건(14.1%), 재화/용역 일반 10건(10.9%), 교육 9건(9.8%), 사법/행정 8건(8.7%), 시설물 접근 6건(6.5%), 문화/예술/체육 4건(4.3%), 정보 접근/의사소통 3건(3.3%)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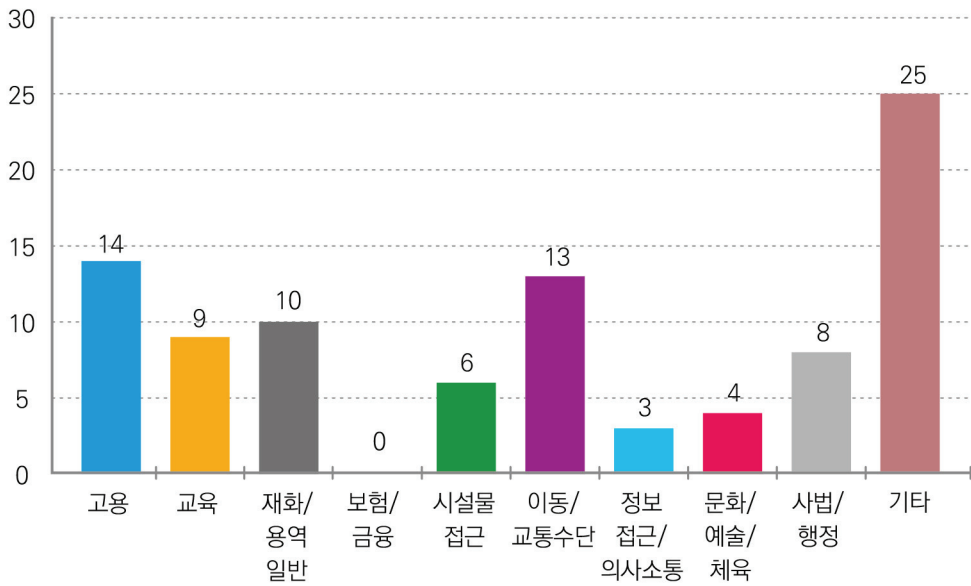
기타 영역은 다른 장애인차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은 차별로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 여성, 장애아동 등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표 4-4]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고용	8	6	14	15.2
교육	3	6	9	9.8
재화/용역 일반	7	3	10	10.9
보험/금융	-	-	-	-
시설물 접근	3	3	6	6.5
이동/교통수단	10	3	13	14.1
정보 접근/의사소통	2	1	3	3.3
문화/예술/체육	3	1	4	4.3
사법/행정	-	8	8	8.7
기타	16	9	25	27.2
계	52	40	92	100

[그래프 4-3]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5.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접수된 92건에 대한 지원 및 처리는 당사자 대응포기 22건(19.9%), 정보제공 20건(18.0%),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각 12건(1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총 지원 횟수는 접수된 건수와 상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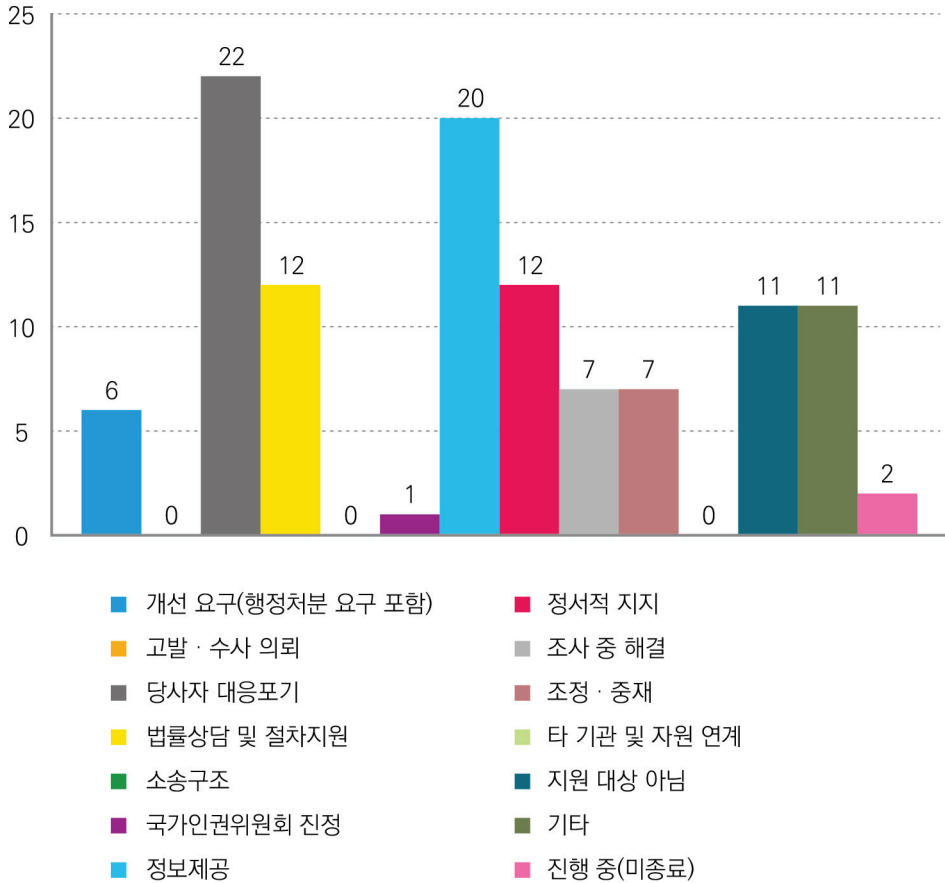
[표 4-5]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단위: 건, %)

처리결과	남부	북부	계	비율
개선 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4	2	6	5.4
고발·수사 의뢰	-	-	-	-
당사자 대응포기	20	2	22	19.9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3	9	12	10.8
소송구조	-	-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	1	0.9
정보제공	4	16	20	18.0
정서적 지지	10	2	12	10.8
조사 중 해결	6	1	7	6.3
조정·중재	3	4	7	6.3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	-	-	-
지원 대상 아님	10	1	11	9.9
기타	9	2	11	9.9
진행 중(미종료)	1	1	2	1.8
계	71	40	111	100

[그래프 4-4]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총 111건








피해장애인 주요 지원 사례




1. 신체적학대
2. 정서적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 착취
5. 유기·방임
6. 차별 사례

1. 신체적학대




신고내용 지적장애인이 입소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p>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평소 불편한 감정을 손을 휘젓거나 발차는 등의 행위로 표현함. - 피해자가 식사 후 식판을 갖다 놓는 과정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찼고, 이를 본 조리사가 피해자의 머리를 쟁반으로 내려침. - 이후 행위자는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이동함. 화장실 내부는 CCTV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시 확인결과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쟁반으로 무언가를 치는 '탕, 탕' 소리가 2회 들렸다고 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시설장에 대한 장애인학대신고불이행자통보, 행위자에 대한 분리 및 징계 요청 - 복지지원 : 조사 시 확인된 장기입원 이용인에 대한 생계급여 공제여부 확인결과 요청
 <p>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장애인학대신고불이행자 과태료 200만원 처분 - 행위자 정직 3개월 처분 - 생계급여 공제여부 확인결과 특이점 없음




신고내용 지적장애인이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p>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피해자가 방정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팔, 다리, 엉덩이 등 폭행함. - 평소 물건을 모으는 습관이 있는 피해자에게 행위자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폭행하고 가위로 머리카락 잘림.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 행위자와의 분리 및 쉼터 입소 - 주거지원 : 체험홈 초기면접 및 입소 지원 - 사법지원 : 행위자 고소,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 복지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p>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원금 수령 - 체험홈 입주대상자 선정 및 체험홈 입주 - 행위자 가정보호사건 검찰송치

신고내용 가족에 의한 신체적 학대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매제는 성인인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자가 귀여워서 깨물거나 꼬집는 등의 행동을 상습적으로 함. - 이로인해, 피해자의 등과 배, 팔 등 신체 곳곳에 멍과 상처가 발생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행위자 고발 조치 및 피해자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조치 결과: 송치(장애인복지법 위반, 상해)

신고내용 가정 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 관한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특별한 이유없이, 2주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함. - 아동의 팔과 다리에 친부에 의한 상흔이 확인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 사법지원: 고발 및 사법 모니터링 - 복지지원: 지역자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장애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에 대한 고발 조치 후 경찰 수사 진행 중 - 피해자 심리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비용지원

2. 정서적학대

신고내용 활동지원사에 의한 정서적학대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사가 피해자를 정서적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의해 확인됨. -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행위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강요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행위자 고발 조치 - 심리지원: 심리상담센터 연계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조치 결과: 송치(장애인복지법 위반) - 심리치료 5회기 진행

신고내용 장애자녀 부모의 자녀 거주지 강제침입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의 거주지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침입함. 강제로 자녀의 거주지에 침입한 부모는 자녀를 폭행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 의료지원: 피해자 정신과 진료 지원 - 복지지원: 피해자 장애 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절차 지원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원가정 복귀지원 - 지속적인 심리 안정을 위한 전국민마음투자 사업 안내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신고내용

공동생활가정 입소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인권침해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

 <p>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2인인 사례로 행위자1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행위자2는 자원봉사자임. - 행위자2가 피해자 어깨를 밀대려 했으며,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행위자 2를 밀게 됨. - 행위자2와 행위자1이 피해자와 중재자리를 마련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장시간 합의 방법과 합의금을 강요함. 잠을 자지 못하고 행위자들의 강요를 받던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됨. - 행위자 1이 피해자에 대해 특수협박, 행위자 2가 피해자에 대해 상해죄로 경찰 신고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피해자의 피의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외부법률지원단 법률자문
 <p>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문서위조죄 벌금 1,000,000원 선고(구약식) - 행위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 피해자는 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지기관 이용 중




신고내용

장애 미등록 (지적장애 추정) 여성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학대 및 경제적착취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p>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와 피해자는 조카와 이모의 관계로 행위자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소액결제 등을 통한 고액의 채무를 발생시킴. - 피해자의 아버지는 치매 소견, 어머니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가족 구성원이 당사자의 피해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피해자는 행위자가 발생시킨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권사로부터 채권 추심 받고 있음. - 피해자는 하루 8시간 이상 행위자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대가성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지원 : 행위자 자녀 돌봄에 대한 급여 지급 요청, 소액결제 변제 요청 - 사법지원 : 미납금에 대한 채무조정 - 의료지원 : 피해자 장애검사 지원, 피해자 친모 장기요양등급심사 신청 - 복지지원 :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회의 요청, 기초생활수급권 신청, 디지털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p>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적장애 등록 및 생계급여 대상 선정 - 디지털범죄피해자지원사업 선정되어 300만원 지원 - 피해자 친모 장기요양서비스 지원대상 선정되어 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합의서 작성 완료 - 피해자 행위자에 대한 고소의사 없음. 행위자 자녀 돌봄 계속 하고싶다는 의사 있어 현재 도 돌봄 지원 중

3. 성적학대




신고내용 지적장애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노출 사진 유포 등 성피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의 의사확인 없이 노출 사진을 유포하였으며,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함. - 행위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노출 방송을 강요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 확인,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연계, 기초생활수급 신청, 복지관 연계, 필요물품 지원, 긴급복지플러스 사업 신청 - 사법지원: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 의료지원: 병원 진료 지원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거주지 소재 복지기관 연계되어 사례지원 대상 선정




신고내용 지적장애여성이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복지기관에 같이 다니는 동료로, 피해자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부의를 보였음에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고 강제로 피해자의 집을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요하였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고소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현재 복지기관 다니면서 안정된 생활 중 - 행위자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및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고내용 남편에 의한 성매매 강요 등 성적학대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인 남편이 아내에게(지적장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응급조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분리 / 전염성 검사 지원 - 사법지원: 해바라기센터 신뢰관계인 동석, 이혼 절차 지원 - 의료지원: 질병에 따른 입원 및 외래 진료 지원 - 거주지원: 경기도 내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신청 및 주거지 탐색 - 심리지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심리상담 지원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 진행 - 협력기관에서 이혼 절차 진행 중 - 행위자 1심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5년 정보공개

신고내용 친부의 폭행과 강제추행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폭행하고 강제추행 함. - 경찰 수사결과 검찰로 사건 송치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지원: 전문 심리상담 센터 연계 및 비용지원 - 교육지원: 지역 성문화 센터 연계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도모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와 분리되어 지자체와 연계된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 중 - 지속적인 전문 상담을 통해 피해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 도모 -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발생 모니터링 및 생활안정 지원

4. 경제적 착취




신고내용 친척에 의한 경제적착취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퇴직금과 생활비를 관리하겠다고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전해 받은 친척은 피해자의 금전을 잠시만 사용하겠다고 빌려 감. - 행위자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행위자 수사의회 및 피해자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민사 소송구조신청 지원 - 복지지원: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신탁 절차 지원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의회 관련 수사 진행 중 - 지역사회 내 복지관 연계 - 신탁 절차 지원 중




신고내용 보험설계사에 의한 경제적착취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설계사가 발달장애인을 속여,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의 소액결제로 수 백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를 도용하여 또 다른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응급분리 - 복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체험홈사업 절차 지원 - 사법지원: 고발장 작성 및 절차지원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자립지원 연계 (체험홈사업 입주예정) -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지원서비스, 장애등록 절차지원)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신고내용 지적장애인이 상업시설에서 숙식하며 경제적 착취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14~15년 간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서빙과 닭, 오리 등을 잡아 해체하는 일을 하였으나 행위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함. -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욕) 한다고 함. -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모아준다는 이유로 매달 10만원씩 3개월 간 돈을 받았다고 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 피해자, 행위자 분리 위한 쉼터입소 지원 - 복지지원 : 지역 내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요청 (지역 연계) - 중재지원 : 행위자, 피해자 합의된 근로조건 중재, 정당한 급여지급 요청, 피해자에게 받은 돈 340만원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정리 요청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응급조치 (쉼터입소) 거부. -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 행위자, 피해자 합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 수령, 월 일정금액(월세) 지급하면서 기숙사형태로 음식점에서 생활 중 - 행위자 변제금액 340만원 피해자명의 통장으로 정리 완료

신고내용 지적장애여성이 지인들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착취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종교기관의 임원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마련을 위해 근로할 것을 강요하였고, 급여 또한 행위자가 관리함. -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모아주겠다고 속여 생계급여 일체를 행위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게 하였음. 피해자는 근로 내역이 확인되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행위자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밟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폭행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행위자 고소, 안전조치(스마트워치 발급) - 응급조치 : 쉼터입소 지원 - 주거지원 : 자립지원 - 의료지원 : 정신과 진료 지원 - 복지지원 : 생계급여대상자 재신청 및 복지기관 연계의뢰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주택 입주 및 장애인일자리 근로 중 - 행위자 고소 건(죄명 : 장애인복지법위반, 횡령)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 생계·의료급여 지원 선정

5. 유기·방임




신고내용 자폐성장장애아동이 치료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피해아동이 치료 중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코를 손으로 잡아 비틀거나, 딱 밤 자세로 콧등을 때리는 행위를 하여 코에 멍이 들게 함 - 행위자는 피해아동이 우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팔을 때리거나 가지고 있던 볼펜을 피해아동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행위자 고발 - 복지지원 :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복지관 치료서비스 진행 요청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찰 조사 중 - 지역자원 연계 및 신속지원(패스트트랙)을 통한 학대피해자 치료서비스 강화




신고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방임으로 인해 건강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입소장애인 4명 중 1명 사망, 2명 병원입원 중이었고 시설조사 당시 피해자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공간의 방바닥에 누워 있었음. - 시설에는 피해자가 일 3회 복용해야 하는 정신건강 관련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음. - 행위자는 입소장애인 4명의 통장을 보관·관리하며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 등 전액을 인출했고, 그 비용은 입소장애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 피해자 병원이송 (행위자와의 분리) - 사법지원 : 행위자 고발 조치, 평지법률지원단 법률자문, 의견서 제출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응급분리 후 사망 - 사건 검찰송치(장애인복지법위반, 횡령) - 시설폐쇄 처분

신고내용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던 친모는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은채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음. 이에, 아동은 식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 심각한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등 건강의 위해가 발생함.
 지원내용	- 사법지원: 행위자 고발 조치 - 복지지원: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지원결과	- 고발 조치 결과: 불송치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서적 지원 활동 진행

신고내용 부모에 의한 유기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만 남겨둔 채,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가버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기함. - 피해자는 갈 곳이 없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노숙생활을 함.
 지원내용	- 거주지원: 학대피해쉼터 입소 지원 면담을 통한 욕구 파악 후 자립 의사 확인함. 체험홈 연계의뢰를 통한 입주 지원 - 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절차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절차 지원
 지원결과	- 피해자는 체험홈에서 자립생활 교육과 지원을 받으며 생활 중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6. 차별사례

신고내용 청각장애를 이유로 부동산 임대를 거부당했다는 신고접수




 조사결과	- 청각장애로 인해 소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거부한 것을 확인함.
 지원내용	- 차별 조사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지원
 지원결과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차별행위로 인정 - 당사자에게 재발방지 약속 담은 행위자 사과문 전달

신고내용 장애인 체육회 종사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접수

 조사결과	- 장애인 비하발언 건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6호(품위훼손)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리됨.
 지원내용	- 스포츠 윤리센터 신고 및 조사 절차 지원
 지원결과	- 스포츠 윤리센터 신고 및 지원을 통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고내용

중증 지체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책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중증의 지체장애인으로 아파트 24층에 거주하며 생활하였음. - 거주하는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서 고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데 살아라, 계단을 타고 다녀라' 라는 답변을 받았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 위원 측에 편의제공 공문 발송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2025. 06 결정)

신고내용

지적장애아동이 지역 행사에서 놀이기구 탑승 거부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은 이전에도 와서 놀이기구를 탔던 적 있음에도 행위자는 아동의 의사소통 정도를 확인한 후 탑승 거부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중재 시도 (개선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 진행 중 - 행위자가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개선하겠다는 의사 보임

VI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1.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사업
2.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
3. 정책개발사업
4. 협력체계 구축사업
5. 홍보사업

1.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사업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발달장애인 경제적착취 예방워크북 1종,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인권교육 교재 1종, 경찰대상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 1종을 개발하였다.



발달장애인 경제적착취 예방 워크북 (안전한 경제습관의 경제범죄예방 워크북)

- 대상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 및 경제적 착취 피해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부모대상 인권교육 교재(우리모두의 인권)

-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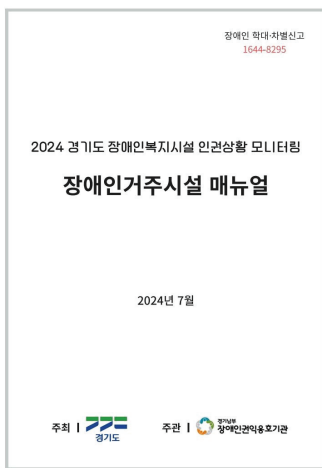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 (경찰관련)

- 대상 : 경찰
- 경찰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안내, 장애인학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업무협력 방법에 대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2.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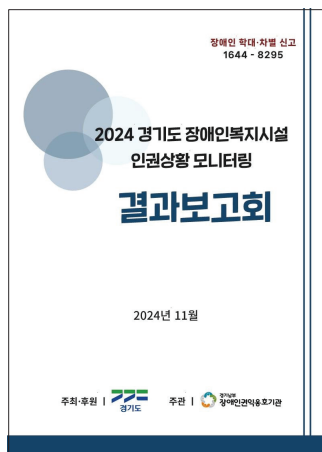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실태조사, 학대예방교육, 인권교육, 인식개선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하여 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장애인,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실태조사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모니터링 사업 : 장애인거주시설 편

- 대상 : 경기도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매뉴얼' 개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2024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은 경기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이후 결과보고회 개최

2) 교육사업



찾아가는 인권교육(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교육 (2024)

- 대상 : 경기도 내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사회복지요원, 경찰청 등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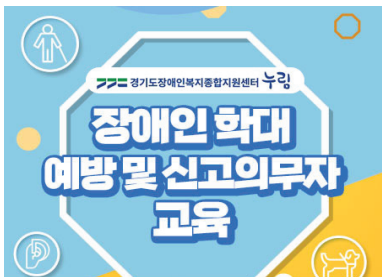
장애인 인권교육(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도민교육 (2024)

- 대상 : 경기도민
- 기관 소속의 인권강사단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등 교육 수강생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 실시



학대신고 의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2024)

- 대상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탑재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GSEEK / www.gseek.kr)
- 수강횟수 : 누적 18,417,669회 (2024.12.31. 기준)
-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과정 개발 및 운영



| 2024년 인권 보장에 앞장서는 현장 활동가들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

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한 청년 권리옹호자 교육

교육 일정: 7.9(화) ~ 8.7(수) [총 10회기]

강의	교육일자	교육주제	교육강사
OT	7.9.(화) 18:30-19:00	오리엔테이션	교육 담당자
1	7.9.(화) 19:00-21:00	장애와 장애인권의 사회적 이해	김도현 (이마이나나 한살림원, 노동조합(전국노조대협))
2	7.11.(목) 19:00-21:00	인본 모두 속 장애인	김기쁨 (울부새학교 교수)
3	7.16.(화) 19:00-21:00	UN 장애인권리협약	이승연 (법조공익활동 나눔 변호사)
4	7.18.(목) 19:00-21:00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김정희 (장애와인권발바닥운동 상담활동가, 서울복지재단(전국노조대협))
5	7.23.(화) 19:00-21:00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	임소연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6	7.25.(목) 19:00-21:00	빈곤과 사회복지	황성철 (연문사회연대 사무국장)
7	7.30.(화) 19:00-21:00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8	8.1.(목) 19:00-21:00	고립과 배제 속 정신장애인	이한결 (경기정보지원센터 연대장, 경기정보도 대표이사)
9	8.6.(화) 19:00-21:00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10	8.7.(수) 19:00-21:00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하여	류은숙 (연관연구소 '장' 대표)

청년 권리옹호자 교육 (2024)

- 대상 : 사회복지관련학과 대학생 (예비사회복지사)
대학 사회복지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빈곤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권리옹호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시각과 고민을 나누는 교육 실시



시민인권학교 (2024)

- 대상 : 경기도민
경기도민의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인권강사단 운영 (2024)

- 대상 :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 강사
기관 소속의 인권강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 학습 모임 및 강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진행

3. 정책개발사업

경기도 내 장애인 인권 현안을 확인하고, 인권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실시하였다.



인권포럼 (2024)

- 대상 : 경기도민

- 주제 :

(남부) UN 세계 장애인의날기념 장애인 공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경기남부지역 장애인 학대 등 권익침해 현황과 추세'와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한계 및 개선방안' 토론회 실시

(북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논의하고자 토론회 실시

4. 협력체계 구축사업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체계 구축사업 (2024)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차별예방과 지원에 기여

- 장애인 인권정책 개선 시·군 간담회
-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민·관·경 등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및 신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음부즈맨 사업 (2024)

- 대상: 경기 남부지역 장애인복지관 소속 시민옹호인
 - 내용: 시민옹호인 간담회, 시민옹호인 역량강화교육, 장애인 학대예방 캠페인, 홍보리플렛 미니배너 제작 및 배포
- 지역사회에서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시민옹호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캠페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인권침해의 조기발견 체계형성에 기여



권리충전소 운영 (2024)

- 대상: 경기 북부지역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 내용: 찾아가는 장애인차별 및 학대 상담, 기관 및 학대신고 전 화번호 홍보
-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차별 및 학대관련 상담과 홍보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



5. 홍보사업

장애인학대 및 차별 등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내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 캠페인, 서포터즈 운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을 진행하였다.

월간소식지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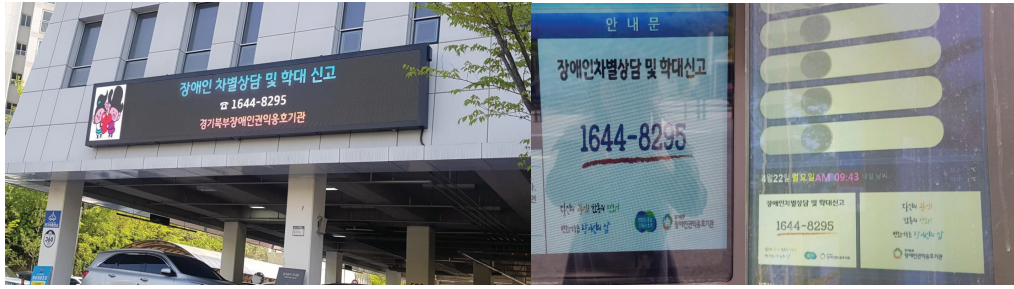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대상 참여부스 캠페인



지역축제 내 참여부스 캠페인



경기도민 대상 길거리 캠페인



장애인학대·차별 신고 전화 안내 캠페인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 서포터즈 운영

침해 예방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재난 정보 접근권

장애인학대·차별신고
1644-8295

재난 정보 접근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3기 - 김민정, 이지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자원언어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아버지 C

가정 내에서 아버지 C에 의해

경기남부장애인학대가 발생 도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서포터즈 3기 신선아, 한은혜 제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

제 10조

-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진, 전보, 징년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
-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

서포터즈 3기 신선아, 한은혜 제작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을 위한 SNS콘텐츠 제작 및 배포 (대학생 서포터즈 3기)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영상) 및 배포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홍보영상

부록

1. 용어 설명
2. 장애인학대 지원절차
3.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절차
4.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절차
5. 장애인차별 지원절차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7.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1. 용어 설명

📁 기본개념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15가지 유형으로 나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주요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장애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장애정도

2019년 7월부터 1~6급의 등급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장애인학대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중복 학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
-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등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보호의무자: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재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말함.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이 이에 해당



장애인차별

○ 장애인차별

구 분	개 념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간접차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이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차별 유형

구 분	개 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강요하는 경우 -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재화/용역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p>※ 재화와 용역 : 재화는 가치를 지닌 물품을 의미하고, 용역은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의미</p>
보험/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구 분	개 념
시설물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이동/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정보 접근/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등
문화/예술/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관광·체육 시설의 사업자·관리자가 장애인이 해당 활동을 참여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사법/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성권, 성 등 :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등 -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에서 교육권, 재산권, 거주·이전, 외부와의 소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신체를 공개하는 경우 등 - 건강권 :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이 장애가 있는 여성·아동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통계방식에 따라 내용 정리함

○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구 분	개 념
개선 요구 (행정처분 요구 포함)	-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한 지역기관의 직접적 개선 요구(종사자 교육, 지침 변경 등)나 소관 행정청에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 관리 감독기관에 문제가 된 기관의 감사 요구, 신고, 진정이나 민원 제기(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외) 등을 말함
고발·수사 의뢰	- 직접 사건을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진정 서류 작성을 지원하거나, 직접 진정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 일반(차별)사례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절차 안에서의 절차지원을 하는 경우
소송구조	- 직접 혹은 법률구조 기관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민·형사·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경우
조정·중재	- 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들을 조정 및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
정보제공	- 복지상담, 유관기관 정보 문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사 중 해결	- 상담 중 기관의 개입 없이 해결된 경우
정서적 지지	- 사회에 대한 불만, 하소연, 고충 등을 호소하는 당사자 및 내담자에 대한 위로나 지지를 한 경우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 기관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타 기관 및 자원을 연계하는 경우
당사자 대응 포기	- 신고접수 후 지원과정에서 당사자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 당사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하는 등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기타	- 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접수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포함)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 일반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차별, 개인적 분쟁,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

○ 인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신고 이외의 경로로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 연계

타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이관

특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기관 간 협의 등으로 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사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이관받은 기관으로 넘어감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

○ 비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들을 비신고의무자라고 함. 본인,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함

- 가족 및 친인척: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
- 유관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종사자로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신고의무자가 아닌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이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이 아닌 의료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아동·노인관련기관 종사자, 청소년·여성·노숙인·이주민 등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타인: 피해장애인의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 파악 안 됨: 신고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학대조사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과정.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응급조치가 동시에 실시됨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및 제2항)

○ 사례판정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절차.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 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로 판정

구분	개념
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잠재위험사례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사례회의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여 사례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회의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논의하여 사례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 재학대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개입종료되었다가 다시 신고접수 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최초 장애인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

○ 장애인학대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

📁 피해자 등 지원

○ 피해장애인 지원

학대사례로 판정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학대 후유증 감소, 학대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함

- 의료지원: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 의료조치, 검진 또는 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말함
- 심리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함
- 거주지원: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 마련에 관한 지원으로 응급보호, 임대주택과 같은 재가에서의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와 같은 거주시설에서의 거주지원 등이 있음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함
- 복지지원: 장애인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
- 예방교육지원: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말함
- 학업지원: 피해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협의나 신청, 연계, 전학 신청, 등·하교 지원 등 학업을 위한 지원을 말함(2022년 신설된 지원 유형)
- 중재지원: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절차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이끌어내는 지원을 말함
- 진정지원: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직접 진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는 지원을 말함
- 상담지원: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교육·중재·진정 외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정서적 지지, 진행 경과 안내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상담을 말함
- 기타지원: 어떤 유형에 포함되지 어려운 지원으로 피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지원하거나, 다수의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통칭함

○ 사례종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마치는 단계로 사례종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실시하지 않음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말함

○ 개입종료

사례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함

2. 장애인학대 지원절차

📁 사례지원 개요

-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및 차별사례의 신고(상담)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말함.

📁 절차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및 차별사례는 신고(상담)접수부터 개입종료까지의 절차로 진행.



장애인학대사례는 사례판정 이후 피해자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거쳐 사례의 개입을 종료함.

장애인학대사례 외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피해자 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접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음.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함. 2021년부터 전화 외에도 문자(SMS),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음. 누리집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내방 신고도 가능함.

○ 학대조사

신고접수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조사를 실시함.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현장조사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동행하여야 함.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나 질문을 실시함.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조사 시 장애인학대와 관련있는 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함.

이때 사안의 응급성, 재발가능성, 학대행위자에게 거주지가 노출된 경우, 행위자가 가족이며 행위자인 가족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 등의 경우 쉼터로 분리하여 보호함.

○ 사례판정

학대조사 이후 장애인학대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 결정 회의인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함. 사례회의 시 판정이 어렵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쉼터 입소자의 경우 학대판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비학대로 판정된 사례자의 경우 쉼터에서 퇴소절차가 이뤄짐(단,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함)

○ 피해자 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되면 조사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함.

사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예방교육지원, 학업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함.

쉼터 입소 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1. 보호 및 숙식 제공
2. 심리안정 및 회복지원 : 심리상담지원, 심리체육, 심리운동프로그램, 의료지원 등 진행
3. 일상생활회복 및 사회참여활동지원 : 개인위생, 식생활관리교육, 금전교육, 평생교육, 자기 옹호교육, 문화여가, 별빛체험, 소방/안전교육, 성/인권교육, 직업교육(바리스타, 천연 비누공예, 클레이공예, 직업탐구, 수어교실 등), 주 1회 나들이 프로그램,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이야기 프로그램 등
4. 지역사회정착지원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지원, 새로운 거주공간 연계지원

○ 사례종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마치면 사례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함. 사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정·변경하여 피해자 지원을 실시함.

○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을 마치기로 결정하면 일정 기간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 및 안정적인 생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 (쉼터 : 퇴소 후 3개월)

○ 개입종료

사후 모니터링 기간 내 재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례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종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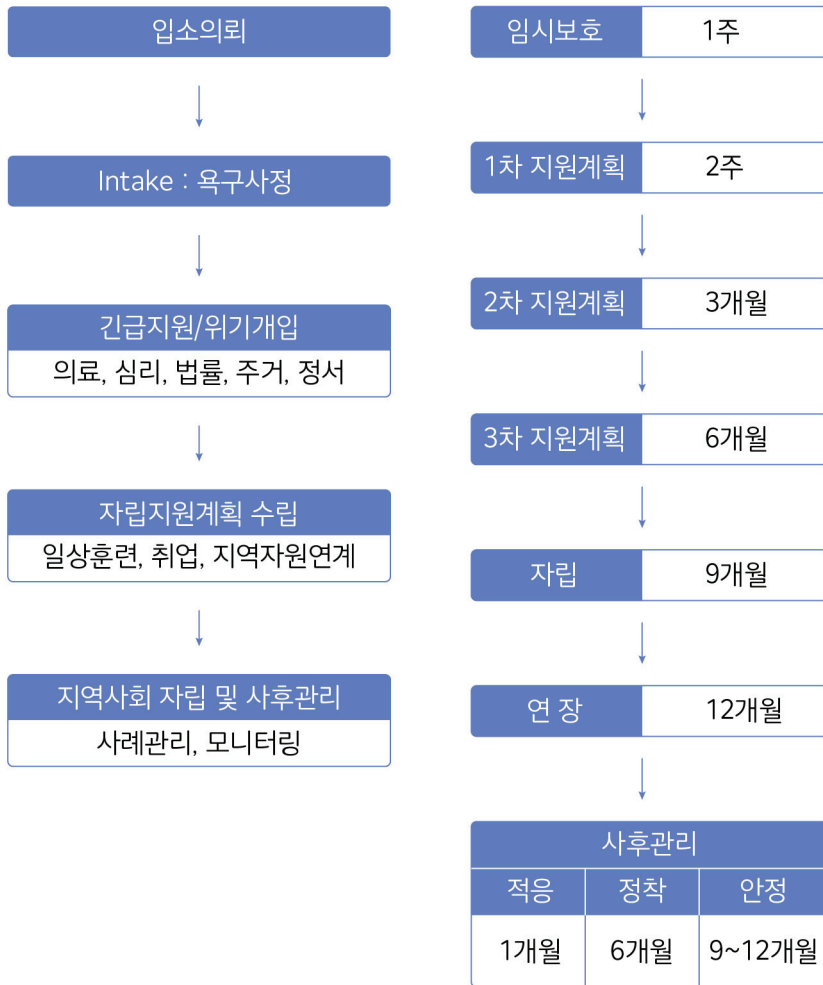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그림 2]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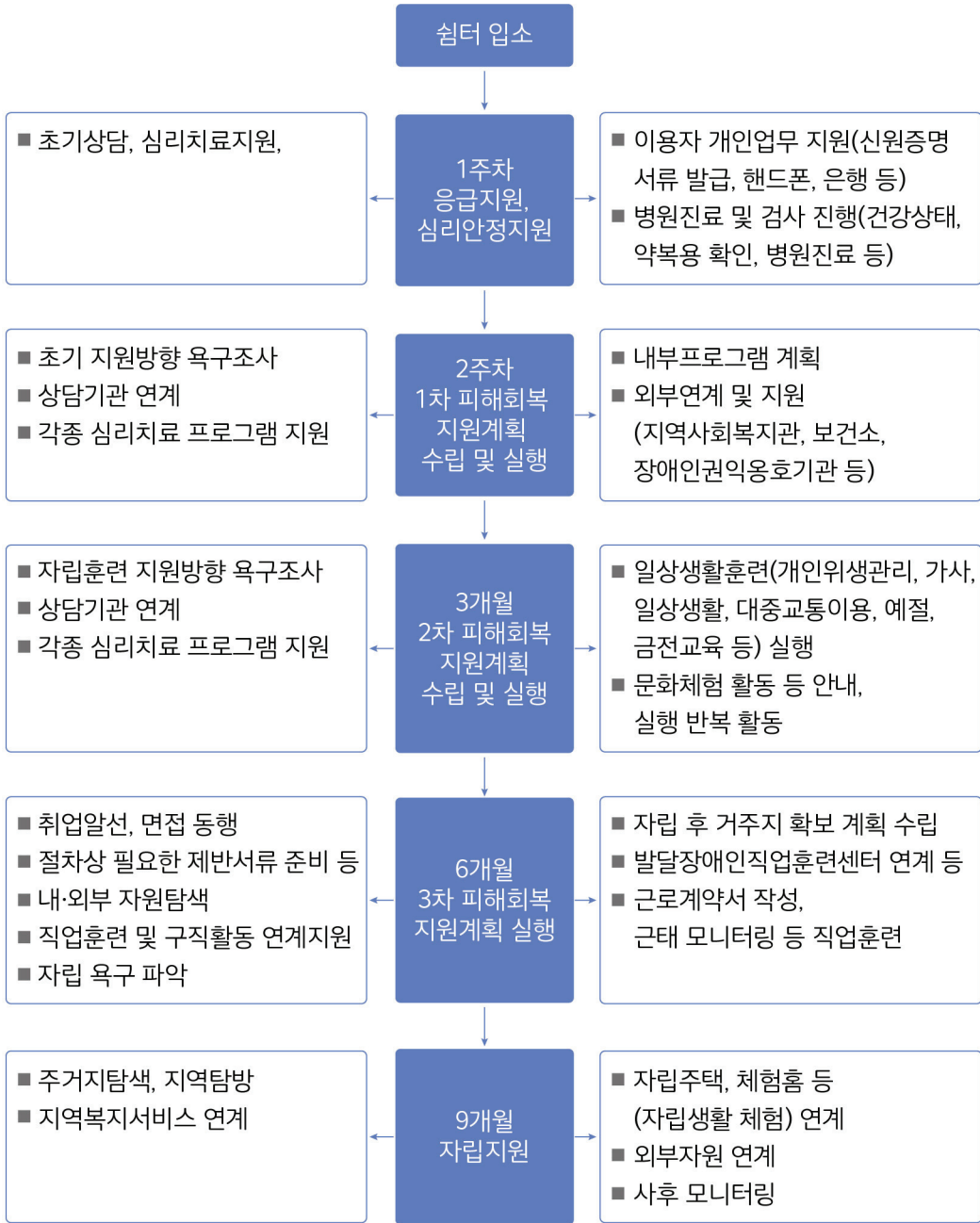
3.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절차

이용절차



[그림 3]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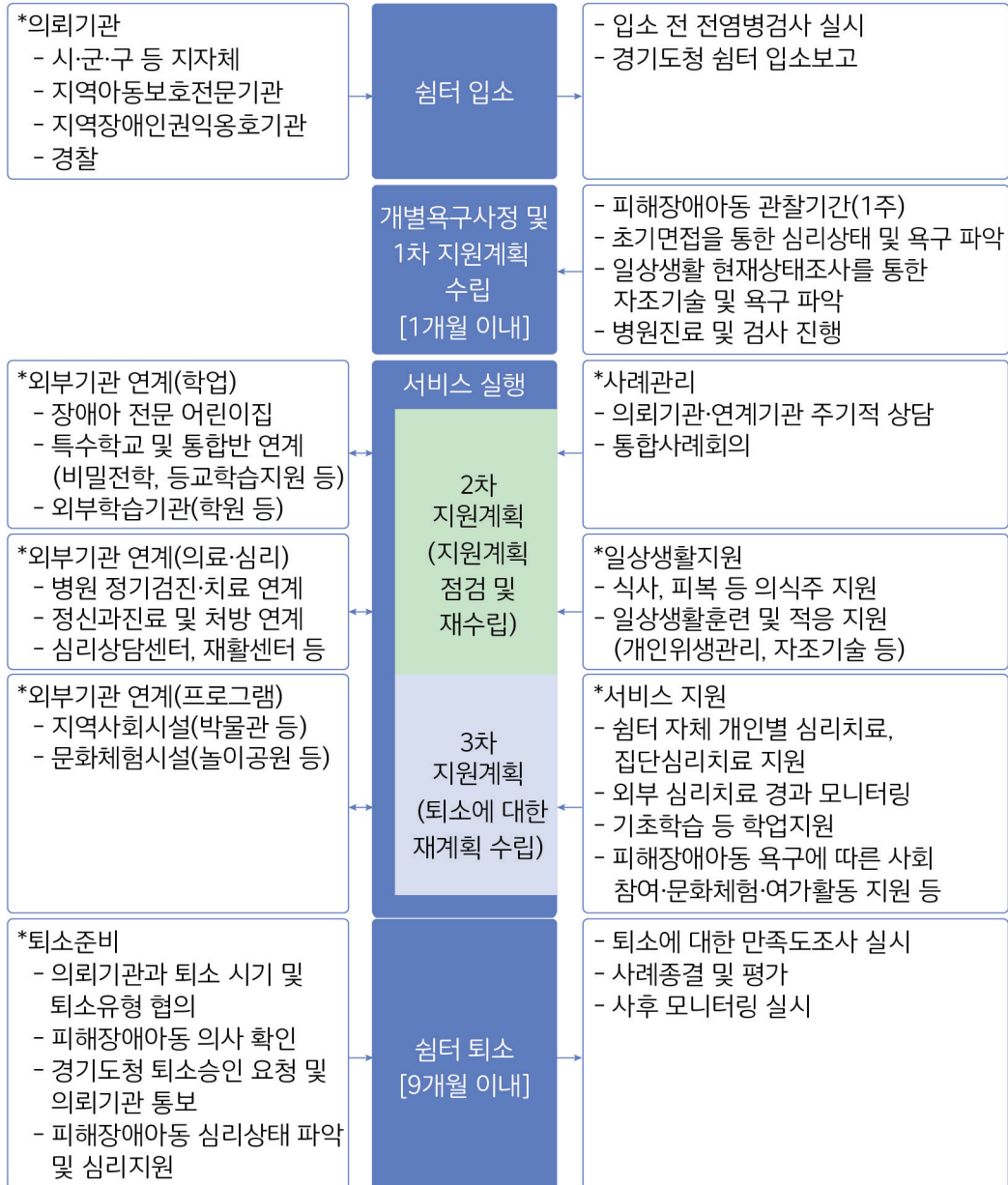
📁 지원체계



[그림 4]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지원 체계도

4.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절차

☞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 체계



[그림 5] 도(道)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 체계도

5. 장애인차별 지원절차

○ 장애인차별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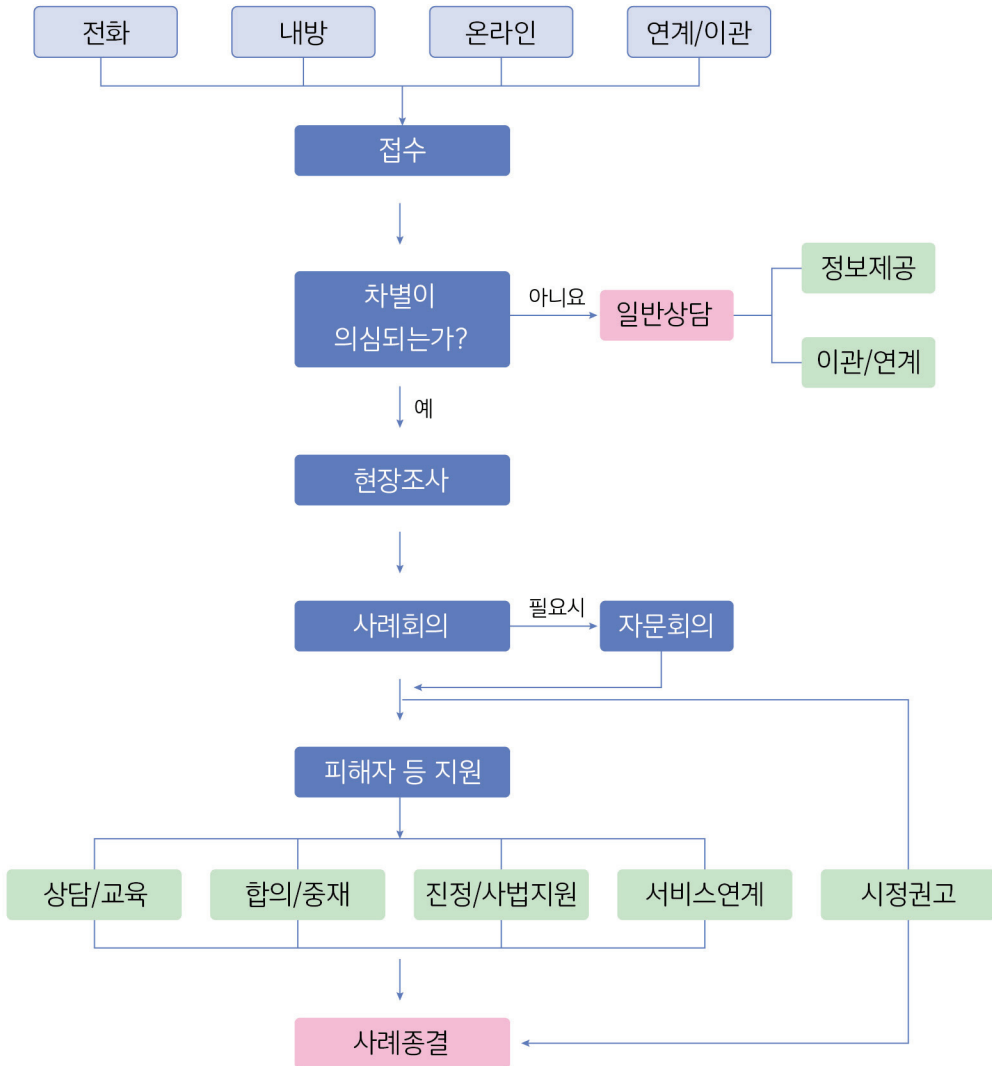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원대상 장애인차별 분류

장애인 차별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일반, 보험/금융, 시설물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차별 사례지원 절차



[그림 6]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 사례지원 체계도

○ 장애인차별사례 처리결과

장애인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차별로 판단된 사례에 대하여 개선요구, 고발/수사의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인권위 진정, 정보제공, 정서적지지, 조정/중재,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 및 지원함.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함.

전화 외에도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 신고 등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학대를 받았을 때 문자(SMS)와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의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 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나 유튜브 채널 동영상 활용 등

* 수강사이트(<https://www.gseek.kr>)

** 홈페이지(www.naapd.or.kr → 정보 → 발간자료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1600-0999),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031-287-113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031-851-1007)

□ 교육실시 및 교육 포함 여부 결과 제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 **(내용)**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②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동법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 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개정 2025.04.22. 시행 2025.10.23.>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5(불이익 조치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 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 (영상물 촬영), 제11조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3조 (신변안전조치)

7.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경기도인권센터		031-8008-234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 북부청사 별과 4층, 상담실 별관 1층)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국번없이 1372, 031-251-989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15호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031-8008-55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031-8008-451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20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98, 086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동 1층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031-853-9347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2층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031-866-484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29번길 27(지층)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1533-591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305호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031-215-11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031-874-3117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과 3층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통합지원센터	031-816-137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01호
	응급지원센터	031-816-137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031-364-81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10, 단원병원 신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032-651-137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향설관 지하2층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031-708-137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기관명	전화	주소
경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555-1295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49, 113호 (다산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73-1295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제1신관 250호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932-12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고양검찰청 414호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323-1295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별관 201호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736-12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152호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211-129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지방검찰청 207호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405-129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108호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387-129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06호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85-1295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01호
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692-1295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08호
고양시노동권익센터	031-968-76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74, 화정버스터미널 2층
안양시노동인권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 6층
여주노동권익센터	031-886-21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79번길 8, 401호
광명시민인권센터	02-2680-6370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032-625-971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64, 203호
성남시장장애인권리증진센터	031-725-95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2024

경기도 장애인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인쇄일	2025년 11월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인	경기도
편집인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정현석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배복주 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원장 서문지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원장 이주묵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원장 최승호
편집위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한별, 김지영)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백주현, 이나영, 장송이) 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유현아)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임고은)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박선영, 이민선)
발행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Tel. 031-8008-4336)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el. 031-287-113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el. 031-851-1007) 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미공개)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미공개)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미공개)
인쇄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Tel. 02-2271-2526)